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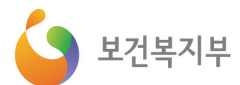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40-10

■ 정책보고서 2015-07

나눔실태 2014

장영식 · 고경환 · 이연희 · 김정현 · 오미애
강지원 · 진재현 · 함선유



보건복지부

【책임연구자】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주요저서】

2014년 OECD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정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발간사 <<

나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발전과 함께 높아지고 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눔은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의 확산이 더욱 요구된다.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함께하는 자발적인 나눔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 상호신뢰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행복감을 높여줘 함께하는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킨다.

나눔은 대부분이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나눔은 정부의 지원으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눔의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나눔의 범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정의와 측정틀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각 요소별 내용과 측정방법의 모색, 그리고 이에 따른 측정결과 산출이 요구된다.

나눔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통계의 산출과 비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국가별 나눔에 대한 정의와 나눔통계의 산출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나눔통계의 산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높은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나눔에 대한 국가간, 개인간 이견을 좁혀 표준화된 정의와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와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통계청의 많은 노력으로 나눔에 대한 정의와 측정틀이 다듬어져 왔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연계한 정의와 측정틀을 다듬고, 관련 실태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점차 고조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나눔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나눔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나눔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나눔의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의 제공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보건복지부 이재란 과장과 서명용 서기관 그리고 박귀현 주무관에게 깊이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에 유익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 준 통계청과 학계, 관련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해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2장 나눔의 측정틀 및 통계작성현황	25
제1절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	27
제2절 나눔의 세부범주별 개념	31
제3절 나눔통계 작성현황	37
제4절 소결	46
제3장 국내나눔의 실태	49
제1절 기부	51
제2절 자원봉사활동	99
제3절 생명나눔	127
제4절 소결	135
제4장 국내 비영리조직의 실태	141
제1절 공익법인	143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147
제3절 소결	149
제5장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151
제1절 나눔통계 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3
제2절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174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85
제1절 요약	18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5

표 목차

〈표 1- 1〉 주요 나눔통계 작성 현황	23
〈표 2- 1〉 영국·뉴질랜드·호주 자선법 상 자선의 목적	30
〈표 2- 2〉 국내 나눔통계 작성현황	38
〈표 2- 3〉 기부 참여율의 국제비교	42
〈표 2- 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국제비교	43
〈표 2- 5〉 해외 나눔통계 현황	44
〈표 3- 1〉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6~2013	63
〈표 3- 2〉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7~2013	64
〈표 3- 3〉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7~2013	65
〈표 3- 4〉 인구사회특성별 평균 현금기부액(15세이상): 2013	66
〈표 3- 5〉 연령대별 기부경로별 평균기부금액: 2013	69
〈표 3- 6〉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1~2013	70
〈표 3- 7〉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90
〈표 3- 8〉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 2013년 말 기준	90
〈표 3- 9〉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2013	91
〈표 3-10〉 지역별 민간모금단체 모금총액: 2013	91
〈표 3-11〉 모금액 구간별 모금액: 2013	92
〈표 3-12〉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자원 배분 구성 비중: 2013	92
〈표 3-13〉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별 배분액 규모추계: 2013	92
〈표 3-14〉 기부참여 여부 회귀분석 결과	93
〈표 3-15〉 법인의 기부금 신고현황: 2007~2013	95
〈표 3-16〉 업체별 기부금 신고현황: 2013	96
〈표 3-17〉 기업의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 비율 추이: 2006~2013	98
〈표 3-18〉 성별,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06~2013	102
〈표 3-19〉 인구사회특성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횟수 및 시간(15세이상): 2013	111
〈표 3-20〉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율 및 시간(주행동): 2009	114
〈표 3-2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회귀분석 결과	126
〈표 4- 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09~2013	143
〈표 4- 2〉 사업목적별 지역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13	144
〈표 4- 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 2009~2013	145

〈표 4- 4〉 지역별 업태별 가동 비영리법인 수	146
〈표 4- 5〉 중앙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2013	148
〈표 4- 6〉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2013	148
〈표 5- 1〉 기부 관련 통계 요약	154
〈표 5- 2〉 기부관련 통계의 결과 차이	157
〈표 5- 3〉 기부관련 통계 생산 틀의 비교	160
〈표 5- 4〉 자원봉사활동 관련 통계 요약	170
〈표 5- 5〉 나눔통계 5개년 계획	184

그림 목차

[그림 2- 1] 기부주체별 기부액	40
[그림 2- 2] 기부 받은 단체 분야	40
[그림 3- 1] 개인의 기부실태 파악 개요	52
[그림 3- 2] 기부 참여현황(15세이상): 2013	53
[그림 3- 3] 기부 참여율 추이(15세이상): 2006~2013	53
[그림 3- 4] 성별 연령대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54
[그림 3- 5] 교육정도별 기부 참여율(30세이상): 2013	55
[그림 3- 6] 직업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56
[그림 3- 7] 소득구간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56
[그림 3- 8] 지역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57
[그림 3- 9]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 2013	58
[그림 3-10] 성별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59
[그림 3-11] 연령대별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 2013	60
[그림 3-12] 정기적 현금기부 참여 현황(15세이상): 2013	61
[그림 3-13] 연령대별 현금기부 주기 분포: 2013	61
[그림 3-14] 정기적 물품기부 참여 현황(15세이상): 2013	62
[그림 3-15] 평균 현금기부 횟수(15세이상): 2011, 2013	66
[그림 3-16] 가구소득별 기부금액(15세이상): 2013	67
[그림 3-17] 기부경로별 현금기부금액 분포(15세이상): 2013	68
[그림 3-18] 물품기부횟수(15세이상): 2013	70
[그림 3-19] 기부 이유(15세이상): 2013	71
[그림 3-20] 연령별 기부 이유: 2013	72
[그림 3-21] 기부하지 않은 이유(15세이상): 2013	72
[그림 3-22] 연령별 기부하지 않은 이유: 2013	73
[그림 3-23] 기부대상 인지경로(15세이상): 2013	74
[그림 3-24] 연령별 기부대상 인지경로: 2013	74
[그림 3-25] 기부 희망분야(15세이상): 2013	75
[그림 3-26] 향후 기부 의향(15세이상): 2013	76
[그림 3-27] 연령별 향후 기부 의향: 2013	76
[그림 3-28]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15세이상): 2013	77

[그림 3-29] 연령별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 2013	78
[그림 3-30] 기부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79
[그림 3-31] 기부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감(15세이상): 2013	80
[그림 3-32] 기부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15세이상): 2013	81
[그림 3-33] 기부 여부에 따른 정서경험(15세이상): 2013	82
[그림 3-34] 기부 대상 인지정도: 2014	83
[그림 3-35] 기부 단체/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2014	84
[그림 3-36]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의 중요성 인식 정도: 2014	85
[그림 3-37]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 2014	86
[그림 3-38] 기부 단체/기관의 회계결산서 공개 인지 여부: 2014	86
[그림 3-39]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 강화시 단체의 투명성 증가 정도: 2014	87
[그림 3-40] 불성실 운영 기부단체의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2014	88
[그림 3-41] 총 기부 금액 대비 적절 기관 운영비 비율: 2014	89
[그림 3-42]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현황: 2005~2013	97
[그림 3-43] 기업의 운영방식별 지출현황: 2013	97
[그림 3-44]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파악 개요	99
[그림 3-45]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15세이상): 2013	100
[그림 3-46]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1999~2013	101
[그림 3-47] 교육정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13	102
[그림 3-48] 직업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103
[그림 3-49] 소득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104
[그림 3-50]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105
[그림 3-51]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 2013	106
[그림 3-52] 성 및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106
[그림 3-53] 연령 및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13	107
[그림 3-54]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108
[그림 3-55] 성별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108
[그림 3-56] 정기적 자원봉사활동(15세이상): 2013	109
[그림 3-57] 연령별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2013	110
[그림 3-58]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횟수(15세이상): 2011, 2013	112
[그림 3-59]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시간(15세이상): 2011, 2013	113
[그림 3-60]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2007~2013	115

[그림 3-61]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현황: 2013	116
[그림 3-62]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2007~2013	117
[그림 3-63] 관리센터 종류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현황: 2013	117
[그림 3-64]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총 봉사 횟수 및 평균 봉사 횟수: 2007~2013	118
[그림 3-6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총 봉사 시간 및 평균 봉사 시간: 2007~2013	119
[그림 3-66]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15세이상): 2013	120
[그림 3-67]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2013	120
[그림 3-68]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15세이상): 2013	121
[그림 3-69] 연령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2013	121
[그림 3-70]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 2013	122
[그림 3-71]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감(15세이상): 2013	123
[그림 3-72]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15세이상): 2013	124
[그림 3-73]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정서경험(15세이상): 2013	125
[그림 3-74] 총 헌혈실적 및 헌혈률: 2007~2013	127
[그림 3-75] 성별 헌혈실적: 2007~2013	128
[그림 3-76] 실 헌혈자수 및 평균 헌혈실적: 2006~2013	129
[그림 3-77] 개인과 단체의 헌혈실적 비율: 2002~2013	130
[그림 3-78] 연령별 헌혈실적 비율: 2007~2013	130
[그림 3-79] 기증형태별 장기 등 기증자 추이: 2008~2013	131
[그림 3-80] 기증형태별 장기 등 이식 추이: 2008~2013	132
[그림 3-81] 장기 등 이식 현황: 2013	133
[그림 3-82] 이식대기자 추이: 2008~2013	133
[그림 3-83] 장기 등 기증희망자 추이(누계): 2000~2013	134
[그림 4- 1] 법인세 신고 총 법인 수 및 비영리법인 수: 2007~2013	146
[그림 4-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2009~2013	147
[그림 5- 1] 기부금명세서	163
[그림 5- 2]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현황	163
[그림 5- 3] 현행 나눔실태 분석 틀	175
[그림 5- 4] 기존 조사를 활용한 나눔 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176
[그림 5- 5] 나눔 통계 효율적 생산을 위한 단계별 방안	180
[그림 5- 6] 나눔 단계별 필요 통계	183

부표 목차

〈부표 1〉 World Value Survey 조사개요	196
〈부표 2〉 World Value Survey 조사결과	196
〈부표 3〉 OECD 각 국가별 조사개요	200
〈부표 4〉 Gallup World poll 조사개요	205
〈부표 5〉 World Giving Index 2014 결과	205
〈부표 6〉 BNP Paribas Individual Philanthropy Index 조사개요	211
〈부표 7〉 EU-SILC survey 조사개요	214
〈부표 8〉 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빈도)	215
〈부표 9〉 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참여 활동)	215
〈부표 10〉 영국 Community Life Survey 조사개요	218
〈부표 11〉 싱가포르 Individual Giving Survey 조사개요	223

부도 목차

[부도 1]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전체 인구 중 비율(%)	204
[부도 2] 하루당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분), 전체 응답자와 봉사자	204
[부도 3] World Giving Index 2010~2014: 한국 점수	209
[부도 4] OECD 국가의 타인돕기: 2007~2012년 변화율(%포인트)	209
[부도 5] OECD 국가의 자원봉사활동: 2007~2012년 변화율(%포인트)	210
[부도 6] OECD 국가의 기부: 2012년 기부율(%), 2007~2012년 변화율(%포인트)	210
[부도 7] 조사결과: 당신의 나눔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212
[부도 8] 조사결과: 현재의 정책이 당신의 나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212
[부도 9] 조사결과: 나눔지수	213
[부도 10] 자원봉사활동 참가여부, 2001~2013/14	220
[부도 11] 비공식 자원봉사활동 참가여부, 2001~2013/14	220
[부도 12] 공식 자원봉사활동 참가여부, 2001~2013/14	221
[부도 13] 지난 4주간 돈을 기부했는지 여부, 2005~2013/14	221
[부도 14] 지난 4주간 기부한 평균금액, 인플레이션 조정과 미조정, 2005~2013/14	222
[부도 15] 주기별 기부 참여율 및 기부액	224
[부도 16] 소득수준별 기부자 비율	224
[부도 17] 주기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봉사 시간	225
[부도 18] 봉사자의 봉사방법	226
[부도 19] 분야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나눔문화의 확대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
 -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국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나눔문화의 확대 필요성 및 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으로 다양한 나눔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나눔 확산정책 추진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
 - 그러나 나눔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눔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확산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나눔 전반의 규모 및 특성 등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정책적인 시사점 도출
 - 국내 나눔 관련 통계 현황파악 및 통계결과 간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검토 실시
 - 주요 통계자료를 통해 나눔 활동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실시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 나눔의 정의 및 개념적 측정틀 검토
 - (정의) 인간의 복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질·인적 요소의 이전·사용·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행위
 - (측정틀) 나눔의 구성, 내용, 방법, 범위 등을 파악

□ 나눔통계 작성현황 검토

- (검토범위) '기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 뿐만 아니라 나눔을 주로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도 검토
- (검토기준) 정부기관이 전국 대상으로 작성하는 주요 승인통계를 우선 검토
- (검토사항) 작성기관, 자료수집방법, 작성대상, 작성내용 등을 검토

□ 나눔실태 파악

- 현재 가용한 주요 나눔통계를 활용하여 나눔과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의 현황 및 특성 등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 (기부/자원봉사활동) 각각 참여자(개인, 기업)별 실태를 파악
- (생명나눔) 헌혈과 장기기증 등 각각에 대한 나눔실태를 파악
- (비영리단체) 업종/지역별 비영리법인 수, 사업목적/지역별 공익법인 수 등
- (기타 통계) 주요 나눔통계에서 필요하나 미생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참고적으로 기타 통계 결과를 활용

□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및 비전 제시

- 나눔통계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과 연차계획 제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 민관협업체계 확립 등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 나눔통계 중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검토 및 효율적인 통계생산 방안 제안
- 나눔과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의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의 중요성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나눔 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나눔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종합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대한 논의

- 나눔의 전반적인 동향과 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관의 효율적인 나눔 방향 및 유기적 연계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 (문헌) 나눔의 정의 및 측정틀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 (통계자료) 나눔과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내 통계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실시

- (구성) 관련 정부부처, 비영리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운영) 연구진행 단계별 주기적 운영
 - (내용) 연구 추진계획의 적절성, 추가적인 검토 및 분석 필요사항 등

3. 연구결과

1) 나눔의 정의와 분석틀

□ 나눔의 정의와 이에 따른 분석틀

- 나눔의 정의는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 및 단체가 사회의 복지향상과 공익 (public good)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
-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체제에서 위협받는 빈곤과 양극화, 일자리 감소, 생존경쟁, 신뢰의 붕괴 등으로부터 사회공동체의 상생관계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눔 분석틀은 나눔의 정의에서 비롯되며, 해외 법에서 규정하는 나눔의 목적과 이를 바탕으로 해외 나눔 통계에서 구체화 된 나눔의 주체, 형태, 방법 등을 포괄함.

□ 나눔 분야별 정의

○ 기부의 정의

- 기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및 단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나눔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현금, 현물 등의 물품을 나눔 주체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생명나눔과 구분됨.

○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에게 개인이 직접 또는 비영리조직이나 단체를 매개로 하여 공익을 위해 비대가성의 비강제적으로 수행한 활동

○ 생명나눔의 정의

- 생명나눔은 헌혈 및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나눔 주체자의 신체 일부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기부 참여율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13년의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은 34.5%인 반면 영국은 57%(2012/2013년), 캐나다는 84%(2010년)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우리나라가 17.7%(2013년)인 반면 미국 25.4%(2012/2013년), 호주 36%(2010년), 캐나다 47%(2010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나타내었음.

2) 기부

□ 기부자의 특성별 기부형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4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으며,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농·어업직 보다는 전문관리직이,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에 적극 참여

- 개인기부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남자가 37.3%, 여자가 31.9%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4.9%로 가장 높

고, 20대가 24.8%로 가장 낮았음.

- 교육정도별로는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이 53.3%가 기부경험을 갖고 있어 가장 높았고, 초졸이하는 17.2%로 가장 낮았음.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58.2%로 가장 높았고, 농·어업직이 25.3%로 가장 낮았음. 가구소득별 기부 참여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이 57.7%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이 18.7%로 가장 낮았음.

□ 2013년 총 기부규모는 12조 4,859억원이며, 현금기부자의 평균기부횟수는 6.5회

- 2013년 기부규모는 근로소득자가 5조 5,842억원, 종합소득자가 2조 2,472억원, 법인이 4조 6,545억원으로 총 12조 4,859억원이었음. 현금기부자의 평균 기부횟수는 6.5회였음.

□ 기부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목적이 가장 높아

- 2013년 기부이유를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움’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에 의해서가 26.8%였으며,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1.7%로 가장 낮았음.

□ 기부 대상인지 경로는 대중매체, 직장·학교 등의 순으로 높아

- 2013년 기부 대상을 인지한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지한 경우가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장·학교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23.0%였으며, 종교단체 20.1%, 시설·단체 직접홍보가 19.1%, 가족, 친구 및 동료권유가 8.9%, 인터넷을 통해서가 2.4%로 가장 낮았음.

□ 기부문화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 필요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15세 인구 중 54.6%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9.9%가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6.7%였음.

- 삶에 대한 만족감은 기부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높아
 - 경제적인면, 직업, 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기부참여자가 43.5%가 만족하고 있으며, 기부 미참여 그룹은 28.2%만이 만족하고 있었음.

-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
 - 기부를 하기 위해 참여할 단체/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6.3%로 가장 높았고,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2.3%로 가장 높았음.

- 기업의 기부참여는 참여수와 기부금 모두에서 증가
 - 2013년 기부금 공제 신고법인수는 51만 7,805개이고, 기부금 총액은 4조 6,545억원이고, 법정·특례기부금은 1조 7,849억원, 지정기부금은 2조 8,696억원으로 나타났음.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신고법인수는 14만 5,664개가 증가하였고, 기부금 총액은 1조 3,294억원이 증가하였음.

3)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5~19세가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음
 - 2013년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을 연령별로 보면 15~19세의 참여율이 7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40대 17.3%, 50대 14.5%, 20대 13.7%의 순이었고,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7.8%의 참여율을 나타내었음.
 -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대전이 22.4%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으로 21.6%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제주 21.5%, 광주 21.2%, 충남 21.1%, 전남 19.8%, 충북 19.5%, 울산 18.9%로 전국 17.7% 보다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북이 가장 낮은 15.5%의 참여율을 나타냈음.

- 2007년 이후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증가
 -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를 통한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자원봉사자수는 2007년 328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953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음. 보건복지부 DB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등록자원봉사자수는 594만 7천명이고, 활동자원봉사자수는 138만 5천명으로 나타났음.
-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는 직장/학교를 통하여서가 가장 높아
 -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50.5%가 직장/학교를 통하여 활동한 단체 등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친구 및 동료의 권유로 알게 된 경우는 19.9%, 종교 단체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는 12.9%로 나타났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기부참여에도 적극적
 - 201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별 기부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55.1%가 기부에 참여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30.1%만이 기부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생명나눔

- 헌혈실적 및 헌혈률은 서서히 증가
 - 2013년 총헌혈실적은 291만 4천명으로 2012년의 272만 3천명에 비하여 7.0%가 증가하였음. 헌혈실적에 따른 헌혈률은 2007년 4.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4%에 이르렀으나 2011년에는 5.3%로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4%, 2013년에는 5.8%로 증가하였음.
- 생존자와 사후장기기증은 감소한 반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증가
 - 생존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1,532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45명에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1,920명이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256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368명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416명으로 증가하였음.

5) 비영리단체

- 공익법인 가운데 종교법인이 가장 많고, 중앙부처 등록 비영리단체는 2012년에 비하여 증가함.
- 공익법인의 수는 2013년 기준 29,849개로 이 중 종교법인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은 학술·장학법인으로 11.8%, 사회복지 10.5%, 교육사업 5.7%의 순으로 많았음.
 -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한 공익법인수는 29,849개로 비영리법인 21,372개 보다 많음. 이는 공익법인은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을 집계한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해당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만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 신고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수 파악에서 누락되어 실재 존재하는 법인보다 적은 수가 집계됨.
 -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는 2013년에 1,413개로 2012년의 1,319개에 비하여 94개가 증가하였음.
 - 2013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수는 총 10,166개로 2012년의 9,570개에 비하여 596개가 증가하였음.

6) 나눔통계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부

〈표 1〉 기부통계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기부통계생산에 국세통계연보의 불충분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계생산; 미 신고의 경우 누락 - 종교적 헌금과 협회비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를 통한 총기부금액 추정(연계 분석) - 기부금특별공제 내역의 상세분석 공표 - 연구자에게 관련 내역 제공
기부통계생산에 가계동향조사의 불충분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만 공표로 종교기부금과 단체회비 항목을 제외한 자선적 기부액을 파악하는데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항목별 분리가 조속한 시일내 공표될 수 있도록 추진
개인기부지수 (아름다운재단 기부인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하지 않은 표본 수, 사회조사와의 차이 등 문제 - 세계기부지수로서의 적절성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합의하에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의 개선 모색 - 국제·국내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높은 범위의 설정과 통계생산
종교적 헌금의 포함여부 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에 따라 헌금을 포함하거나 불포함: 국세통계연보, 가계동향조사는 포함, 사회조사, 아름다운재단 제외(종교단체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기부에 포함) - 우리나라는 제외하나, 해외에서는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기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고유활동비용 충당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불우이웃돕기 위한 것인지 구분
비공식기부의 포함여부 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에서는 포함, 국세통계연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친인척, 가까운 이웃 등 안면 있는 지인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부 구분)하여 대처
매개기관에 대한 모집단 설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별도의 법에 의해 관리 - 학자에 따라 분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실시
매개기관 실태조사의 제한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및 복지 분야 비영리단체에 한한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한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모집단에 대한 기부금 모집 및 운영실태 파악
매개기관의 정보공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미흡 - 공익법인 데이터 공시(한국가이드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대한 회계자료 공시(관련 비영리조직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2) 자원봉사활동

〈표 2〉 자원봉사통계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기존 자원봉사활동 관련 내용 포함 조사로는 활용에 한계	- 대표적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사로는 생활시간조사와 사회조사 등이 있음. - 자원봉사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고유목적의 조사가 아니어서 활용에 한계	- 필요항목의 추가 및 별도 조사방안 모색
자원봉사활동 개념측정 불명확	- 자료에 따라 종교단체내의 활동 포함하거나 불포함: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사회조사에서는 포함, Giving Korea, 행자부 '자원봉사 참여율', 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등은 불포함	- 구분하여 조사(종교단체내의 활동 불포함, 종교단체 주관의 외부 봉사활동은 포함)
초·중·고등학생 봉사활동, 대학생의 의무적 자원봉사활동 포괄적 포함	- 강제성, 비강제성 구분 안함	- 구분 가능한 추가 질문을 통한 강제성과 비강제성 구분
비공식적인 개인 자원봉사활동의 포함여부 혼신	- 사회조사 및 Giving Korea는 포함, 행자부 '자원봉사센터 현황', 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에서는 제외	-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조사와 함께 비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사실시
자원봉사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미흡	- 승인통계의 경우 제한적인 조사항목으로 충분한 정보 파악에 불충분 - 민간기관 수행 미승인 통계의 경우 검증 작업 필요	- ILO의 매뉴얼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활동 관련 심층적인 설문조사 마련 - 기존 조사에 조사문항의 확대 유도 및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 실태 조사 설계

7)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1) 현행 나눔 관련 통계의 한계

□ 나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나눔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나눔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나눔통계의 생산은 미흡

○ 기부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만한 통계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

의 “가계동향조사”와 “사회조사” 등임.

- 국세청 기부금 신고 현황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부금이므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면세자 및 미신고자의 기부금은 누락될 우려가 있고, 종교적 헌금이나 노조비 등이 포함되는 등 나눔 분석틀과 괴리감이 있음. 또한 기부금액 외 기부자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방안 모색에는 한계
- 통계청 사회조사는 표본 추출이 과학적이고 17,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부에 대해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어 상당히 신뢰할만한 통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기부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거나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활용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역시 표본 추출이 과학적이고 8,7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어 상당히 신뢰할만한 통계이나 기부금액을 측정하는 데는 편리하나 기부 활동에 대한 형태나 배경,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

○ 민간부문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신뢰할만한 통계로는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인덱스”와 한국자원봉사문화의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가 있음.

- 기빙인덱스는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부와 종교적인 기부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너무 적은 표본과 회상에 의한 조사의 특성상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오류를 보이고 있음.
-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특성, 기부금액, 정기성, 기부 참여 경로 등 기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문항은 통계청 사회조사와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인덱스의 문항과 상당히 유사함.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사회조사”,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 인덱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등임.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행동분류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의 평균 참여시간을 알 수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배경요소 등에 대한 정보가 없음.
- 통계청 사회조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와 평균시간, 정기봉사, 인지경로, 향후 활동의사 등 다양한 문항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문항 구성이나 추가 등은 어려움.
-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 인덱스와 한국자원봉사문화의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는 자원봉사자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시간, 자원봉사활동 분류(직업), 자원봉사활동 내용 분류, 자원봉사활동 기관 관련성, 자원봉사활동 기관 영역(산업), 자원봉사활동 기관(활동처) 분류 등을 조사하고 있음.
- 이 외 보고통계인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등이 있으나 국가 통계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2)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 나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나눔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상황임.
- 공공부문의 조사들은 나눔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에 기반을 두고 분석틀을 구성한 후 이에 따른 통계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조사 중 나눔과 관련한 항목을 일부 포함하는 경향이 있음.
- 민간부문의 조사들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 실태 파악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되었으나 표본의 추출과 조사 방법 등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인덱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2014년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등은 매우 유사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나 조사 결과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서로 다른 표본에 대한 조사에 기반을 둔 통계를 단순 취합하여 보여주는 것은 나눔 실태에 대한 정확한 추정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통계의 생산에 근거한 나눔 문화 확산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 한국의 나눔 활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통계의 생산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나눔 통계의 생산,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눔 통계의 생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나눔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조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이후 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먼저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특별공제액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액은 기부금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의 누락이 발생하고 수집되는 정보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임.

- 누락되는 기부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참여율, 횟수 및 액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통계로는 표본에 대한 과학적인 설계와 적절한 표본 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계청 사회조사(개인)와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개인이 신고하는 기부금 신고양식에 포함된 기부금 종류별로 분리하여 공표하거나 최소한 기부를 측정하는 연구진에게는 분석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 등 정책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부 인지경로, 기부 희망분야, 향후 기부 의사, 기부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을 위한 기부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 또한 매개기관에 대한 실태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제도의 확대를 통해 향

후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익법인이 아닌 기부금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선행하여 전체 매개기관에 대한 모집단 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활동은 비교적 실태에 대한 조사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시간조사에서 이용하는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활동분류 등을 ILO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함.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국제 기준 분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서는 특히 비강제성의 기준을 벗어나는 학생에 대한 의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후속적인 문항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정보고를 기준으로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의 총량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법은 최대한 기존 보고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서로 다른 표본으로 인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함.

□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독립된 전문 실태조사를 통한 나눔통계 생산 방안 검토

○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나눔 통계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적인 조사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종교활동, 비공식적인 나눔, 비자발적인 행위 등을 조사에 포함하되 이를 통계에서 배제하거나 포함하는데 용이하도록 조사 문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설문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거주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표본 설계가 필요함.

- 독립된 전문 실태조사의 장점은 독립변수로 활용할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대부분의 국제비교에서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기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단편적이고 단답형 보기 문항의 선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조사가 가능할 것임.
-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영국과 캐나다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조사문항과 조사방법 등 인터넷 자료를 구독하는 방법 외에 실제로 오랜 시간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조사를 통합해서 운영해오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조사의 합리적 운용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독립된 전문조사가 단일한 조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필요는 없음. 기존의 조사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과 영역별 조사를 수행해온 기관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비용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실태를 조사한 모든 자료가 한 곳에 집적되어 조사 수행에 따른 다양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사각지대 등에 대한 추정을 통해 단일한 나눔통계로 제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조사들이 가지는 표본 수의 한계, 표본의 이질성 등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구축을 통해 국제비교가능성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3) 나눔통계 생산을 위한 연차별 계획

- 나눔통계의 생산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수행기관, 나눔통계 자문위원, 나눔통계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짐.
- 나눔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은 5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역할분담으로는 부처 및 기관, 연구용역수행기관, 나눔통계 자문위원회, 나눔통계 관계자 회의로 이루어짐.
- 첫째, 나눔통계에 대한 개념틀 검토

- 과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해온 나눔 실태에 대한 개념틀에서 벗어나 나눔통계에 대한 개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분석틀 제안
-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나눔과 관련한 행정 및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나눔통계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이와 별개로 국내의 나눔현황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나눔통계의 개념 분석틀을 명확하게 제시함.

○ 둘째, 나눔관련 통계DB 구축(부처/기관별 조사목록 및 조사자료 제출)

-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눔관련 조사목록과 조사자료를 취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수집해온 통계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표본의 한계, 조사수행 및 결과 해석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최대한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각 부처별 기관별 통계목록 및 통계 자료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나눔통계에 포함 여부를 결정함.
- 특히 나눔통계의 개념틀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 항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조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조사에 대한 생산과 관리는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 나눔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임.

○ 셋째, 누락통계 및 신규통계 생산 모색

- 나눔통계 개념틀을 기준으로 생산이 누락된 통계와 신규통계 생산 필요성 제안함.
- 여기서 누락통계는 대표적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시 입력 코드에 비해서 공시된 자료는 과다하게 축소되어 가용한 통계 자료가 부족한 것을 뜻함. 이를 위해서는 자료 생산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과 사회보장위원회 안전으로 상정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통계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여기서 신규통계의 생산은 지금까지 나눔실태를 파악하는 데 회색지대였던

매개기관에 대한 조사의 실시가 대표적임. 연구용역기관은 매개기관에 대한 개념 범위를 검토하고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제안함.

- 행정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정보의 구체적 분류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계자료에 대한 조사 및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변수를 통해 이중계산에 필요한 함수를 도출하고 매개기관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음.

○ 넷째,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나눔통계 생산

- 기존의 분절적인 조사들의 단순 취합을 통해 나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나눔통계의 생산이 필요함.
- 현행 행정정보나 조사자료를 가능한 활용하되 조사자료의 경우 표본의 설계 및 조사 내용, 조사 항목 등이 동일한 분석틀과 기준에 따라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조사가 조사수행기관의 고유자료였던 것에서 벗어나 조사의 수행은 독립적으로 하되 나눔통계 생산이라는 고유 브랜드는 공유함. 조사의 설계, 조사의 관리, 사후모니터링, 자료의 분석 등에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을 취합한 가공통계로서 나눔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비경제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환산

- 연구용역기관은 비경제적 활동(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을 위한 변수들을 분석하고 이를 나눔통계 실무자 회의와 나눔통계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확정함.
-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나눔통계 발표함.
- 나눔통계 생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함.
- 나눔통계 생산의 개선방안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함.

〈표 3〉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나눔통계 분석틀 확정					
나눔관련 통계 DB 구축					
누락 및 신규 통계개선					
독립적인 전문 조사 수행					
비경제적 활동 가치 환산					
나눔통계 실무자 회의 운영					
나눔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한국에서(강철희 외, 2012)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봉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김형용, 2013).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나눔 활동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개인이 신고한 기부금은 2006년에 비하여 44.5%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법인이 신고한 기부금도 46.8%가 증가하였다. 2013년 15세 이상 기부 참여율 역시 2006년에 비하여 2.9%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은 2006년 대비 2013년 3.4%포인트가 높아졌으며, 장기기증자수도 33.8%가 늘어났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눔 활동을 이해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에서 시민과 시장의 나눔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진관훈,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나눔 전반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 비영리단체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의 나눔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통계 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생활시간조사, 현혈·장기이식 현황자료, 민간기관 관련 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나눔의 정의 및 개념적 측정틀 검토, 나눔통계 작성 현황 검토, 나눔실태 파악, 나눔통계의 생산효율화 및 비전 제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로 이뤄진다.

우선 나눔의 정의 및 개념적 측정틀을 검토하였다.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물적·인적 요소의 자발적 이전·사용·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측정틀로는 나눔의 '구성'과 '내용', '방법', '범위' 등이 있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성'에는 참여자, 매개자, 수혜자가 포함된다. 참여자는 개인(혹은 단체)이나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수혜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해당된다. 비영리단체는 참여자와 수혜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눔의 '내용'은 나누는 자원의 내용에 따라서 기부(현금, 물품, 부동산 등), 자원봉사활동(시간, 노동력, 특기),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으로 구분된다. '방법'으로는 비영리단체를 경유하는 공식(formal, 간접) 나눔과 개인 간 발생하는 비공식(informal, 직접) 나눔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외에도 나눔의 '범위'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나눔의 측정틀은 문헌검토와 자문회의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나눔통계의 작성현황의 경우 기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 뿐만 아니라 나눔을 주로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작성 현황까지 검토하였다. 비영리 매개단체는 모금의 참여자(개인/단체)와 수혜자를 연계하는 단체로, 모금단체와 기부금 단체 등이 그 예이다. 작성현황 검토에 있어서 정부기관이 전국 대상으로 작성하는 주요 승인통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사항으로는 작성기관과 자료수집방법, 작성대상이 있다.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크게 보고(행정)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작성대상은 참여자(개인/기업)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로 구분된다.

〈표 1-1〉 주요 나눔통계 작성 현황

부문	작성기관	수집방법	작성대상	통계(조사/보고서)명	승인
기부 (물적나눔)	국세청	행정	개인/법인	국세통계연보	승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개인/법인 (매개 비영리단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승인
			개인	한국복지패널	승인
	통계청	조사	개인	사회조사	승인
			가구	가계동향조사	승인
	보건복지부	행정	개인/기업	푸드뱅크 실적 (웹사이트)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개인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자원봉사활동 (인적나눔)	통계청	조사	개인	사회조사	승인
			개인	생활시간조사	승인
	안전행정부	행정	개인	자원봉사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행정	개인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	승인	
생명나눔	대한적십자사	행정	개인	혈액사업통계연보	
	질병관리본부	행정	개인	장기이식통계연보	
비영리단체	국세청	행정	비영리법인	국세통계연보	승인

다음으로 나눔실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가용한 주요 나눔통계를 활용하여 나눔과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특성 등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 참여자의 경우 인구사회적 특성, 소득계층, 지역별 나눔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업 참여자의 경우 기업의 규모, 업태별 사회공헌활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매개 비영리단체의 경우 모금규모, 모금액의 분야별 기부규모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한편 생명나눔의 경우 헌혈과 장기기증 등 각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영리 단체는 업종/지역별 비영리법인수, 사업목적/지역별 공익법인 수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나눔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나 현재 미생산되고 있는 통계에 대해 기타 수치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및 비전제시를 위해서는 나눔통계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과 연차계획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 민관협업체제 확립 등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나눔통계 중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을 살펴보고, 나눔과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되며, 나눔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통계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전반적인 동향과 흐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민관의 효율적인 나눔 방향 및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나눔의 정의와 측정틀을 정리하고, 나눔통계의 작성 현황 및 나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눔의 정의 및 측정틀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나눔과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내 통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통계 선정 기준은 정부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승인통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도 개괄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 내용은 작성기관과 자료수집방법, 작성대상, 작성 내용 등이며 원자료 활용이 용이한 조사자료의 경우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를 통하여 문헌 및 통계 자료 검토를 보완하였다. 자문단은 나눔 관련 정부부처와 비영리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진행 단계별로 연구추진계획의 적절성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석 내용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자문 회의를 통하여 점검하였다.



제2장

나눔의 측정틀 및 통계작성현황

제1절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

제2절 나눔의 세부범주별 개념

제3절 나눔통계 작성현황

제4절 소결



2

나눔의 측정틀 및 통계작성현황 <<

본 장에서는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 제시를 목적으로 기존 나눔 정의와 해외 자선법을 통해 나눔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공 자원의 형태 및 방식에 따라 기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으로 구분하여 나눔의 세부범주별 개념과 포괄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정의가 모호한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국내외 나눔관련 통계작성현황과약을 통해 나눔실태조사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절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

1. 나눔의 정의 및 측정틀

우리사회에서 나눔은 ‘자선’, ‘기부’, ‘박애’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나눔’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diving),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classification), 몫을 분배하다(distributing)로 요약된다. 포괄적인 나눔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자선’은 개인적 이타심에 근원을 둔 ‘기부’의 측면이 강하고 ‘박애’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연대적 실천을 의미한다(Friedman & McGarvie, 2002).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성립되었음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의미가 생성, 발전, 소멸되기 때문에, 뜻이 확정되거나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눔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공동체의 상생관계, 베푸는 문화의 사회흐름을 반영하며, 그 결과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서 나눔은 이타적 의도나 행위로 해석되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으로 전이하여 사용되고 있다(김형용, 2013).

이처럼 추상적인 나눔의 개념에서 벗어나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국내 나눔실태 2013」은 “인간의 복지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눔을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기부(현금, 물품), 자원봉사활동(노동력), 생명나눔(혈액, 장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복합적

인 의미의 나눔을 정의내리기에 한계가 있다(박주언 & 이희길, 2013). 영미권에서는 'charity'와 'philanthropy'가 혼용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발적(voluntary), 사적(private), 기부(giving) 및 공적 목적(public good)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나눔의 대응개념으로 'philanthropy'를 사용하고 있다(박주언 & 이희길, 2011). 또한 나눔은 자선과 유사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부동산, 용역 등 물질적 시간적 기부'(신경희, 2009)와 박애에 가까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도된 물질적 이전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정무성 외, 2011)로 접근되기도 한다.

나눔에 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앞서 제시한 기존 나눔의 개념과 더불어 해외 주요국들의 나눔 관련법과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나눔 정의의 개념적 배경과 나눔 통계 측정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나눔법 입법 움직임과 함께 나눔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미 법으로 나눔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자선법을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간결한 나눔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공인법인 정보공시양식의 통계활용 제고방안」에서 세법을 중심으로 관련 해외 법이 간략히 소개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세법에서 더 나아가 각국 자선법에 제시된 나눔의 범위 및 목적에 초점을 두어 나눔의 개념적 측정틀 마련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먼저 영국의 자선법(Charities Act 2011)에서 자선(Charity)이란 빈곤방지·완화, 교육발전, 종교발전, 건강증진·생명구제, 시민권·지역발전, 문화·예술·유산·과학발전, 아마추어 스포츠발전, 인권·다양성보호, 사회적약자보호, 동물보호, 왕권확립 및 치안·안전 등과 관계되는 자선적인 목적을 가진 관습(institution)으로 정의된다. 2012년 '소액기부에 관한 규정(The Small Charitable Donation Regulations)'을 통해 구(舊)자선과 다르게 소액기부와 연계 기부(connected charities) 등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였지만, 영국 자선법은 여전히 세액 공제에 초점을 둔다. 추가 지불(top-up payment)이나 연계 기부(connected charities)를 통해 소액 기부를 세액 공제가 가능한 자선활동(eligible charity)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액 기부 인정 금액은 연간 5천 파운드, 일 회 20 파운드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영국 자선법의 특이한 점은 community building 섹션을 통해 공공건물 개보수, 거주, 임대 등과 관련된 자선 활동도 인정하는데, 고건물이 많은 영국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뉴질랜드의 자선법(Charities Act 2005)은 자선(charity)의 목적을 빈곤 완화, 교육 증진, 종교 활동, 그 밖의 지역사회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더불어 자선의 세부 목적,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자선 단체에 관한 정의 및 의무사항 등에 초점을 둔다. 자선법의 세부 목적은 (1) 자선 섹터에 대한 공공의 신뢰 증진, (2) 자선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촉진, (3) 사회·기관·신탁 관리자 등 관련 단체들을 자선 독립체로 등록하고 의무사항 제시, (4) 위원회(Board)로 하여금 자선 기관 등록 및 탈퇴에 관한 의사 결정 지침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제시, (5) 기관 최고위자 및 그 외 관련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선 단체(charitable entitle)는 본 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 기관, 혹은 신탁관리자를 의미하며, 최고위자(chief executive)는 department의 최고위자, 모금가(collector)는 최고위자의 위임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호주 자선법(Charities Act 2013)에서는 호주 자선의 다양성과 독특성,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비영리 단체,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의 목적들에 부합하는 부수적인 행위들(개인, 정치적 정당, 혹은 정부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제외)을 자선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연방법 상 자선의 목적은 건강 증진, 교육 증진, 사회 혹은 공공복지 도모, 종교 도모, 문화 도모, 호주 내 집단 혹은 개인들 간 상호 존중 촉진, 인권 보호, 동물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덜어주기 위한,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갖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다. 호주 자선법에서 규정한 공익의 목적들이란 유·무형에 관계없이 공공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 가능한 모든 것들이며 자선적인 목적(charitable purpose)의 예는 질병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빈곤감소 및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가족 구제,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이나 지원, 종교적인 목적을 비롯해 원주민의 권익, 권리, 직업, 소지 소유권 및 사용권 보장을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비차별적 자조 집단(무분별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혹은 관련 개인들에 의해 설립된 조직, 일반 대중의 요청으로 정기적으로 신앙에 근거한 폐쇄적인 종교집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 공공정책에 반하는 혹은 불법적인 활동들을 방지하고 금지하거나 정치정당을 도모 혹은 반대하는 목적의 조직들은 자선 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해외 자선법 상 자선의 정의 및 목적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charity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선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내리기 보다는 자선의 목적을 통해 자선의 범위를 규정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 및 기여들을 자선에 포함하여 자선을 도모하고 있다.

〈표 2-1〉 영국·뉴질랜드·호주 자선법 상 자선의 목적

국가	영국	뉴질랜드	호주
자선 (charities) 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완화 및 방지 교육 증진 종교 건강증진 시민권 및 지역발전 문화 아마추어 스포츠 인권 보호 및 평등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동물보호 왕권 확립 및 효율적인 치안·안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 완화 교육 증진 종교 활동 그 밖의 지역사회 이익을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공복지 도모 건강 증진 교육 증진 종교 도모 문화 도모 사회구성원 간 상호 존중 촉진 인권 보호 동물보호 환경 보호

나눔에 관한 기존 분석들과 해외 자선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나눔이란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 및 단체가 사회의 복지향상과 공익(public good)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체제에서 위협 받는 빈곤과 양극화, 일자리 감소, 생존경쟁, 신뢰의 붕괴 등으로부터 사회공동체의 상생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자발적 의사’란 강제성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도적 활동을 뜻하며, ‘개인 및 단체’는 나눔 주체 즉, 개인·기업·재단 등을 포함하며 ‘공익’은 philanthropy 어원인 인류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나눔의 목적인 빈곤 완화 및 방지, 교육, 종교, 건강, 시민권 및 인권 보호/증진 등의 실현을 의미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적가치가 있는 자원’은 현금, 서비스(시간, 재능 등), 물품, 장기 등을 포함한다. 요컨대 나눔 분석들은 나눔의 정의에서 비롯되며, 해외 법에서 규정하는 나눔의 목적과 이를 바탕으로 해외 나눔 통계에서 구체화 된 나눔의 주체, 형태, 방법 등을 포괄한다. 나눔의 주체, 형태, 방법 등의 분류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과 ‘공익’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제2절 나눔의 세부범주별 개념

1. 기부의 개념

가. 기부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기부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지만, 기부는 자원봉사 활동과 더불어 나눔의 주요 범주이다. 기부의 주체는 개인, 기업, 재단 등으로 구분되며 현금/기금 및 현물을 기부주체가 비영리단체에 직접, 혹은 중개기관 (intermediary agency)을 통해 전달하거나 자원이 풍부한 경우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대상자에게 전달한다 (박주연 & 이희길, 2011). 기부의 상위 개념인 나눔은 강제성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세제혜택이나 이미지 제고를 염두에 둔 개인 및 기업의 현금·현물 이전 또한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기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사적 부양을 목적으로 현물 및 현금을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로 보기 어렵다. 친인척 및 지인 간 경조사비 이전의 경우 한국의 독특한 문화이지만, 공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기부의 의미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주연 & 이희길, 2011). 결국 기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및 단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나눔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현금, 현물 등의 물품을 나눔 주체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생명나눔과 구분될 수 있다.

나. 국내외 통계에서의 기부

기부관련 통계자료들은 주로 현금 및 현물을 기부하는 주체, 기부 물품의 종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국내외 통계조사들을 살펴보는 것은 기부의 범위와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먼저 국내 나눔 관련 통계 중에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회의 「식품기부실적」 등이 한국 기부 실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조사들이다. 「국세통계연보」의 ‘기부

금특별공제' 항목을 통해 매년 소득규모별 기부 인원과 기부 신고법인의 현황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분기별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을 통해 가계지출을 구성하는 비소비지출 중 비영리단체로 이전되는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 기부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식품기부실적」은 식품이라는 특정 현물의 기부자, 종류, 이용자 등을 온라인상에 게시한다. 그 밖의 통계청의 「사회조사」, 광역시도의 「지역사회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 인덱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 조사 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등에서는 기부 액수 및 횟수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기부관련 통계조사로 미국의 「Giving USA」와 영국의 「Giving UK」를 들 수 있으며, 기부방법과 기부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Giving USA」는 Giving USA 재단 후원으로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가 1년 주기로 진행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기부 실태조사로 '개인, 유증, 기업, 재단이 현금, 현물을 공익적인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giving)를 정의하며 기부총액, 기부주체별 기부액, 단체 분야에 따라 기부 받은 금액 등을 추정한다. 영국 통계청의 「Giving UK」는 '개인이 현금을 자동이체나 공제 등의 9가지 방법으로 의학연구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15가지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기부(giving)로 정의하여 기부 방법과 분야, 기부액 등을 추정한다(박주언 & 이희길, 2011).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나눔 전반에 관한 해외 통계조사인 호주의 「Giving Australia」와 캐나다의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CSGVP)」는 기부방법과 기부액은 물론 기부 경험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가.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5년 8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이듬해 법제화시켰다. 「자원봉사활동기

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

자원봉사활동이 강제성을 띠는 사회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며, 또한 문화적으로 원조(helping)가 자연스러운 사회에서는 특이한 활동으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자원봉사활동이 대가없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현금성 비용, 예컨대 식대나 소규모의 현금지출과 같은 비용의 범위를 가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보수와 구분할 필요성은 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 제공하는 봉사나 원조도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각 나라마다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각 나라의 통계청이나 국제기구가 정의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그리고 가구 내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까운 친척외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대가 없이 행하는 서비스나 활동을 포함한다는 많은 공통된 요소를 가진다.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토대로 ‘비대가성의 강제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개인이 자신의 가정 밖에 있는 타인에게 직접 또는 조직을 통해 대가없이 수행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ILO가 정의하는 자원봉사활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일(work)을 포함한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측정되려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에서 정의한대로 경제의 생산경계 내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해야만 하는 활동이다. 국제노동기준으로 보면 기준시점동안 최소 1시간의 근로가 있어야만 고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은 이보다 더 짧은 시간동안 수행할 수도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여가와 반대되는 ‘일(work)’로 간주한다면 한 시간이라는 최저임계기준은 상당수의 자원봉사자가 누락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현금이나 현물의 보상/대가 없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가능한 것도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비강제적(non-compulsory)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직장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비대가성 실습기간, 그리고 학교나 훈련프로그램에서 학위취득이나 존속을 위해 요구되는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비강제성에서 위배되므로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최소 연령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ILO는 15세 이상으로 기준연령을 정한다. 물론 나라마다 고용과 실업을 결정하는 최소연령이 다른 것처럼 지역적 환경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 15세보다 낮은 연령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기준연령을 기술해줘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은 조직기반(Organization-based)의 자원봉사활동뿐 아니라 조직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타 가정에서 봉사하는, 직접적(direct) 자원봉사활동까지도 포함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은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본인의 가족, 특히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에게 행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ILO는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노동력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조직, 정부, 개인사업체, 그리고 그 외 등 모든 형태의 기관에서 강요 없이 이루어진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 일곱째, 자원봉사활동은 활동의 범위를 특정 수혜자에게 제한하지 않는다. 자원봉사활동은 사람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조직과 단체들, 환경, 동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ILO의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대가성을 추구하는 이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에게 개인이 직접 또는 비영리조직이나 단체를 매개로 하여 공익을 위해 비대가성의 비강제적으로 수행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통계생산 관련 조사

자원봉사활동조사는 개인단위와 기업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단위의 대표적인 국내 조사로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실태조사가 있다. 사회조사는 매년 5개 부문씩 실시하되 각 부문별로 2년마다 조사된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문항은 사회참여 부문에 속하는데, 이 부문의 최근 조사는 2013년도에 실시되었고, 다음 조사 실시는 2015년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17,664표 분가구¹⁾의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이다.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는 2014년에 있었다. 조사대상은 만 20세이상 성인

이며, 1,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다.

기업단위의 자원봉사활동조사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가 있다. 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의 대상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등 총 600개 기업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²⁾.

통계를 생산하는 수단에는 시스템을 이용한 생산이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 자원봉사 포털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로는 ILO의 자원봉사활동조사와 캐나다 자원봉사활동조사를 들 수 있다. ILO의 자원봉사활동조사는 측정하는 플랫폼으로 노동력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자원봉사활동조사는 캐나다 통계청이 주관하여 기부 및 자원봉사참여조사(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CSGVP)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단체나 조직을 대신하여 학교 또는 법인조직, 스포츠협회나 지역사회협의회, 선거 유세 등에 대가 없이 제공했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는데, 조사방식이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가 없는 가구의 사람은 제외된다.

3. 생명나눔의 개념

가. 생명나눔의 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나눔에서 현금과 현물 자원을 이전하는 기부, 시간과 재능 등 서비스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생명나눔은 헌혈 및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나눔 주체자의 신체 일부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장 보편적인 생명나눔의 형태로 헌혈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살아있는 혹은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신장, 각막, 간, 심장 등을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장기 이식이 있다. 생명나눔은 기

1)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국가통계포털)

2) 2014년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부나 자원봉사활동처럼 한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제공하기도 한다. 병원이나 적십자 등 생명나눔과 관련된 기관에 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궁극적으로 생명나눔을 위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나눔 목적이나 자원의 형태를 고려할 때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내외 통계에서의 생명나눔

한국의 생명나눔 관련 통계자료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통계연보」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장기이식통계연보」가 대표적이다. 혈액사업통계연보는 헌혈 참여 인원 및 단체 수를 중심으로 주로 헌혈실적을 담고 있다. 장기이식통계연보는 장기별 기증자 수와 기증희망등록자 현황, 이식 대기자 수, 이식 성공률 등을 담고 있다.

해외 생명나눔 통계의 경우 장기이식의 범위가 국내 생명나눔 통계와 다르지 않지만, 각국의 생명나눔 통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ctivity Report」에서는 장기기증자를 한번이라도 장기 기증을 한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단순히 기증참여 인원 보다는 장기별 기증 횟수 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즉, 한 사람이 간과 신장을 기증한 경우, 간이식과 신장이식 횟수로 두 번 포함된다(NHS Blood and Transplant, 2014). 미국의 「OPTN/SRTR Annual Data Report」 또한 장기기증 횟수를 중심으로 생명나눔 통계를 내었지만, 이식 대기자 통계는 대기자 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OPTN and SRTR, 2014). 호주 「Organ and Tissue Authority」(이하 OTA)는 생명나눔에 대해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장기기증자와 기증받은 환자의 숫자, 이식 성공률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장기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OTA 정부 예산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캐나다의 「Delivering Values Annual Report」는 생명나눔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로서, 헌혈 및 장기기증 방법과 장점도 소개하고 있다 (Canadian Blood Services, 2014). 캐나다의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 Annual Report」는 장기이식 전반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Treatment of End-Stage Organ Failure in Canada'라는 부제로 최근 10년간 장기이식 추이를 담고 있다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4).

제3절 나눔통계 작성현황

1. 국내

국내 나눔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조사하고 있는 나눔 관련 통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작성 기관 및 목적에 따라 작성 주기와 추정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나눔의 포괄적인 범위를 개괄하는 공적 실태조사는 없다.

국내 나눔과 관련된 통계 작성실태를 살펴보면 기부와 관련되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사회조사, 광역시도의 지역사회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인텍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전국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회의 식품기부실적,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한국NPO공동회의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 한국개발복지 NPO 총람 등이 있다.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센터현황,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광역시도의 지역사회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인텍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등이 있다.

생명나눔 관련해서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통계연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의 장기이식통계연보 등이 있다.

〈표 2-2〉 국내 나눔동계 작성현황

부문	작성기관		유형	작성대상	통계(조사/보고서)명	승인	작성주기	주요 추진내용
	정부	민간						
기부 (물적나눔)	정 부	국세청	보고	개인/법인	국세통계연보	승인	1년	소득구분별 기부인원/신고법인 및 금액
		통계청	조사	가구	가계동향조사	승인	1월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 기부금 포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보고	개인/기업	식품기부 실적 (인터넷 홈페이지 공 시)		1일	기부자, 기부식품, 이용자 현황 등
자원봉사활동 (인적나눔)	정 부	통계청	조사	개인	생활시간조사	승인	5년	활동 분야별 평균 참여시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보고	개인	사회복지자원봉사통 계연보	승인	1년	자원봉사자 및 활동 횟수/시간 현황, 정기적 활동 여부 등
		행정자치부·한국 중앙자원봉사센터	보고	개인	자원봉사센터현황		1년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횟수 현황, 정기적 활동 여부
기부 + 자원봉사활동	정 부	통계청	조사	개인	사회조사	승인	2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현금 정기기부, 물품기부 횟수, 기부이유, 희망분야, 대상 인지 경로, 향후 기부 의사, 유산기부 의사, 기부문화 확산
		광역시도	조사	개인	지역사회조사	승인	1년	광역시도별 나눔 활동여부, 기부액, 횟수 등 관련 추정내용 다양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	개인	복지패널조사	승인	1년	기부/자원봉사활동 활동여부,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횟수
	민 간	이름더운재단	조사	개인/기업	기빙인덱스			자원봉사활동/기부 참여 여부, 기부채/자원봉사채, 기부액, 동기, 기부 계획
		한국자원봉사문화	조사	개인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 조사연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기업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 공헌백서		2년	사회공헌 지출 현황,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방식, 기업 사회공헌 인식,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율/건수/시간

부문	작성기관	유형	작성대상	통계(조사/보고서)명	승인	작성주기	주요 추정내용
생명나눔	정 부	보고	개인(단체)	혈액사업통계연보		1년	헌혈실적, 성별·연령·직업·연도·등록·헌혈자별 실인원수
		보고	개인	장기이식통계연보		1년	장기별·성별·기증형태별·지역별·연령별·혈액형 별 기증자 수, 기증희망등록자 수, 이식대기자 수, 생존시 이식 추이
비영리조직	정 부	보고	개인/법인	국세통계연보	승인	1년	세액감면 신고 현황
		조사	사업체	전국사업체조사	승인	1년	비영리조직(비법인단체)형태, 종사자 수, 사업종류, 영업개월 수, 매출액 등
		가공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등	지역소득통계 국민계정	승인	1년	지출계정(비영리단체·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투입 및 산출
	민 간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분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공시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241개 NPO조직 현황, 사업영역, 예결산, 모금액, 후원자수, 직원/자원봉사자현황
		조사	개발복지NPO	한국개발복지 NPO 총람			NPO 모금액, 모금액출처, 지출처 (국내,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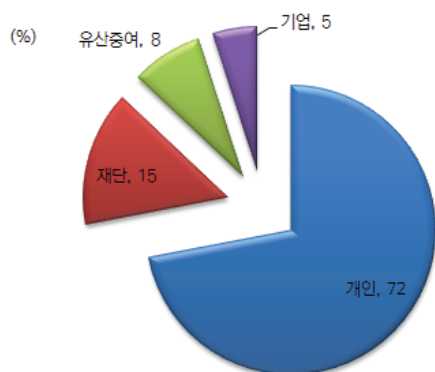
자료: 박주인 & 이희길, 2013 업데이트

2.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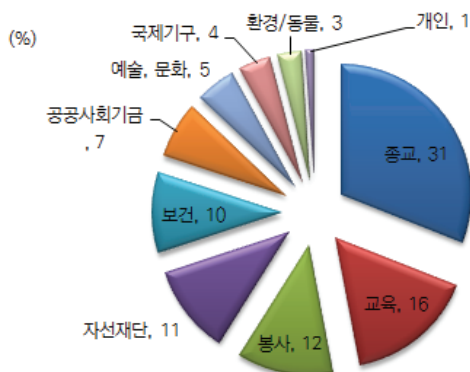
나눔의 개념적 분석틀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나눔에 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나눔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iving USA」는 Giving USA 재단 후원으로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가 1년 주기로 진행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기부 실태조사로 ‘개인, 유증, 기업, 재단이 현금, 현물을 공익적인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giving)을 정의하며 기부총액, 기부주체별 기부액, 단체 분야에 따라 기부 받은 금액 등을 추정하고 있다 (박주언 & 이희길, 2011). 2013년 기부 총액은 약 3천 350억 달러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Giving USA, 2014).

[그림 2-1] 기부주체별 기부액



[그림 2-2] 기부 받은 단체 분야



자료: Giving USA, 2014

「Volunteering in the USA」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현재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부가조사로서 ‘지난 1년 동안 단체를 통하거나 단체를 위해 활동비용을 제외한 무급의 자발적인 활동을 한 자’를 자원봉사자로 정의하여 그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한 단체의 숫자 및 유형, 활동 시간, 활동한 일 종류, 참여 계기, 해외 활동 경험여부, 원거리 활동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박주언 & 이희길, 2011). 2012. 9~ 2013. 9월 동안 미국 내 자원봉사자는 전년대비 1.1% 감소하여 약 62.6 백만 명(전체 인구의 25.4%)으로 2002년 이래 가장 저

조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며, 여성의 28.4%, 백인의 30.7%, 기혼자의 30.7%, 35~44세의 30.6%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BLS, 2014).

영국 통계청의 「Giving UK」는 ‘개인이 현금을 자동이체나 공제 등의 9가지 방법으로 의학연구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15가지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기부(giving)로 정의하여 기부 방법과 분야, 기부액 등을 추정하였다(박주연 & 이희길, 2011). 2012/2013 년 기부 총액은 약 10억 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약 1억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주로 현금 기부의 행태로 영국 내 약 57%가 의학연구, 병원/호스피스, 아동 등의 분야에 기부하였다(Charities Aid Foundation, 2014).

영국의 「Citizenship Survey: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은 지난 1년 동안의 공식/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과 지난 4주 동안의 기부 활동을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공식 자원봉사활동의 방법(모금활동/후원행사 참가, 단체주도/위원회가입, 활동이나 행사 기획 및 도움, 사람들 방문, 멘토링, 조언/정보제공/상담, 행정지원, 이동지원, 대리하기(representing), 캠페인, 그 밖의 실질적 도움, 기타) 등이다.

호주의 총리 산하 지역사회시장파트너십위원회(The Prime Minister's Community Business Partnership)의 「Giving Australia」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기부와 자원봉사(개인만)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부는 개인과 기업이 비영리단체에게 돈, 물품 또는 지역사회서비스(기업만)를,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 비영리단체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박주연 & 이희길, 2011).

호주 통계청은 5년 주기로 「Voluntary Work, Australia」를 통해 호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참여한 단체 및 활동의 종료 여부와 참여 동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자원봉사활동이란 ‘단체를 통해 시간, 서비스 또는 기술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무급의 자발적인 도움’을 의미한다(박주연 & 이희길, 2011). 2010년 성인 36%인 6.1백만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2006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비해 약 2% 증가한 수치로 남성보다 여성, 다른 연령층에 비해 35~44세와 65~74세의 연령층이, 자원봉사자의 68%가 한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캐나다 통계청의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CSGVP)」는 ‘지난 1년간 비영리단체에 한번이라도 돈을 제공하는 것(물품 기부의 경

우 금액 비추정)을 기부로, '비영리기관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하는 것(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비포함)'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방법, 이유, 동기,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 이전 경험 등을 조사한다. 2010년 15세 이상 캐나다 인구의 84% (28,285천 명)가 기부, 47% (13,282천 명)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기부 총액은 약 106억 원, 총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약 20억 시간으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Social and Aboriginal Statistics Division, 2012).

해외 주요 나눔 통계에서는 주로 기부의 방법, 분야, 기부액과 자원봉사 활동 단체, 유형, 방법, 동기 등에 대해 나눔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영역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눔의 주체, 수단, 내용, 자발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13년의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은 34.6%인 반면 영국은 57%(2012/2013년), 캐나다는 84%(2010년)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표 2-3〉 기부 참여율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기부총액		약 2천 413억 US달러	10억 파운드	106억 캐나다 달러
기부 참여율(%)	34.5	NA	57	84
조사시점	2013	2013	2012/2013	2010
통계명	사회조사	Giving USA	Giving UK	CSGVP

주: 1) 각국의 기부 주체는 한국(15세 이상 개인), 미국(16세 이상 개인), 영국(16세 이상 개인), 캐나다(15세 이상 개인)
2) 기부 참여율은 인구 대비 기부에 참여한 인구 수.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3; Charities Aid Foundation, 2014; Giving USA, 2014; Social and Aboriginal Statistics Division, 201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우리나라가 17.7%(2013년)인 반면 미국 25.4% (2012/2013년), 호주 36%(2010년), 캐나다 47%(2010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 및 정책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2-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7.7	25.4	36	47
조사시점	2013	2012/2013	2010	2010
통계명	사회조사	Volunteering in the USA	Voluntary Work, Australia	CSGVP

주: 1) 각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한국(15세이상), 미국(16세 이상), 호주(18세 이상), 캐나다(15세 이상) 마다 상이함

2) 자원봉사 참여율은 인구 대비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구 수.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BLS, 2014; Social and Aboriginal Statistics Division, 2012)

〈표 2-5〉 해외 나눔통계 현황

국가	통계자료명	영역	조사 영역에 대한 정의	주요추진내용
미국	Giving USA	기부	개인, 유증, 기업, 재단이 현금, 현물을 공익적인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	전년도 기부총액, 기부주체별 기부액, 단체 분야에 따라 기부 받은 금액
	Volunteering in the USA	자원봉사 활동	지난 1년 동안 단체를 통하거나 단체를 위해 활동비용을 제외한 무급의 자발적인 활동을 한 자 (공식적 활동만 조사)	활동한 단체의 숫자/유형, 활동 시간, 활동의 종류, 참여 계기, 해외 활동 경험 여부, 원거리 활동 경험 여부
	US Organ Transplantation Annual Data Report	생명나눔	장기증자는 한번이라도 장기를 이식해 준 사람으로 여러 번 장기이식을 한 사람의 경우 장기별 이식 마다 포함되며, 이식 대기 환자의 경우 필요한 장기 이식 횟수에 상관없이 개인으로 계산됨	간, 췌장, 창자, 심장, 폐 등 장기별 이식 현황, 이식 대기자 현황, 지역별 장기이식 분포, 사후기증 현황, 소아 장기기증, 이식경과
영국	Giving UK	기부	개인이 현금을 자동이체나 공제 등의 9가지 방법으로 의탁연구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15가지 분야에 제공하는 것	기부방법, 기부 분야, 기부액
	Citizenship Survey: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자원봉사 활동	공식 자원봉사활동의 방법 (12가지)과 단체 (16가지), 비공식 자원봉사활동 방법(12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지난 1년 동안의 공식/비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지난 4주 동안의 기부 활동 조사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ctivity Report	생명나눔	장기증자는 한번이라도 장기를 이식해 준 사람으로 정의	신장, 췌장, 간, 심장, 창자, 각막 등 장기별 이식 현황, 이식성공률, 이식 대기 환자 현황
호주	Giving Australia	기부 자원봉사 활동	기부는 개인과 기업이 비영리단체에게 돈,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개인이 비영리단체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활동	개인과 기업에게 지난 1년 동안의 기부와 자원봉사(개인만) 활동
	Voluntary Work Survey	자원봉사 활동	단체를 통해 시간, 서비스 또는 기술 형태로 제공하는 무급의 자발적인 도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참여한 단체 및 활동의 종류와 참여 동기
	Organ and Tissue Authority (OTA) Annual Report	생명나눔	뚜렷한 정의 없이 장기이식을 포함함	장기증자 수, 이식받은 환자 수, 장기이식 건수, 이식성공률,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 OTA 관련 예산/지출

국가	통계자료명	영역	조사 영역에 대한 정의	주요추진내용
캐나다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CSGVP)	기부 자원봉사 활동	지난 1년간 비영리단체에 한 번이라도 돈을 제공하는 것 (물품조사의 경우 금액 비추정) 비영리기관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하는 것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비포함)	기부방법, 기부 이유, 동기,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 물품기부 여부, 학창 시절 경험 참여여부, 이전 경험, 주된 활동, 이유, 습득한 기술,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 비공식적 봉사 현황 현황과 경제적 가치, Canadian Blood Services 운영 예산 및 인력 현황
	Delivering Value Annual Report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CORR) Annual Report: Treatment of End-Stage Organ Failure in Canada」	생명나눔 생명나눔	현혈에 중점을 둔 생명나눔 통계 병원 투석 프로그램 (hospital dialysis program), 지역 이식 프로그램(regional transplant programs), 장기조달기구(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OPO), 신장 투석 서비스(kidney dialysis services)등에 등록된 데이터 활용	투석, 장기이식, 생명기부 인원, 기증자 및 환자 연령, 장기별 이식 사례 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이식의 전반적 추이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2014;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4; Canadian Blood Services, 2014; Charities Aid Foundation, 201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National Health Services Blood and Transplant, 2014; OPTN/SRTR, 2014; Social and Aboriginal Statistics Division, 2012

제4절 소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나눔이란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 및 단체가 사회의 복지향상과 공익(public good)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체제에서 위협받는 빈곤과 양극화, 일자리 감소, 생존경쟁, 신뢰의 붕괴 등으로부터 사회공동체의 상생관계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눔 분석틀은 나눔의 정의에서 비롯되며, 해외 법에서 규정하는 나눔의 목적과 이를 바탕으로 해외 나눔 통계에서 구체화 된 나눔의 주체, 형태, 방법 등을 포괄한다. 나눔의 주체, 형태, 방법 등의 분류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과 ‘공익’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기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및 단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나눔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현금, 현물 등의 물품을 나눔 주체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생명나눔과 구분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에게 개인이 직접 또는 비영리조직이나 단체를 매개로 하여 비대가성의 비강제적으로 수행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은 가까운 친척 이외 누군가 또는 환경에 유익하도록 무보수로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정의하고 있다(UK Cabinet Office, 2007).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약간씩 모호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명나눔은 헌혈 및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나눔 주체자의 신체 일부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생명나눔의 형태로 헌혈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살아있는 혹은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신장, 각막, 간, 심장 등을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장기 이식이 있다. 생명나눔은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처럼 한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13년의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은 34.5%인 반면 영국은 57%(2012/2013년), 캐나다는 84%(2010년)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우리나라가 17.7%(2013년)인 반면 미국 25.4%(2012/2013년), 호주 36%(2010년), 캐나다

47%(2010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기부 참여율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 및 정책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기부 참여율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

국내나눔의 실태

제1절 기부

제2절 자원봉사활동

제3절 생명나눔

제4절 소결



3

국내나눔의 실태 <<

본 장에서는 국내 나눔의 실태를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으로 구분하고, 기부에서는 개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기부동향, 기부규모, 기부 인식 및 태도, 기부여부별 특성을 살펴보고, 기업에서는 기부참여 및 규모, 기부처 및 기부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 개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동향, 자원봉사활동 규모, 자원봉사활동 인식 및 태도, 자원봉사활동 여부별 특성을 그리고 기업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건수 및 참여비율을 살펴보았다. 생명나눔에서는 대표적인 헌혈과 장기기증 등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1절 기부

기부는 개인단위에서의 기부와 기업에서의 기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기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부동향, 기부규모, 기부 인식 및 태도, 기부여부별 특성 등을 살펴보고, 기업에서의 기부 참여 및 규모, 기부처 및 기부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1. 개인

개인단위에서의 기부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조사되는 사회참여 분야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부규모 파악은 사회조사 이외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의 결과를 살펴보았고, 자발적 민간모금의 규모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기부 단체/기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림 3-1] 개인의 기부실태 파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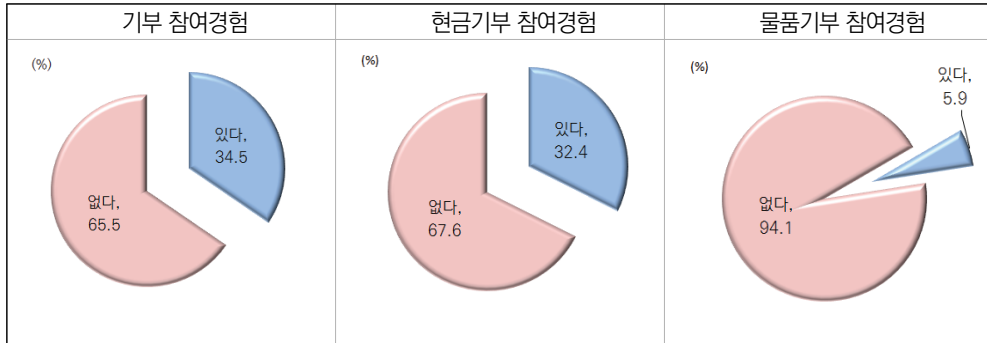
가. 기부 동향

기부 참여율 변화의 추이와 성,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별 참여율, 그리고 기부경로 등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부 참여율 추이

2013년 사회조사에서 15세 이상 인구의 지난 1년간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2011년의 36.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현금기부 참여 경험은 32.4%, 물품기부 참여 경험은 5.9%로 물품기부 보다는 현금기부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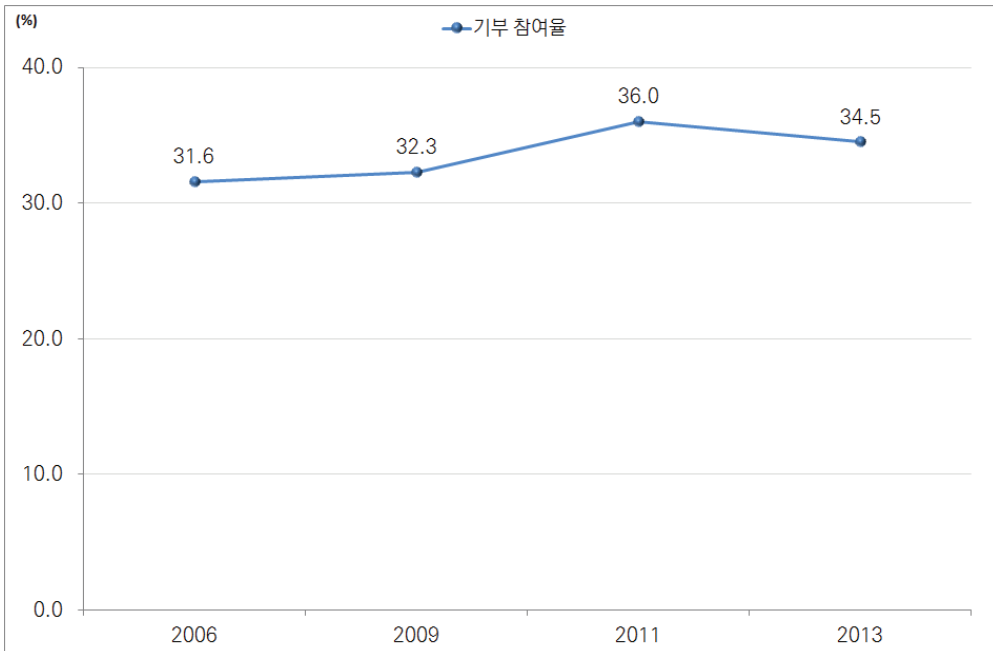
[그림 3-2] 기부 참여현황(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15세 이상 인구의 기부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31.6%에서 2009년에는 32.3%로, 2011년에는 36.0%로 3.7%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간 낮아진 34.5%의 기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3-3] 기부 참여율 추이(15세이상): 2006~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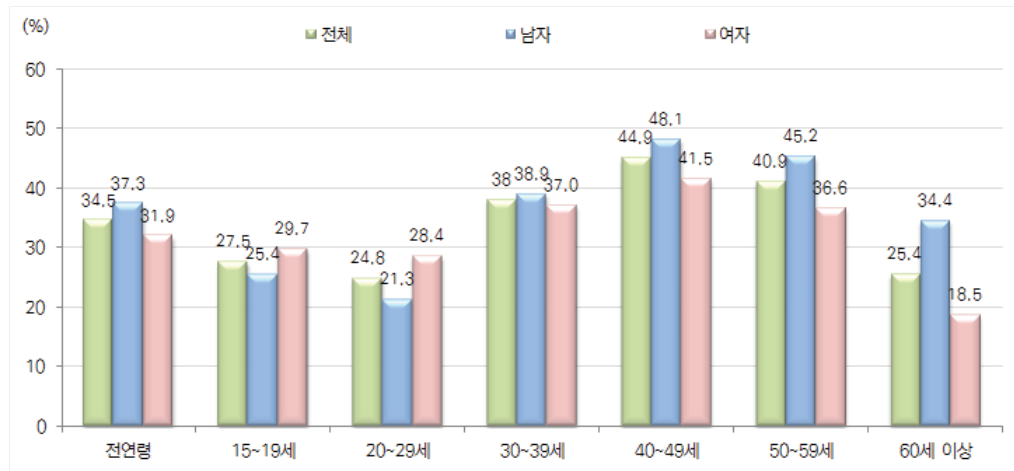
2) 인구사회특성별 기부 참여율

□ 성 및 연령별 기부 참여율

2013년 15세 이상인구의 성·연령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남자가 37.3%, 여자가 31.9%로 남자가 여자보다 기부 참여율이 5.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기부율이 4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의 기부율이 2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20대까지는 여성의 기부 참여율이 높았으나 30대부터는 남성의 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남성의 기부 참여율이 34.4%인 반면 여성의 기부 참여율은 18.5%로 남성의 기부 참여율이 여성의 기부 참여율에 비해 15.9%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성별 연령대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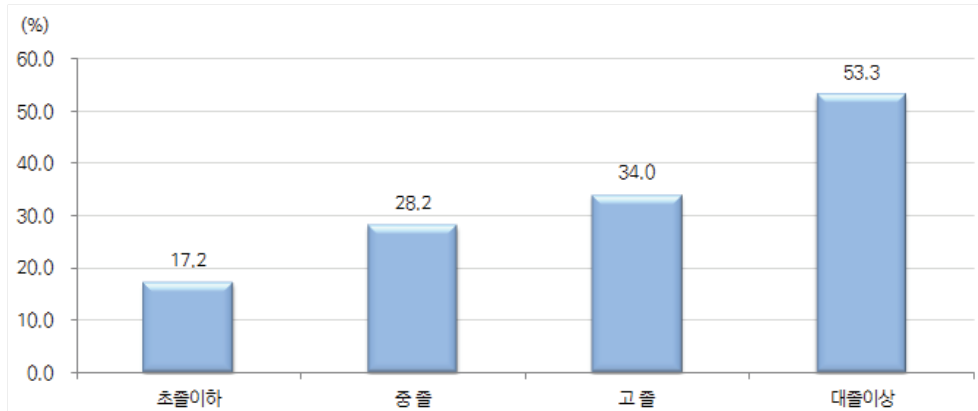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교육정도별 기부 참여율

교육정도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인 경우 53.3%가 기부경험을 갖고 있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졸로서 34.0%, 중졸은 28.2%, 초졸이하는 17.2%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교육정도별 기부 참여율(30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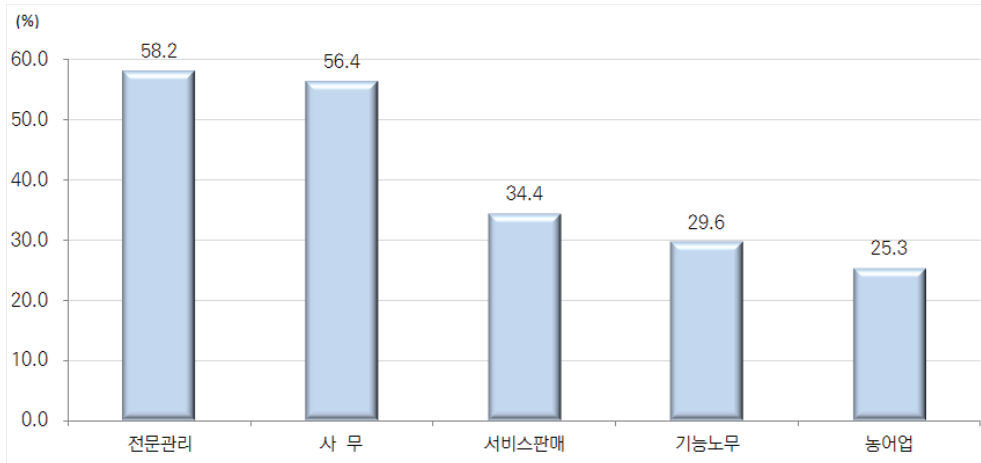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직업 및 소득구간별 기부 참여율

직업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5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무직으로 56.4%가 기부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판매직이 34.4%, 기능노무직이 29.6%, 농·어업직이 25.3%의 순으로 기부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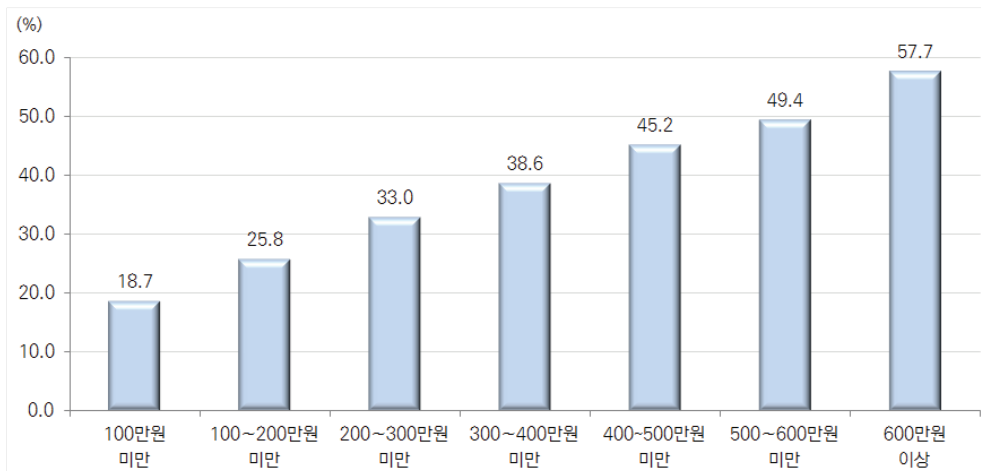
가구의 월평균 소득구간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이 5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500~600만원 미만 구간이 49.4%로 다음 순으로 기부 참여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소득 구간은 100만원 미만으로 18.7%의 기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3-6] 직업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3-7] 소득구간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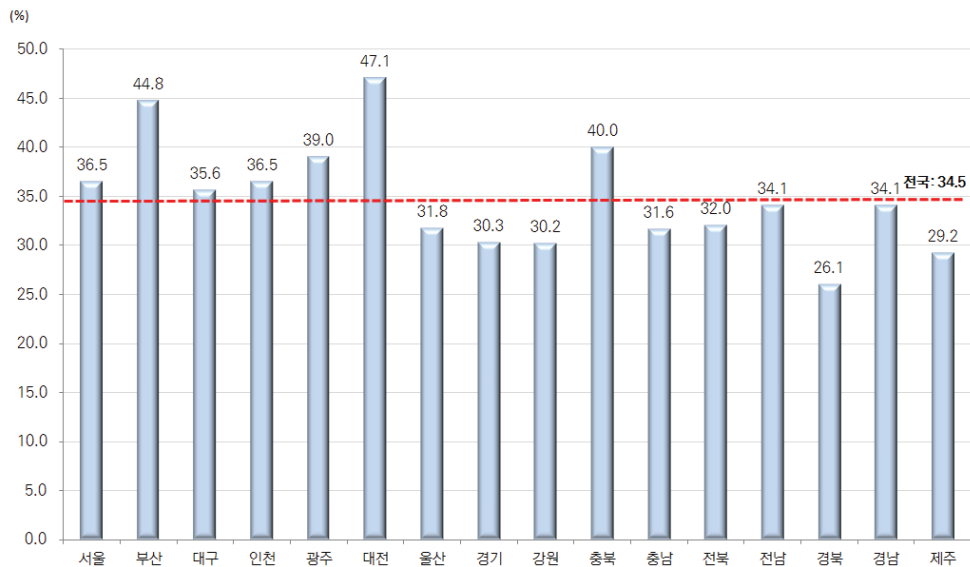
주: 가구소득은 지난 1년동안 '전체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을 합한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지역별 기부 참여율

기부 참여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전이 47.1%로 가장 높고, 다음은 부산 44.8%, 충북 40.0% 순으로 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34.5% 보다 낮은 지역은 경북(26.1%), 제주(29.2%), 경기(30.3%), 강원(30.2%), 울산(31.8%), 전북(32.0%), 충남(31.6%), 전남(34.1%)로 나타났다.

[그림 3-8] 지역별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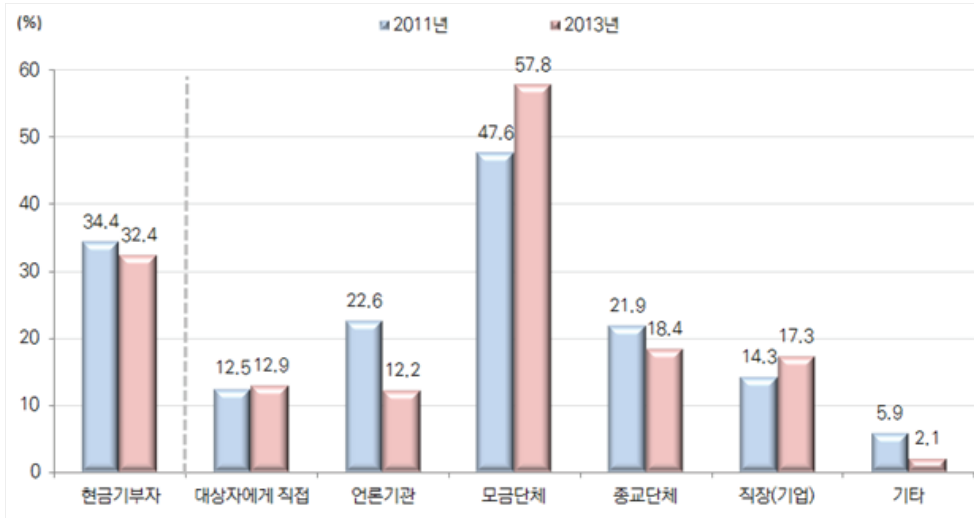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3)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

2013년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모금단체가 57.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종교단체(18.4%), 직장(기업)(17.3%)의 순이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모금단체가 2011년 47.6%에서 2013년에는 57.8%로 증가하여 10.2%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종교단체는 21.9%에서 18.4%로 3.5% 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직장(기업)은 14.3%에서 17.3%로 3.0%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언론기관은 22.6%에서

12.2%로 10.4% 포인트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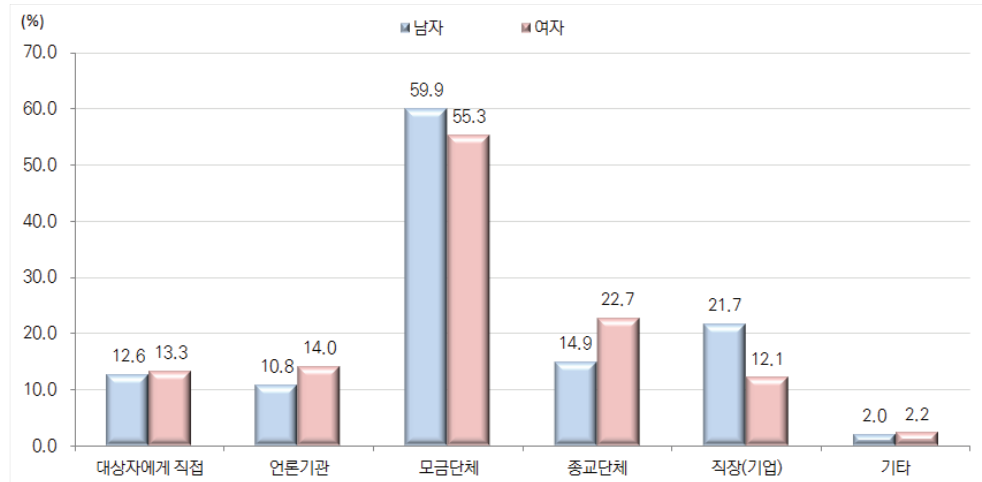
[그림 3-9]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3년 성별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모금단체, 직장(기업)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현금기부 참여율이 높은 반면,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금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성별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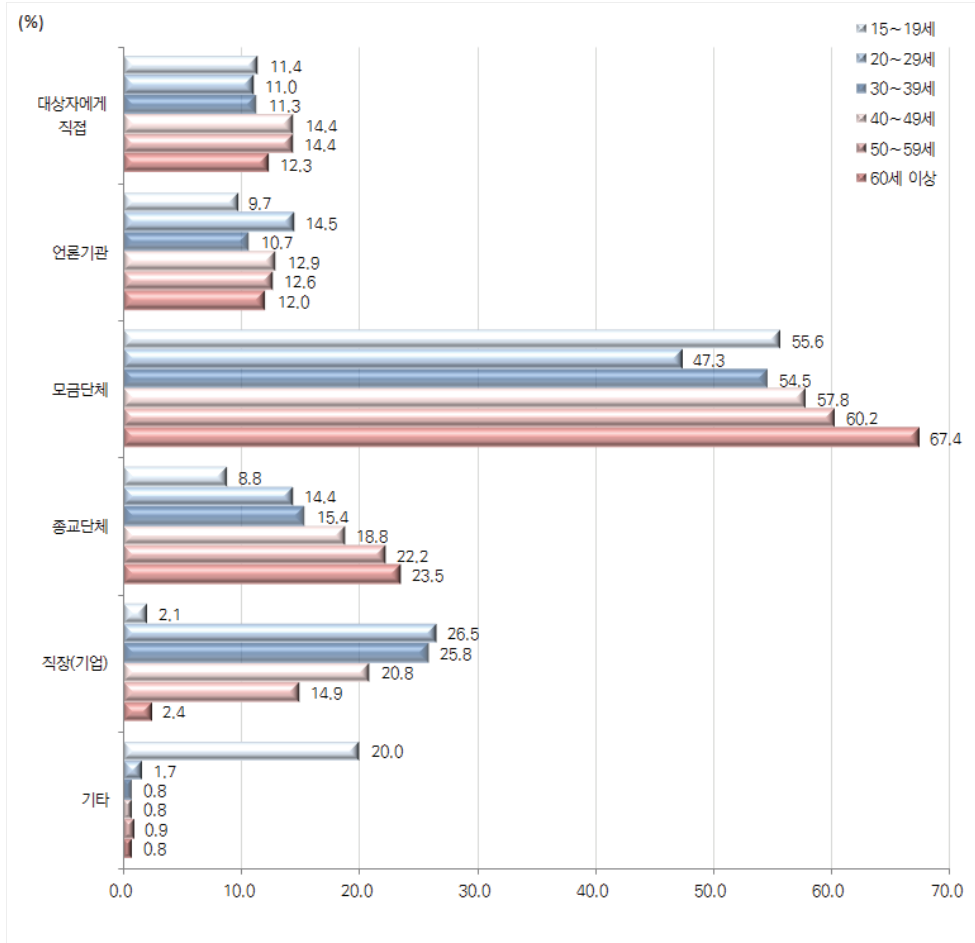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기부경로별로 연령대별 현금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는 40대와 50대가 14.4%로 가장 높고, 20대가 11.0%로 가장 낮았으며, 15~19세, 30대도 각각 11.4%와 11.3%로 낮게 나타났다. 언론기관을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은 20대가 1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로 12.9%였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15~19세 연령층으로 9.7%를 나타냈다.

모금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은 60세 이상이 67.4%로 가장 높고, 다음은 50대 60.2%, 40대 57.8%, 30대 54.5%, 20대 47.3%, 15~19세가 55.6%로 20대 이상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모금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은 60세 이상이 23.5%, 50대가 22.2%, 40대 18.8%, 30대 15.4% 등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단체를 통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기업)을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은 20대가 26.5%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대 25.8%, 40대 20.8%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기부경로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연령대별 기부경로별 현금기부 참여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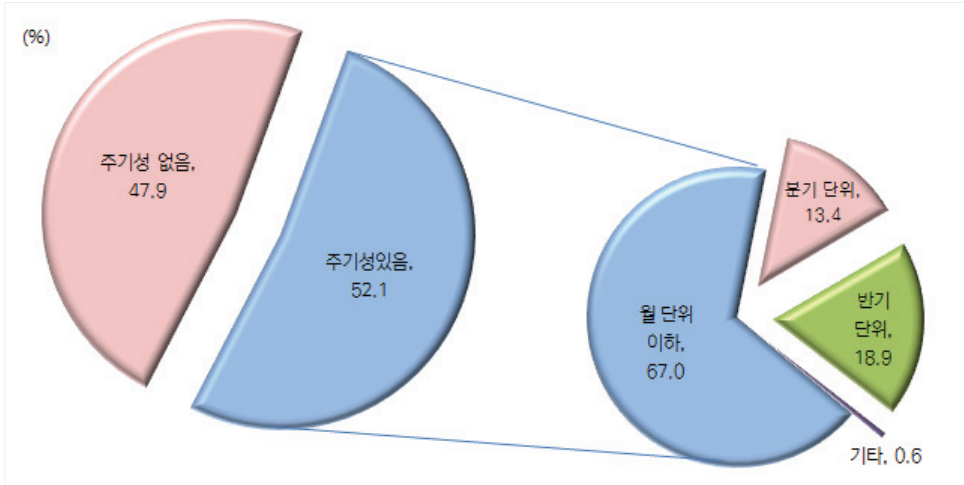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4) 정기적 기부 참여율

현금기부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2013년 현금기부자 중 52.1%가 주기적으로 현금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기적 참여자들의 67.0%는 월단위 이하로 현금기부에 참여하였으며, 18.9%는 반기별로 그리고 13.4%는 분기단위로 현금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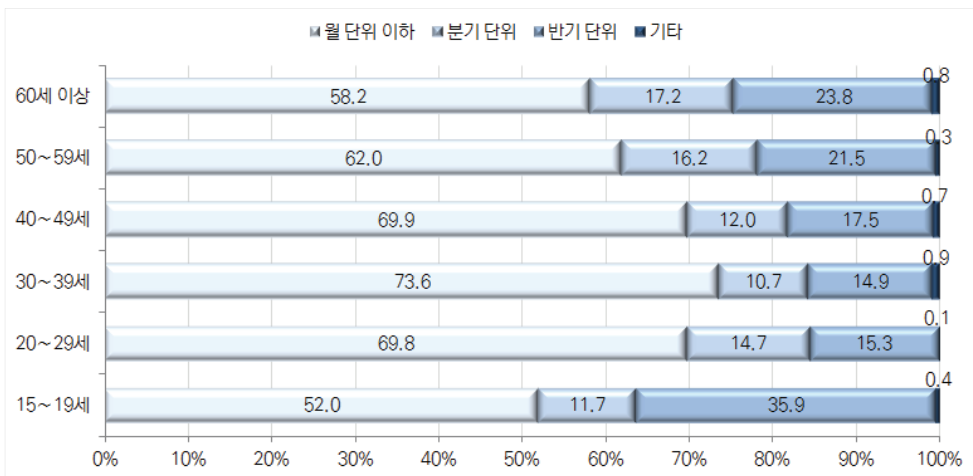
[그림 3-12] 정기적 현금기부 참여 현황(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대별로 현금기부가 어느 정도 주기적인지를 살펴보면 월단위 이하의 주기적 참여가 30대 연령층이 73.6%로 가장 높고, 40대 연령층이 69.9%, 20대 연령층이 69.8%였으며, 50대와 60세 이상도 각각 62.0%, 58.2%로 나타났으나 15~19세 청소년층은 52.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현금기부의 주기적 참여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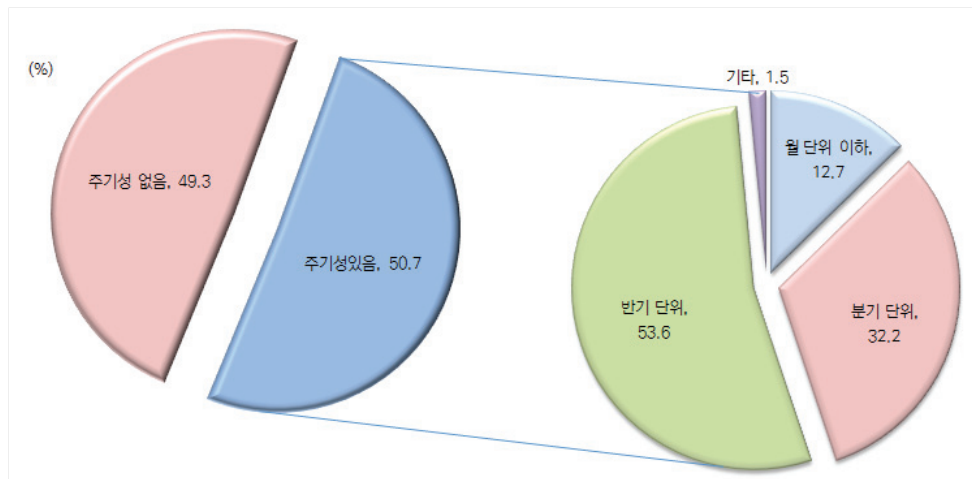
[그림 3-13] 연령대별 현금기부 주기 분포: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물품기부자의 정기적 기부 정도를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기부한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주기적 기부자들의 기부주기는 반기단위가 53.6%로 가장 높고, 분기단위 32.2%, 월단위 이하가 12.7% 순이었다.

[그림 3-14] 정기적 물품기부 참여 현황(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나. 기부 규모

개인 및 법인의 기부 규모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개인의 기부 규모를 통계청의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세무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는 국세통계연보는 간접적으로 기부금의 총액을 살펴볼 수 있고,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현금의 기부 횟수나 기부정도를,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에서 비영리단체에 얼마나 이전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1) 기부 총액

국세통계연보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위해 신고하는 자료를 통해 기부금 총액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2006년 4조 2,045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5조 5,84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종합소득자의 기부금액은 2006년

1조 1,408억 원에서 2013년에는 2조 2,47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총액은 2006년 5조 3,452억 원에서 2013년에는 7조 8,314억 원으로 증가하여 7년 동안 약 1.5배가 증가하였다. 기부금 총액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의 기부금액을 함께 살펴보면 2006년 2조 7,956억 원이던 기부금액은 2013년에는 4조 6,545억 원으로 약 1.7배가 증가하여 개인의 기부금 증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비율은 2006년 각각 65.7%와 34.3%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62.7%, 37.3%로 개인의 기부금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총액은 2006년 8조 1,408억 원에서 2013년에는 12조 4,859억 원으로 약 1.5배가 증가하였다.

〈표 3-1〉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6~2013

(단위: 백만원, %)

	개 인				법 인		총 계	GDP 대비 비중
	근로 소득자	종합 소득자	소계	%		%		
2006	4,204,450	1,140,756	5,345,206	65.7	2,795,622	34.3	8,140,828	0.84
2007	4,154,752	1,283,316	5,438,068	62.1	3,325,078	37.9	8,763,146	0.84
2008	4,274,666	1,395,708	5,670,374	62.7	3,378,565	37.3	9,048,939	0.82
2009	4,637,220	1,512,495	6,149,715	64.0	3,460,709	36.0	9,610,424	0.83
2010	4,855,563	1,673,999	6,529,562	65.1	3,504,459	34.9	10,034,021	0.79
2011	5,184,963	1,901,707	7,086,670	63.5	4,068,045	36.5	11,154,715	0.84
2012	5,541,012	2,186,211	7,727,223	65.3	4,112,276	34.7	11,839,499	0.86
2013	5,584,169	2,247,192	7,831,361	62.7	4,654,495	37.3	12,485,856	0.87

주: GDP대비 비중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통해 공표되는 명목 GDP를 활용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기부실태를 살펴보면 기부인원은 2007년 348만 3천명에서 2013년에는 492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기부금액도 동 기간 중 4조 1,547억 원에서 5조 5,84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기부금액은 11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감소하여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은 증가하였으나 1인당 기부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총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층의 기부인원은 2007년 107만 7천 명에서 2013년에는 139만 3천명으로 증가하고, 기부금액도 2조 1,630억 원에서 2조 8,48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기부금액도 2007년 201만원에서 204

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는 적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전체근로소득자와 상위 10% 소득층에서 모두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의 증가를 보여 기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7~2013

(단위: 명, 백만원)

	전체 근로소득자			급여총계 상위 10%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2007	3,483,207	4,154,752	1.19	1,076,944	2,163,011	2.01
2008	3,634,599	4,274,666	1.18	1,132,563	2,240,943	1.98
2009	3,931,704	4,637,220	1.18	1,190,227	2,429,950	2.04
2010	4,118,176	4,855,563	1.18	1,271,731	2,576,554	2.03
2011	4,428,337	5,184,963	1.17	1,320,927	2,728,684	2.07
2012	4,709,343	5,541,012	1.18	1,333,474	2,839,855	2.13
2013	4,923,854	5,584,169	1.13	1,393,436	2,848,438	2.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종합소득자의 기부금과 상위 10% 소득자의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기부인원은 50만 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87만 9천명으로 약 76%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기부금액은 1조 2,833억 원에서 2조 2,472억 원으로 약 75%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기부금액은 2007년과 2013년이 동일한 256만원 수준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층의 기부인원은 2007년 14만 6천명에서 2013년 27만 명으로 85.1%가 증가하였으며, 기부금액은 7,889억 원에서 1조 4,549억 원으로 84.4%가 증가하였다. 1인당 기부금액은 2007년 541만원에서 2013년 539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3-3〉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2007~2013

(단위: 명, 백만원)

	전체 종합소득자			종합소득 상위 10%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기부인원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2007	500,354	1,283,316	2.56	145,918	788,883	5.41
2008	557,159	1,395,708	2.51	175,542	908,004	5.17
2009	594,931	1,512,795	2.54	184,291	966,597	5.24
2010	643,969	1,673,999	2.60	202,295	1,075,289	5.32
2011	689,252	1,901,707	2.76	219,792	1,255,110	5.71
2012	886,617	2,186,211	2.47	259,134	1,359,108	5.24
2013	879,216	2,247,192	2.56	270,072	1,454,857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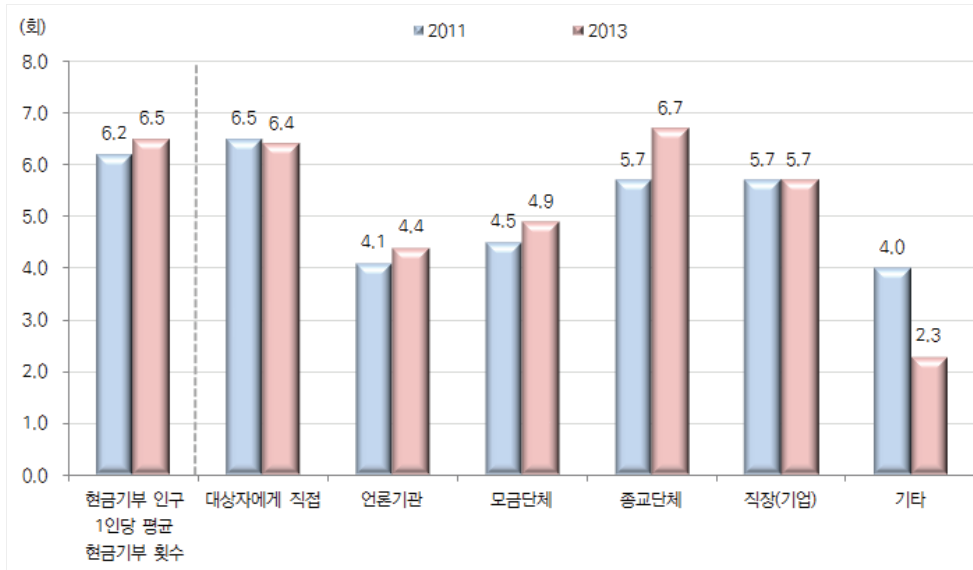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2) 평균 기부 횟수 및 금액

현금을 기부한 사람들의 평균 기부 횟수는 2011년 6.2회에서 2013년에는 6.5회로 0.3회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 기부 횟수를 기부경로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 6.7회,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6.4회, 직장(기업) 5.7회, 모금단체 4.9회 순이었으며,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종교단체가 5.7회에서 6.7회로 1.0회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대상자에게 직접전달은 6.5회에서 6.4회로 0.1회가 감소하였다.

인구사회특성별 평균 현금기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현금기부자는 1인당 평균 20만 5천원을 기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동부)이 20만 9천원 농촌지역(읍면부)이 18만원으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많았고, 남녀별로는 남자가 22만 6천원, 여자가 17만 9천원으로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6만 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로 25만 3천원이었다.

[그림 3-15] 평균 현금기부 횟수(15세이상): 2011, 2013



주: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4> 인구사회특성별 평균 현금기부액(15세이상): 2013

(단위: 천원)

구분	현금기부 인구 1인당	15세 이상 인구 1인당	기부경로						
			대상자 직접	언론 기관	모금 단체	종교 단체	기업 (직장)	기타	
계	205	66	301	61	122	354	120	82	
지역	도시(동부)	209	70	298	61	125	355	125	77
	농어촌(읍면부)	180	47	319	59	104	342	81	110
성	남자	226	81	371	68	123	448	134	101
	여자	179	52	221	54	121	280	89	61
연령	15~19세	30	8	49	13	30	47	39	9
	20~29세	125	29	99	62	117	241	55	35
	30~39세	179	64	189	61	146	314	91	28
	40~49세	253	106	350	63	170	353	133	262
	50~59세	269	104	378	78	120	456	197	212
	60세이상	193	46	442	44	64	348	204	460
교육 정도	초졸이하	98	16	145	48	41	298	48	43
	중 졸	81	22	125	30	42	209	67	12
	고 졸	173	48	257	55	101	327	93	103
	대졸이상	271	125	383	80	175	402	130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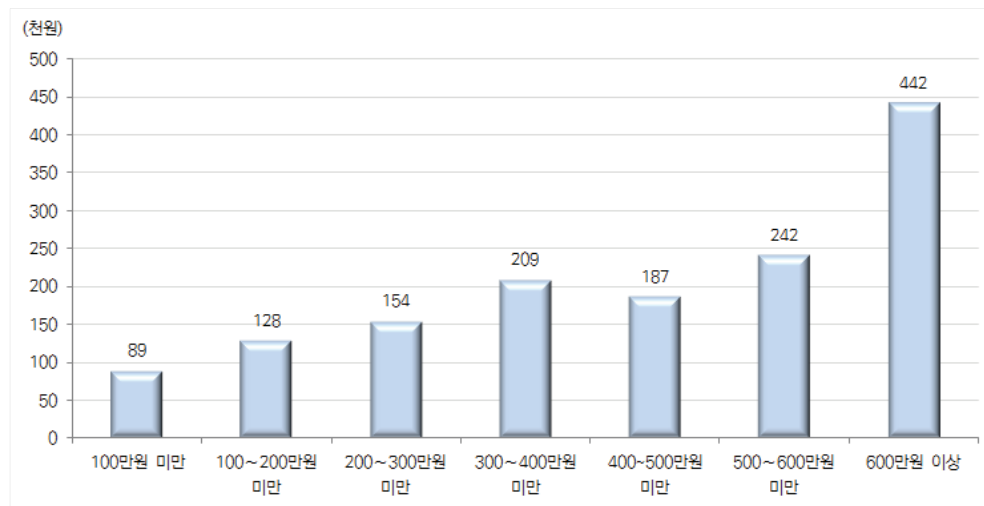
구분	현금기부 인구 1인당	15세 이상 인구 1인당	기부경로						
			대상자 직접	언론 기관	모금 단체	종교 단체	기업 (직장)	기타	
직업	전문관리	328	183	458	95	216	480	147	341
	사무	191	104	236	50	137	352	96	164
	서비스판매	207	66	318	67	118	328	142	97
	농어업	212	50	319	44	150	337	1,451	292
	기능노무	142	40	256	50	56	340	90	139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89	16	187	55	47	171	70	43
	100~200만원미만	128	31	215	66	65	237	62	68
	200~300만원미만	154	47	217	49	93	302	82	51
	300~400만원미만	209	75	364	56	122	363	107	21
	400~500만원미만	187	81	284	47	113	325	106	56
	500~600만원미만	242	114	292	61	167	452	102	81
	600만원이상	442	241	466	114	289	610	212	252

주: 기부경로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가구소득별 기부금액은 600만원 이상이 44만 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0만원대로 24만 2천원이었으며, 300만원대가 20만 9천원,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8만 9천원이었다. 보편적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부금액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6] 가구소득별 기부금액(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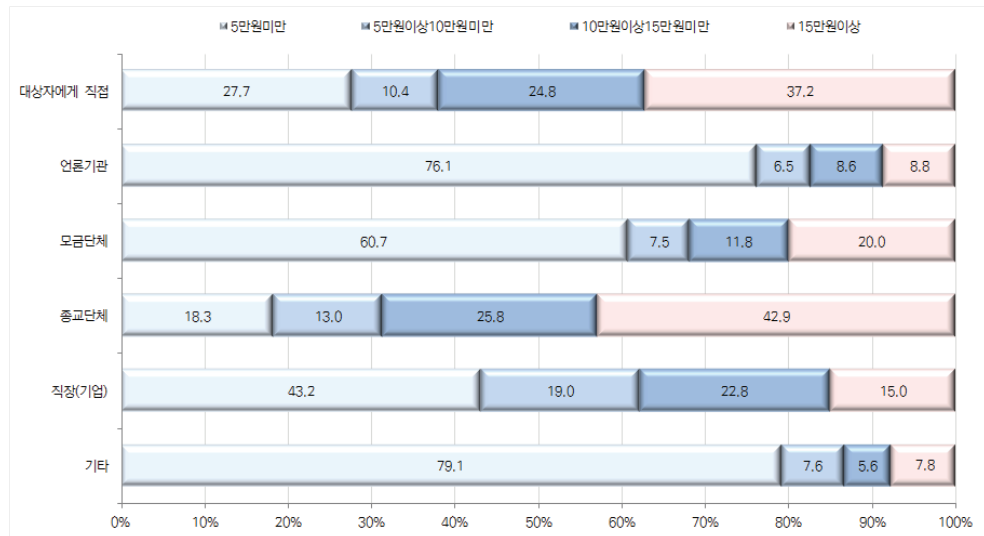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기부경로별 현금기부액 분포를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15만원 이상이 37.2%로 가장 높고, 다음은 5만원 미만으로 27.7%, 그리고 10만원에서 15만원미만이 24.8%였다.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인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이 7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10만원에서 15만원 미만 그리고 15만원 이상이 각각 8.6%,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단체를 통한 기부인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이 60.7%로 가장 높고, 다음은 15만원 이상 20.0%, 10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이 11.8% 순이었다.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의 경우 15만원 이상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은 10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이 25.8%, 5만원 미만이 18.3%의 순이었다. 직장(기업)을 통한 기부의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이 43.2%로 가장 높고, 다음은 10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이 22.8%,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19.0% 순이었다.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에 기부금액이 큰 반면 언론기관, 모금단체를 통한 경우는 기부금액 단위가 낮았다.

[그림 3-17] 기부경로별 현금기부금액 분포(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별 기부경로별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15~19세는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가 약 4만 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종교단체 약 4만 7천원, 모금단체 3만원의 순이었으며, 20~29세는 종교단체가 약 24만 1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모금단

체 약 11만 7천원,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이 약 9만 9천원의 순이었으며, 30~39세는 종교단체가 약 31만 4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가 약 18만 9천원, 모금단체 14만 6천원의 순이었으며, 40~49세는 종교단체가 약 35만 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가 약 35만 원, 모금단체가 약 17만 원의 순이었으며, 50~59세는 종교단체가 약 45만 6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가 약 37만 8천원, 직장(기업)이 약 19만 7천원의 순이었으며, 60세 이상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가 44만 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종교단체 34만 8천원, 직장(기업)이 20만 4천원 순이었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하여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는 15~19세에서 가장 높고, 이후는 낮았으나 점차 높아져 60세 이상에서는 가장 많은 평균기부금액을 나타내었다.

〈표 3-5〉 연령대별 기부경로별 평균기부금액: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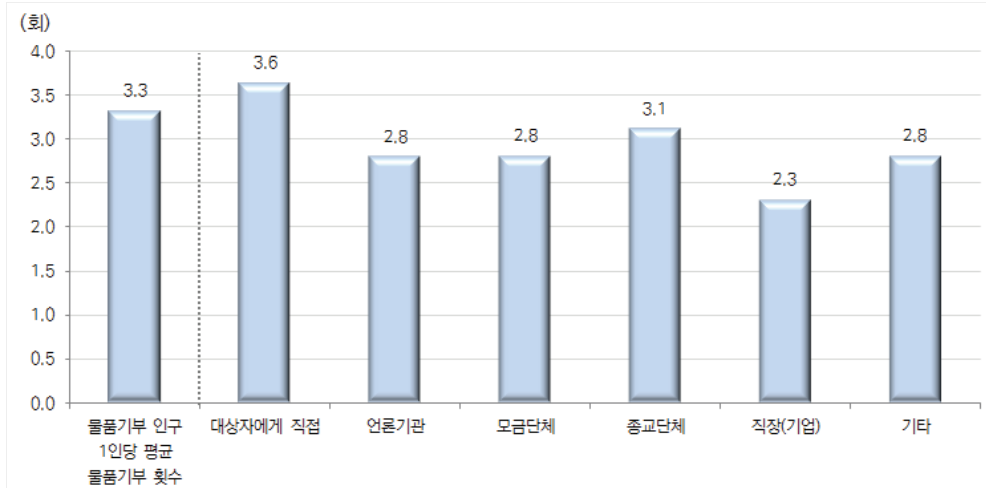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기부경로						
	대상자 직접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기타	
연령	15~19세	48,896	13,262	29,955	47,183	39,495	9,002
	20~29세	98,634	62,137	116,734	241,429	55,372	35,496
	30~39세	188,541	61,166	145,509	314,454	90,762	28,190
	40~49세	349,600	63,480	169,882	352,754	132,686	262,053
	50~59세	377,871	77,669	119,985	456,056	197,115	211,648
	60세이상	442,340	44,409	63,593	348,390	204,247	460,39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현금이외에 음식이나 옷, 장난감 등을 기부한 사람들의 평균 기부횟수는 3.3회였다.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가 3.6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가 3.1회였으며, 언론기관이나 모금단체가 각각 2.8회, 직장(기업) 2.3회 순이었다.

[그림 3-18] 물품기부횟수(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3) 비영리단체의 이전액: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 기부금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 대비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을 살펴보면 가계의 월평균 지출액은 326만 2천 6백원이며, 기부금지출액은 4만 6천 4백원으로 가계지출액의 1.42%를 차지하였다. 기부금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종교기부금이 4만 1천 7백원으로 89.9%를 차지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은 4천 7백원으로 10.1%였다.

<표 3-6>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1~2013

(단위: 원, %)

	가계지출액 (A)	기부금지출액					가계지출액 대비 비중 (B/A)
		소계 (B)	종교기부금 (C)	비중 (C/B)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D)	비중 (D/B)	
2011	3,114,946	43,583	40,324	92.5	3,259	7.5	1.40
2012	3,216,894	44,776	40,772	91.1	4,004	8.9	1.39
2013	3,261,590	46,371	41,692	89.9	4,679	10.1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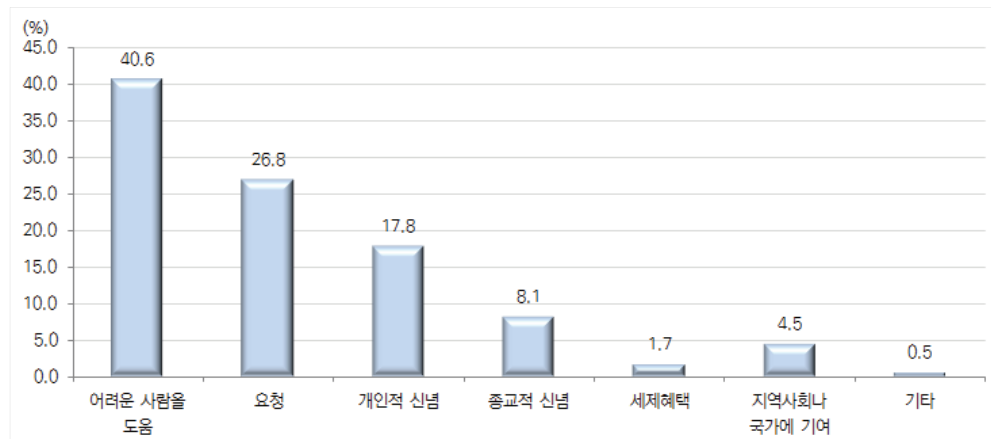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 나눔실태 2013 보도자료(2014.04.23.);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다. 기부 인식 및 태도

1) 기부 이유 및 하지 않은 이유

2013년 사회조사에서 파악된 기부 이유를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기부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에 의해서 기부한 경우가 26.8%였으며,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경우가 17.8%, 종교적 신념 8.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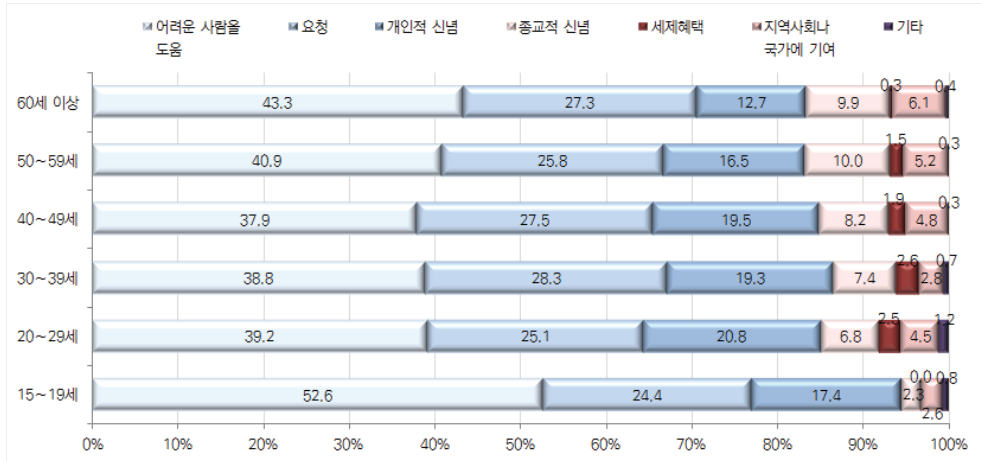
[그림 3-19] 기부 이유(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별 기부 이유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5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부단체나 학교,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기부한 경우가 24.4%였으며,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경우는 17.4%였다. 2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40%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기부단체나 직장의 요청에 의해서,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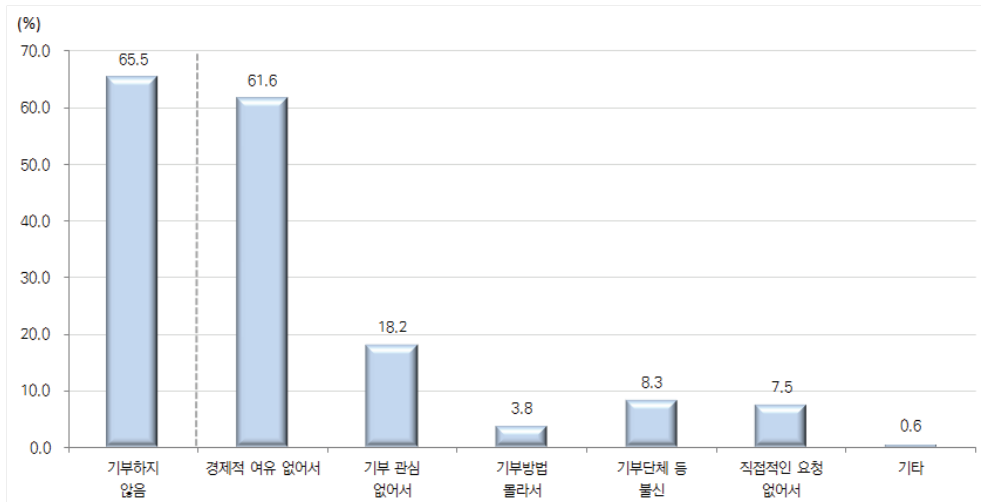
[그림 3-20] 연령별 기부 이유: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기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5.5%였으며, 이들의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6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18.2%, 기부단체 등 불신 8.3%,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서가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기부하지 않은 이유(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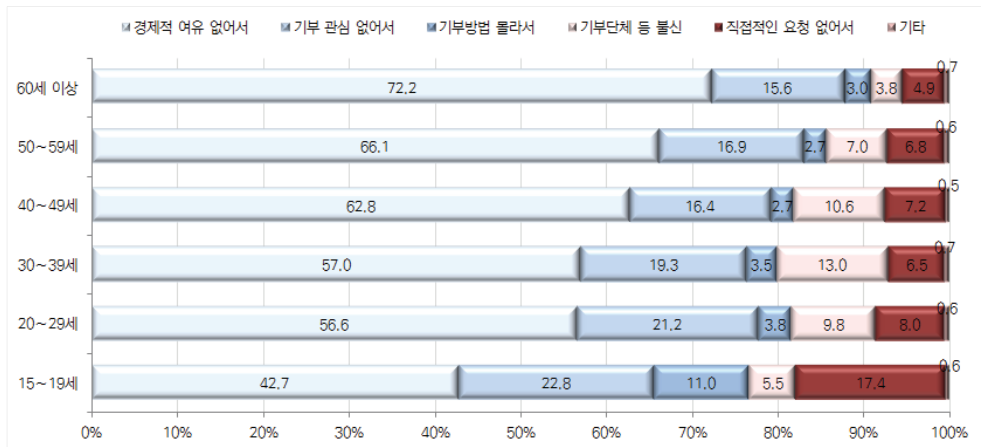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별로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즉, 15~19세의 경우 42.7%, 20대의 경우 56.6%, 30대 57.0%, 40대 62.8%, 50대 66.1%, 60대 이상은 72.2%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부하지 않는 다음 이유는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로 15~19세가 22.8%, 20대 21.2%, 30대 19.3%, 40대 16.4%, 50대 16.9%, 60대 이상 15.6%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22] 연령별 기부하지 않는 이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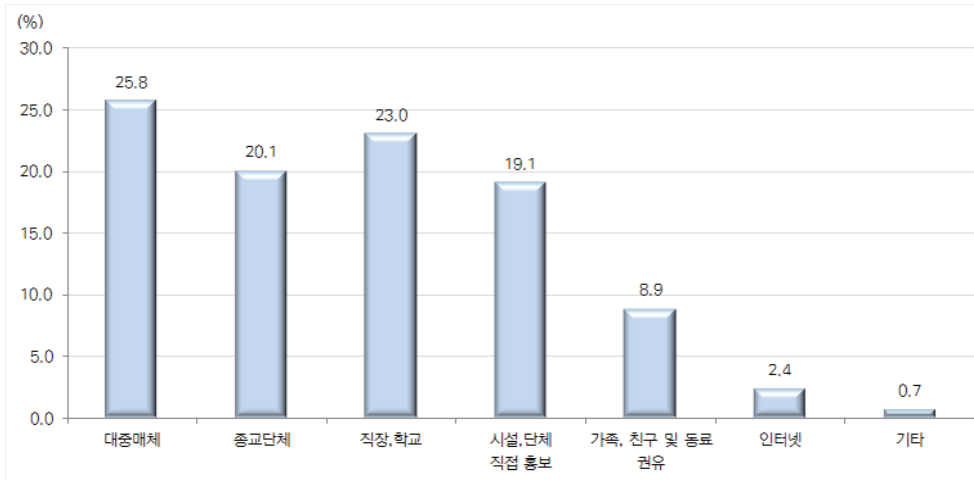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2) 기부 대상 인지경로

기부 대상을 인지한 경로는 25.8%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장·학교를 통해 기부대상을 인지한 경우가 23.0%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종교단체가 20.1%, 시설·단체 직접홍보 19.1%, 친구·가족 및 동료권유에 의해 인지한 경우가 8.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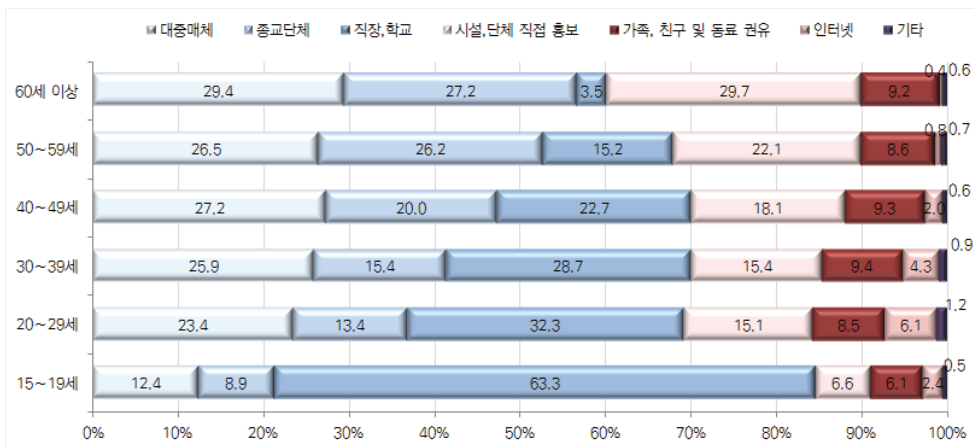
[그림 3-23] 기부대상 인지경로(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별로 기부 대상을 인지한 경로를 살펴보면 15~19세는 63.3%가 직장·학교를 통해 기부대상을 인지하였고, 20대 32.3%, 30대 28.7%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으나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지한 경우가 각각 27.2%, 26.5%, 29.4%로 가장 높았다.

[그림 3-24] 연령별 기부대상 인지경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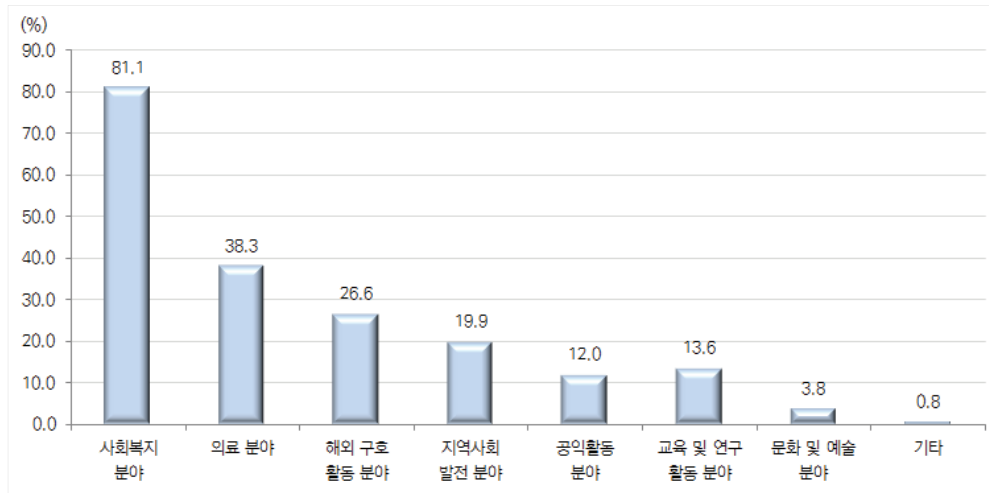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3) 기부 희망분야

기부자가 기부를 희망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81.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의료 분야가 38.3%, 해외구호 활동분야 26.6%, 지역사회발전분야 19.9%의 순이었다.

[그림 3-25] 기부 희망분야(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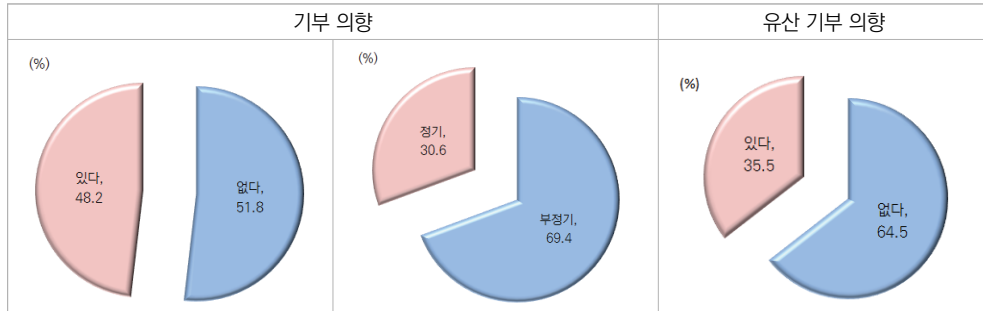


주: 기부 희망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4) 향후 기부 의향

기부자를 포함한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48.2%는 향후 1년 이내에 기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30.6%는 정기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으며, 69.4%는 부정기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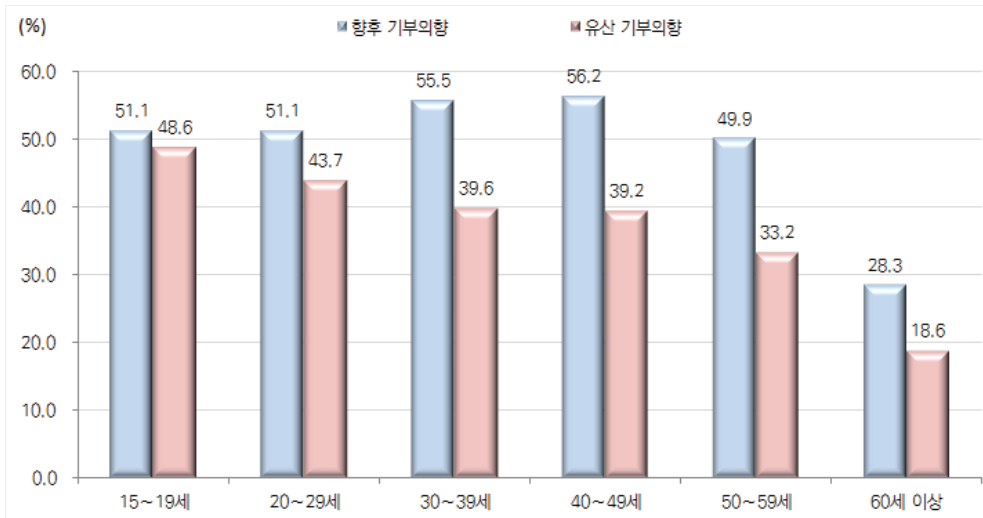
[그림 3-26] 향후 기부 의향(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별 향후 기부 의향을 살펴보면 40대가 56.2%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30대로 55.5%가 기부 의향이 있으며, 20대나 15~19세도 50% 이상의 기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산기부 의향은 15~19세가 4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로 43.7%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낮아져 60세 이상은 18.6%만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연령별 향후 기부 의향: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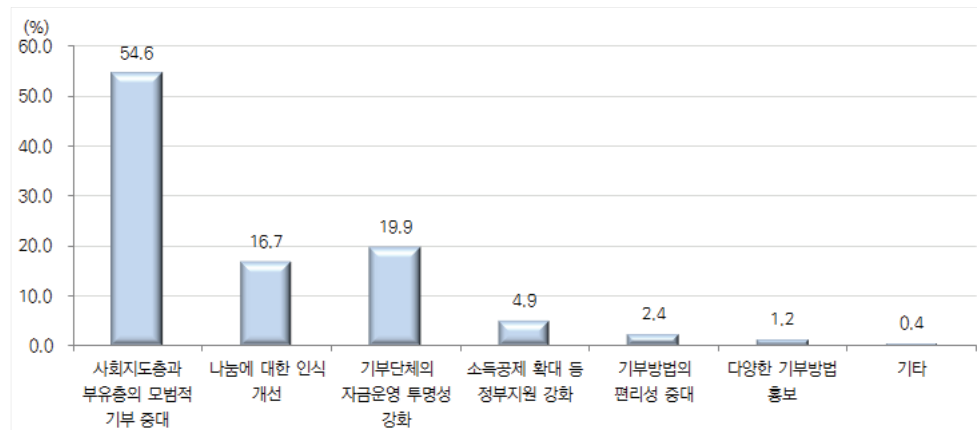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5)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15세 이상 인구 중 54.6%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19.9%가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6.7%였다.

[그림 3-28]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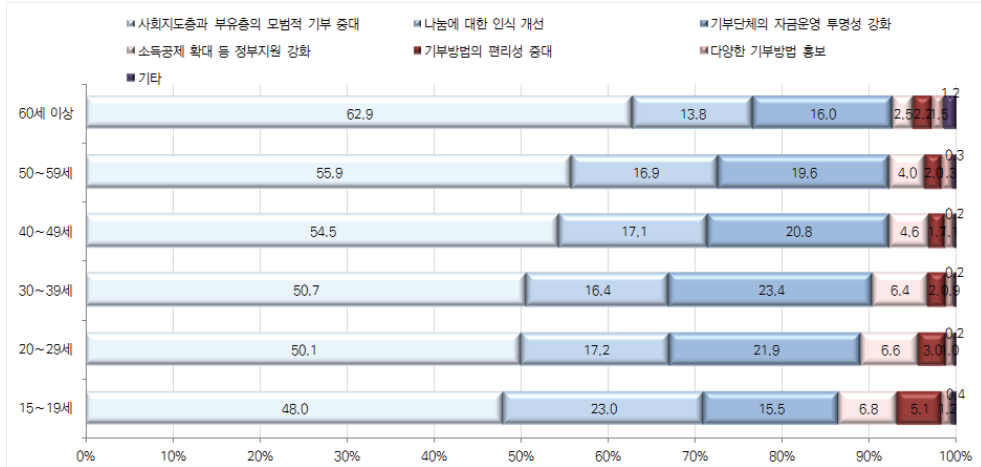


주: 주응답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연령별 기부문화의 확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주된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60세 이상이 6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로 55.9%였으며, 가장 낮은 15~19세도 48.0%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은 15~19세가 23.0%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대와 40대로 17.2%, 17.1%였으며, 가장 낮은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13.8%가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림 3-29] 연령별 기부문화 확산 필요사항: 2013



주: 주응답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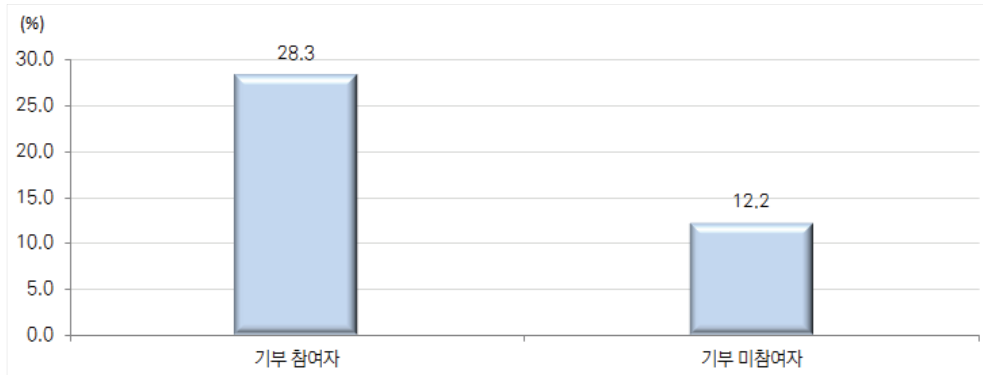
라. 기부 여부별 특성

기부 여부에 따라 기부에 참여한 그룹과 기부에 미참여한 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험과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1)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기부 여부별로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비교해 보면, 기부 참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8.3%였으며, 기부 미참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2.2%로 기부참여자와 16.1%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즉, 기부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기부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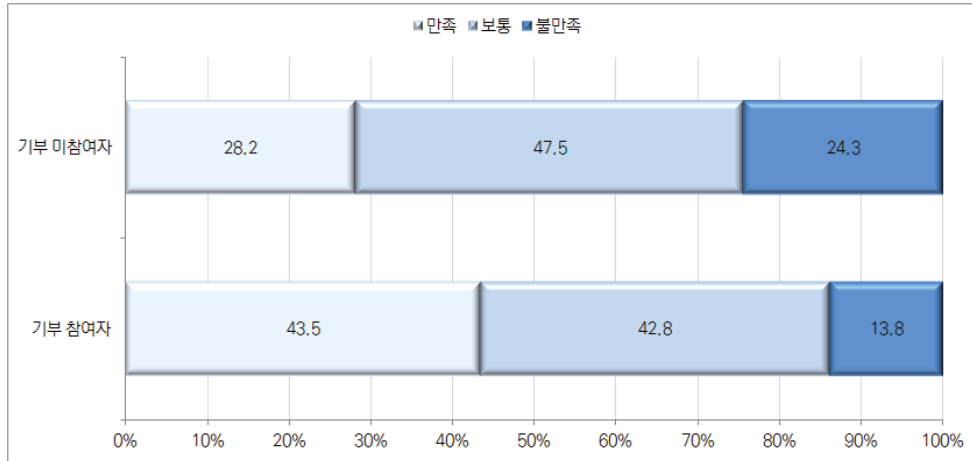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2) 삶에 대한 만족감

기부 여부별로 삶에 대한 만족수준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기부 참여자의 43.5%가 만족하고 있으며, 기부 미참여자의 28.2%만이 만족하고 있어 기부 참여자의 만족수준이 15.3% 포인트가 높았다. 반면 삶에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기부참여자 13.8%, 기부 미참여자 24.3%로 기부 미참여자의 불만족 수준이 10.5% 포인트가 높았다. 즉, 기부자 참여자가 미참여자 보다 현재의 삶에 대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기부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감(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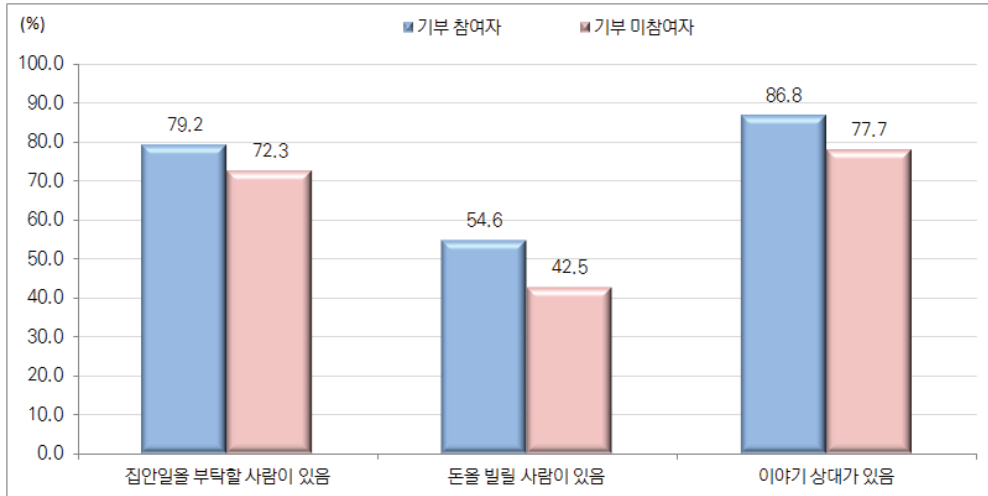


주: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3) 사회적 관계망 및 단체참여

기부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면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기부 참여자가 79.2%, 미참여자가 72.3%로 기부 참여자가 6.9% 포인트가 높았다.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에서는 기부 참여자가 54.6%, 미참여자가 42.5%로 기부참여자가 12.1% 포인트 높았으며, 이야기 상대가 있는지는 기부 참여자가 86.8%, 미참여자가 77.7%로 기부 참여자가 9.1% 포인트가 높아 기부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부 미참여자보다는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 기부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15세이상): 2013



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조사대상이 19세 이상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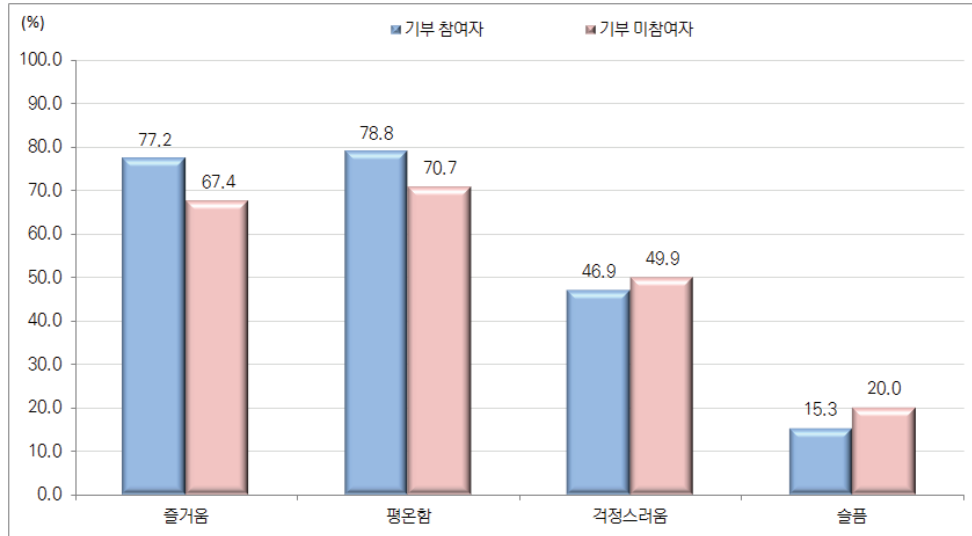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4) 정서경험

기부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정서경험을 비교해 보면 즐거운 감정을 느꼈는지 여부의 경우 기부 참여자의 77.2%가 즐거운 감정을 느낀 반면, 미참여자의 67.4%가 즐거운 감정을 느껴 기부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즐거운 감정을 느낀 경험이 9.8% 포인트가 높았다. 평온함을 느꼈는지 여부는 기부 참여자의 78.8% 평온함을 느낀 반면, 미참여자는 70.7%가 평온함을 느껴 기부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8.1% 포인트 높게 평온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스러운 감정은 기부 참여자가 46.9%, 미참여자가 49.9% 느껴 미참여자가 참여자보다 3.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픈 감정은 기부 참여자가 15.3%, 미참여자가 20.0% 느껴 미참여자가 4.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부 참여자는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낀 반면, 미참여자는 나쁜 감정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기부 여부에 따른 정서경험(15세이상): 2013



주: “귀하는 어제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마. 기부 단체/기관에 대한 인식

1) 기부 대상 인지정도

기부 단체/기관에 대한 인식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의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일반 국민과 국내 주요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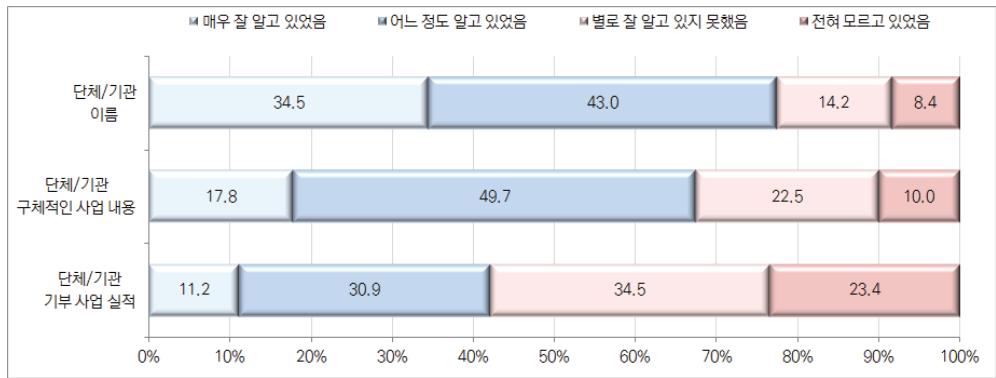
단체/기관에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할 때 그 단체/기관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기부사업실적 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기관의 이름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는 34.5%였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는 43.0% 그리고 별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4.2%와 8.4%로 77.5%는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또는 물품 기부시 단체/기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8%였으며, 49.7%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별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는 각각 22.5%와 10.0%였다. 즉, 67.5%

이상은 단체/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또는 물품 기부시 단체/기관의 기부사업실적에 대해서는 11.2%만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0.9%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4.5%는 별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23.4%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이 넘는 57.9%가 단체/기관의 기부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기부 대상 인지정도: 2014



주: 귀하께서는 단체/기관에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실 때, 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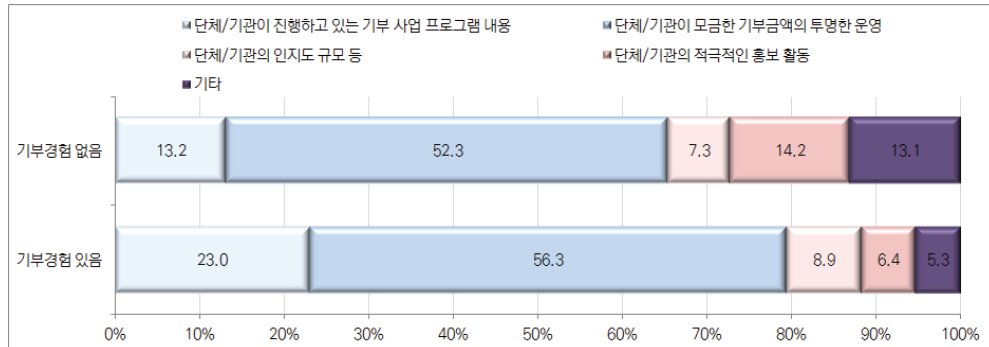
2) 기부 단체/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2014년에 기부를 하기 위해 참여할 단체/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체/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기부 사업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으로 23.0%였으며, 단체/기관의 인지도, 규모 등이 8.9%, 단체/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6.4%였다.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체/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기부 사업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13.2%였으며, 다음은 단체/기

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14.2%, 단체/기관의 인지도, 규모 등이 7.3%로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부 단체/기관선정시 차이를 보였다.

[그림 3-35] 기부 단체/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2014



주: 귀하께서는 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할 단체/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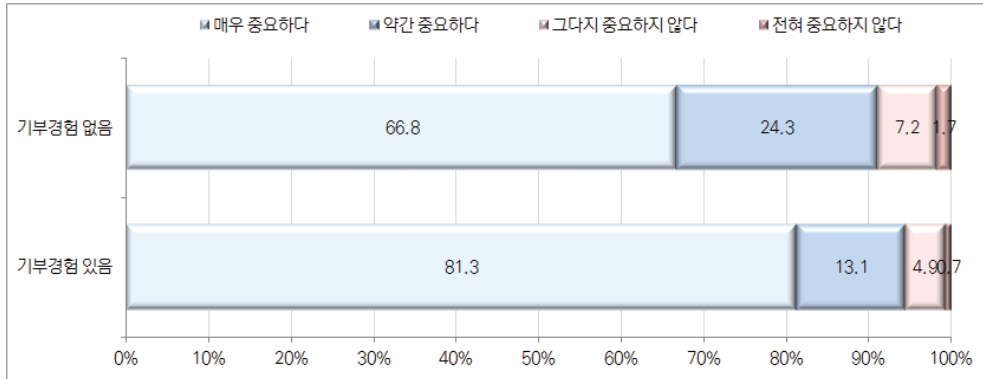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3)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기부경험자와 기부무경험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경우 81.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3.1%는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5.6%에 지나지 않았다.

기부경험이 없는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6.8%,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4.3%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8.9%로 기부에 참여한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3-36]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의 중요성 인식 정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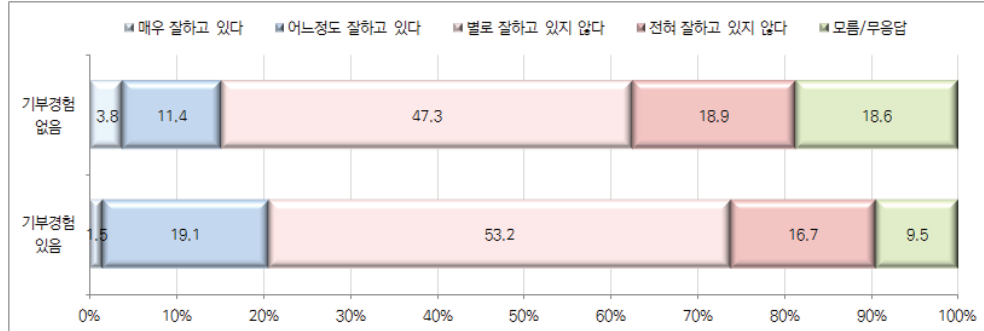
주: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기부 관련 단체/기관의 정보(기부·후원 금액, 기부·후원 금액 사용처 등)를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기부 관련 단체/기관의 정보(기부·후원 금액, 기부·후원 금액 사용처 등) 공개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5%였으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19.1% 그리고 53.2%는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6.7%는 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였으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11.4% 그리고 47.3%는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8.9%는 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부경험이 있거나 없는 사람 모두 단체/기관이 정보 공개를 잘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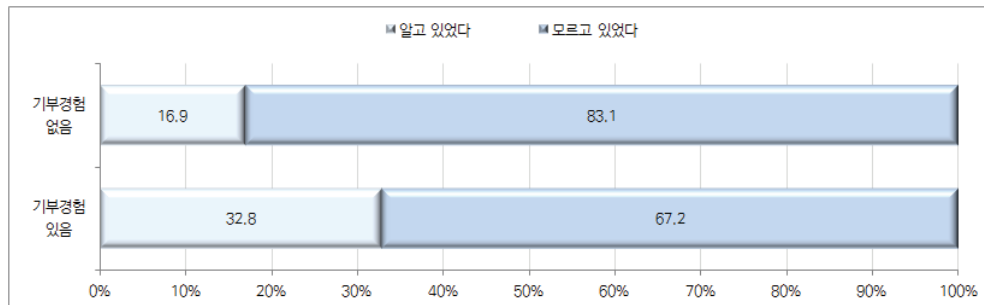
[그림 3-37]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 2014



주: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기부 관련 단체/기관의 정보(기부·후원 금액, 기부·후원 금액 사용처 등) 공개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우리나라 기부 관련 단체/기관들 중 규모가 큰 곳(종교단체 제외)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회계결산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32.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7.2%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1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3.1%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기부 단체/기관의 회계결산 공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회계결산 공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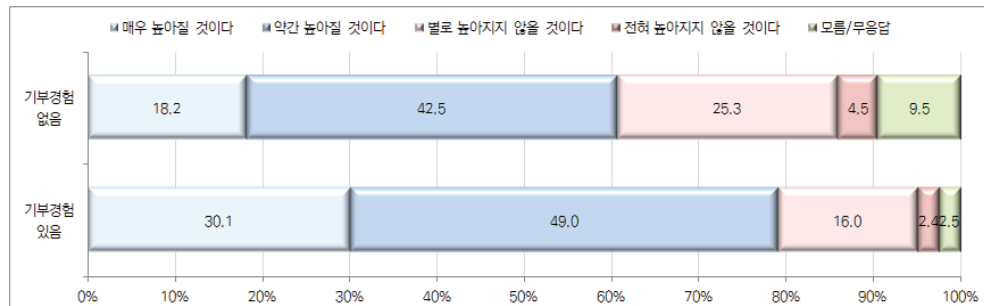
[그림 3-38] 기부 단체/기관의 회계결산서 공개 인지 여부: 2014



주: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부 관련 단체/기관들 중 규모가 큰 곳(종교단체 제외)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회계결산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2015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부 관련 단체/기관이 회계결산서를 공개하도록 법을 강화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기부 관련 단체/기관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30.1%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9.0%는 약간 높아질 것이라 응답하였고, 별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와 전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각각 16.0%와 2.4%였으며,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18.2%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2.5%는 약간 높아질 것이라 응답하였고, 별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와 전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각각 25.3%와 4.5%로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이 향후 투명성 전망을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낮게 보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강화시 단체/기관의 투명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3-39]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 강화시 단체의 투명성 증가 정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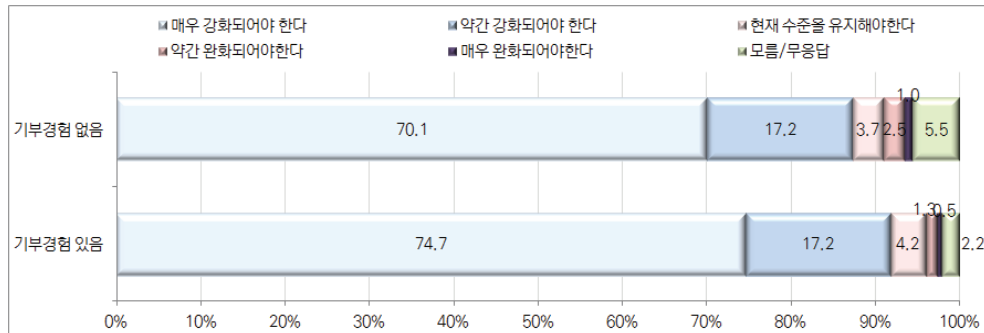
주: 2015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부 관련 단체/기관이 회계결산서를 공개하도록 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를 통해 기부 관련 단체/기관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4) 불성실 운영 기부단체의 규제

정부에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강화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74.7%가 매우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7.2%는 약간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수준 유지는 4.2%, 약간완화나 매우 완화는 각각 1.3%와 0.5%로 매우 낮았고,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70.1%가 매우 강화되어

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7.2%는 약간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수준 유지는 3.7%, 약간완화나 매우 완화는 각각 2.5%와 1.0%로 매우 낮아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 모두 불성실 운영 기부단체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3-40] 불성실 운영 기부단체의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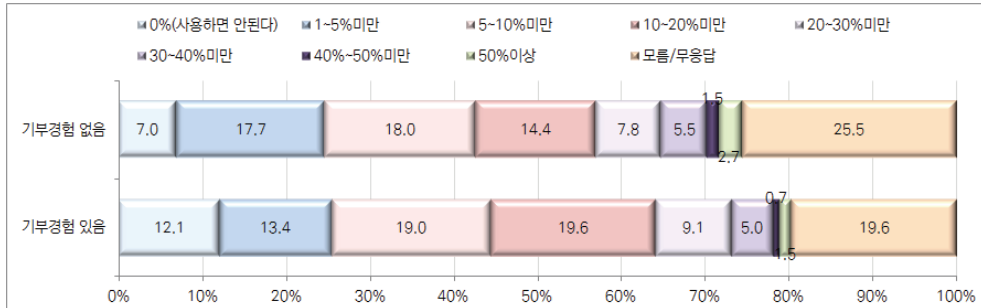


주: 정부에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규제가 지금 보다 얼마나 더 강화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5) 총 기부 금액 대비 적절 기관 운영비 비율

기부한 현금 또는 물품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부 관련 단체/기관의 기관운영비(인건비, 모금활동비 등)로 사용할 경우, 생각하는 적정 운영비 비율에 대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10~20%미만이 19.6%로 가장 높고 다음은 5~10%미만으로 19.0%였으며, 다음은 1~5%미만이 13.4% 순이었다. 반면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5~10%미만이 18.0%로 가장 높고 다음은 10~20%미만으로 14.4%였으며, 다음은 1~5%미만이 17.7% 순이었다. 적절기관운영비를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그림 3-41] 총 기부 금액 대비 적절 기관 운영비 비율: 2014



주: 귀하께서 기부하신 현금 또는 물품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부 관련 단체/기관의 기관운영비(인건비, 모금 활동비 등)로 사용할 경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운영비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바. 보건복지분야(매개비영리단체) 민간 모금액과 배분액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분야의 민간모금액과 정책영역별 배분액 규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분석의 원자료는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연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은 정부가 승인한 전국의 모금기관과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이다. 모금기관과 기부금 단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그리고 기부금품모집등록기관이다. 각 민간모금단체(기관)의 개념과 관련법은 <표 3-7>과 같다.

〈표 3-7〉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기관유형	개 념	근 거 법	관리주체	기관 예시
전문/법정/특례 지정기부금 단체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무관청(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여성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5호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등
기부금품 모집기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하는 기관	기부금품모집법	행정자치부	월드비전, 실로암 시각 장애인 복지회, 어린이재단, 전국재해 구조협회, 한국여성재단 등

자료: 행정자치부(2012. 1),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조사대상 기관(모집단) 764개소의 모금기관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592개(77.5%)로 가장 많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126개(16.5%)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기관이 46개(6.0%)로 나타났다. 이상의 민간모금기관 및 기부금모집등록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8〉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 2013년 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 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기관
계	764	592	126	46
비율	100.0	77.5	16.5	6.0

주: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전국민간모금기관이 838개소였으나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기부금 단체 50개소, 미등록기관 7개소, 실제 모금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 6개소, 중복 5개소, 기타 전화불통 4개소, 폐쇄 2개소가 조사에서 제외됨.

자료: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2)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기관 764개소 중 응답완료 548개소, 부분조사 완료 75개소, 무응답 기관은 141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단의 조사응답률은 71.7%이다.

〈표 3-9〉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2013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기관
조사기관(A)	764	592	126	46
응답기관(B)	548	434	78	36
조사표회수 (B/A*100)	71.7	73.3	61.9	78.3

주: 완료조사 548개소, 부분완료조사 75개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5(발간예정)

3) 분석결과

□ 민간모금액

응답기관과 부분응답 기관의 회귀대체, 무응답기관의 비례대체를 반영한 민간모금액의 합계는 2조 83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10〉 지역별 민간모금단체 모금총액: 2013

(단위: 백만 원)

지역	모금총액	지역	모금총액
합계	2,083,548	전북	1,749
서울	2,028,125	강원	2,256
경기	23,493	울산	5,150
부산	6,431	전남	2,834
경남	1,838	인천	943
광주	1,850	충남	1,173
대구	4,358	충북	1,830
경북	698	제주	143
대전	67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5(발간예정)

〈표 3-11〉 모금액 구간별 모금액: 2013

(단위: 백만 원)

모금액구간	모금액	모금액구간	모금액
합계	2,083,548	500 초과 600 이하	7,774
100 이하	10,198	600 초과 700 이하	9,051
100 초과 200 이하	15,336	700 초과 800 이하	7,602
200 초과 300 이하	13,692	800 초과 900 이하	12,632
300 초과 400 이하	10,758	900 초과 1,000 이하	9,518
400 초과 500 이하	8,902	1,000 초과	1,978,08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5(발간예정)

□ 배분액

민간모금기관이 배분으로 활용한 항목은 운영비와 사업비, 기관후원이다. 이들 세 항목의 구성비중은 71.1%로 결국 총모금액 중 1조 4,802억원이 배분된 것으로 추계된다.

〈표 3-12〉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자원 배분 구성 비중: 2013

(단위: %)

전체	운영비	사업비	기관후원	적립금	이월금	예비비	기타
100.0	4.2	66.3	0.6	3.6	19.8	0.1	5.4

주: 분석대상은 521개의 민간모금기관으로서, 조사된 548개 민간모금기관 중 2013.1.1.~12.31. 동안 모금 및 후원금내역과 개인회비가 0인 27개의 기관이 제외되었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5(발간예정)

분야별 배분액은 가족분야 4,263억원(28.8%)으로 가장 많고, 다음 해외 4,086억원(27.6%), 저소득 3,523억원(2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3〉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별 배분액 규모추계: 2013

(단위: 백만원)

전체	노인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주거	저소득	해외	기타
1,480,247	81,414	19,243	48,849	60,691	426,315	19,243	352,302	408,552	63,63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5(발간예정)

사. 기부 참여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분형 변수인 기부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15세 이상 인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한 변수 위주로 진행하였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비해 부산 1.773배, 인천 1.264배, 광주 1.368배, 대전 1.668배, 충북 1.651배, 전남 1.384배 기부 참여 비율이 높다. 또한 서울에 비해 울산은 90.3%, 경기 78.6%, 강원 91.2%, 경북 84.8%, 제주 89.4% 수준의 기부 참여 비율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기부 참여 비율은 83.9% 수준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 비율이 높아진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응답자는 2.004배, 중학교 3.255배, 고등학교 4.515배, 대학교 6.234배, 대학원 이상 13.650배의 기부 참여 비율을 보인다. 주관적 만족감이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에 비해 '약간 불만족' 응답자는 1.233배, '보통이다' 1.337배, '약간 만족' 1.669배, '매우 만족' 1.906배의 기부 참여 비율을 보인다.

계층의식이 '하하' 수준인 응답자에 비해 '하상' 1.598배, '중상' 2.418배, '상하' 3.020배 기부 참여 비율이 높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에 비해 '100~200만원'인 응답자는 1.288배, '200~300만원' 1.552배, '400~500만원' 2.187배, '500~600만원' 2.324배, '600~600만원' 2.713배, '700만원 이상' 2.789배의 기부 참여 비율을 보인다.

〈표 3-14〉 기부참여 여부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Odds ratio ¹⁾		변수명		Odds ratio ¹⁾		
지역	서울			주관적 만족감	매우 불만족			
	부산	1.773	***		약간 불만족	1.233	***	
	대구	1.180			보통	1.337	**	
	인천	1.264	***		약간 만족	1.669	***	
	광주	1.368	***		매우 만족	1.906	***	
	대전	1.668	***					
	울산	0.903	***	계층 의식	하	하		
	경기	0.786	***		중	상	1.598	***
	강원	0.912	***		상	하	1.928	
	충북	1.651	***		상	상	2.418	***
				상	하	3.020	***	

변수명		Odds ratio ¹⁾	변수명		Odds ratio ¹⁾
	충남	1.096	가구 소득	상	2.036
	전북	1.120		100만원 미만	
	전남	1.384 ***		100~200만원	1.288 ***
	경북	0.848 ***		200~300만원	1.552 ***
	경남	1.190		300~400만원	1.798
제주	0.894 ***	400~500만원		2.187 ***	
성	남자			500~600만원	2.324 ***
	여자	0.839 ***		600~700만원	2.713 ***
연령	(연속형)	1.019 ²⁾ ***		700만원 이상	2.789 ***
교육 정도	무학				
	초등학교	2.004 ***			
	중학교	3.255 ***			
	고등학교	4.515 ***			
	대학교	6.234 ***			
	대학원 이상	13.650 ***			

주1) ***: p<0.05, **: p<0.1

2)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서 회귀계수의 부호를 기준으로 해석함. 연령의 추정된 회귀계수 값은 양수임(0.0186).

2. 기업

기업의 기부실태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법인의 기부총액과 규모 및 업태별 기부금액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단,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법인의 기부에서 영리법인(기업)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아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경련의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통해서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기부액과 기부처 및 분야별 기부액을 살펴보았다.

가. 기부 참여 및 규모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규모

2013년 기부금 공제 신고법인수는 51만 7,805개이고, 기부금 총액은 4조 6,545억 원이고, 법정·특례기부금은 1조 7,849억 원, 지정기부금은 2조 8,69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신고법인수는 2007년 37만 2,141개에 비하여 14만 5,664개가 증가하였고, 기부금 총액은 2007년 3조 3,251억 원에 비하여 1조 3,294억 원이 증가하였다. 법인당 평균기부액은 2007년 893만원, 2013년 899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신고법인을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으로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고법인수는 중소기업이 42만 1,040개로 일반법인 9만 6,765개 보다 4.4배가 많았으며, 법인당 기부액은 일반 법인이 4,253만원으로 중소기업 128만원보다 33.2배가 많았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비교해 보면 비상장법인 신고법인수가 51만 6,090개로 상장법인 1,715개에 비해 300.9배가 많았다. 법인당 평균기부액은 상장법인이 10억 3,648만원 비상장법인이 557만원으로 상장법인 평균기부액이 186.1배가 많았다.

〈표 3-15〉 법인의 기부금 신고현황: 2007~2013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고법인수	법인당 평균기부액	기부금		
			소계	법정·특례	지정
2007년	372,141	8.93	3,325,078	1,973,408	1,351,670
2008년	398,331	8.48	3,378,565	1,843,187	1,535,378
2009년	419,420	8.25	3,460,709	1,895,287	1,565,422
2010년	440,023	7.96	3,504,459	2,001,711	1,502,748
2011년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2012년	482,574	8.52	4,112,276	1,473,145	2,639,131
2013년	517,805	8.99	4,654,495	1,784,892	2,869,602
법인규모별	517,805	8.99	4,654,495	1,784,892	2,869,602
일반법인	96,765	42.53	4,115,672	1,638,387	2,477,284
중소기업	421,040	1.28	538,823	146,505	392,318
상장·비상장	517,805	8.99	4,654,495	1,784,892	2,869,602
상장법인	1,715	1,036.48	1,777,563	546,608	1,230,955
비상장법인	516,090	5.57	2,876,932	1,238,284	1,638,647

주: 2013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법인의 업태별 기부금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법인수가 가장 많은 업태는 제조업으로 11만 4,040개였으며, 법인당 기부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전기·가스·수도업으로 6,927만원이었고,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제조업으로 1조 4,187억 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으로 1조 1,799억 원이었다.

〈표 3-16〉 업태별 기부금 신고현황: 2013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고법인수	법인당 평균기부액	기부금		
			소계	법정·특례	지정
계	517,805	8.99	4,654,495	1,784,892	2,869,602
농·임·어업	8,968	1.47	13,207	1,689	11,519
광업	990	7.14	7,065	1,114	5,950
제조업	114,040	12.44	1,418,710	483,821	934,889
전기·가스·수도업	1,414	69.27	97,948	35,149	62,799
건설업	82,895	2.66	220,791	60,082	160,710
도매업	104,662	2.44	255,043	60,770	194,273
소매업	16,633	6.04	100,414	25,305	75,109
음식·숙박업	5,567	8.10	45,119	23,592	21,527
운수·창고·통신업	30,011	10.89	326,692	55,298	271,394
금융·보험업	18,518	63.72	1,179,947	348,912	831,035
부동산업	24,444	4.15	101,507	60,603	40,904
서비스업	101,168	8.00	809,777	564,515	245,262
보건업	1,707	43.78	74,727	63,872	10,855
기타 업종	6,788	0.52	3,547	170	3,377

주: 2013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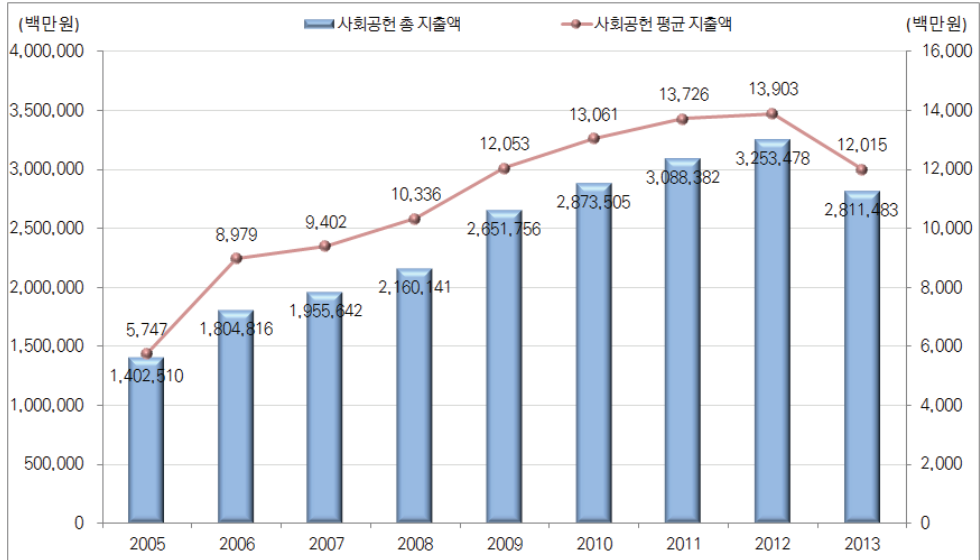
업태분류는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실적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2)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의 기부금 규모

전경련에서 실시한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회공헌활동 총비용은 기부금과 직접사용을 합산한 액수이다. 기부금은 사회공헌활동의 목적하에 현금, 현물, 시설개방 등의 형태로 외부에 지출한 비용이며, 직접사용비용은 직접운영프로그램 비용과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에 사용된 경비이다.

사회공헌활동 총비용은 2005년 1조 4,025억원에서 2012년에는 3조 2,53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조 8,11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에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5년에 비하면 2배가 증가한 액수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평균지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57억 4,700만원에서 2013년에는 120억 1,500만원으로 증가하여 2배의 증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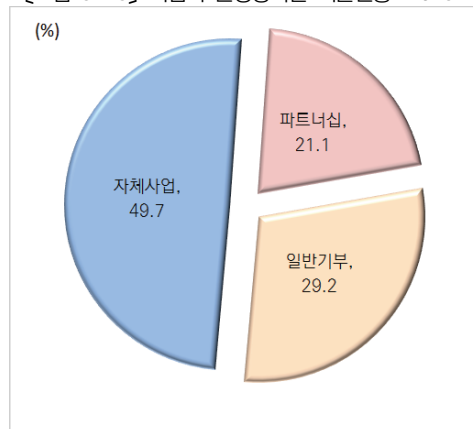
[그림 3-42]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현황: 2005~2013



주: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기업 기준(2005년 244개사, 2006년 202개사, 2007년 208개사, 2008년 209개사, 2009년 220개사, 2010년 220개사, 2011년 225개사, 2012년 234개사, 2013년 234개사)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4

사회공헌 운영방식별 지출현황을 보면, 자체사업이 49.7%, 파트너십 21.1%, 외부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등 간접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인 일반기부가 29.2%로 기업이 뚜렷한 기획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자율 프로그램이 70.8%(자체사업, 파트너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체사업, 파트너십, 일반기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자체사업은 외부공익법인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단독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으로 자체 사무국을 두고 직접 진행하는 사업비, 사회공헌 성격의 캠페인 비용, 임직원 봉사에 사용된 각종 부대비용 등 사회공헌지출, 기획사나 대행사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관련 행사 비용 등이며,

[그림 3-43] 기업의 운영방식별 지출현황: 2013



주: 해당 조사항목에 응답한 143개 기업 기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4

파트너십은 기업의 다양한 내부자원을 투입, 외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고, 간접프로그램(일반사업)은 외부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협찬, 일반적 재해구호금과 같은 비지정성 기부금 등이다.

나. 기부 분야

기업의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취약계층지원이 3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교육, 학교, 학술 분야에 23.7%를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12.7%를 지출하였다.

〈표 3-17〉 기업의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 비율 추이: 2006~2013

(단위: %)

분야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취약계층지원	27.0	27.8	43.2	50.3	43.8	38.3	31.7	33.9
교육, 학교, 학술	23.2	24.6	20.6	17.6	14.7	23.2	16.1	23.7
문화예술 및 체육	11.2	12.6	12.3	6.6	11.8	11.6	11.1	12.7
해외 지원	2.2	2.4	3.2	1.5	6.9	3.8	2.9	6.5
환경 보전	2.2	1.9	1.7	1.6	1.6	2.6	2.4	1.4
의료 보전	6.6	5.2	4.3	3.2	5.1	3.4	5.7	0.8
기타	27.5	24.6	14.7	19.2	16.0	17.2	30.2	21.0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4

제2절 자원봉사활동

1. 개인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실태를 살펴보았다. 사회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누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봉사활동규모는 사회조사 외에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구축한 자원봉사활동 DB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3-44]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파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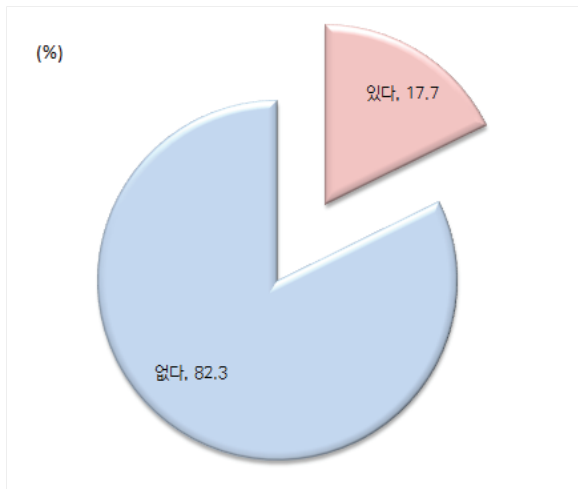
가. 자원봉사활동 동향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변화와 성,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별 참여율, 활동한 분야별 참여율 등 자원봉사 활동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추이

2013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5세 이상 인구 중 17.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2011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7.6%와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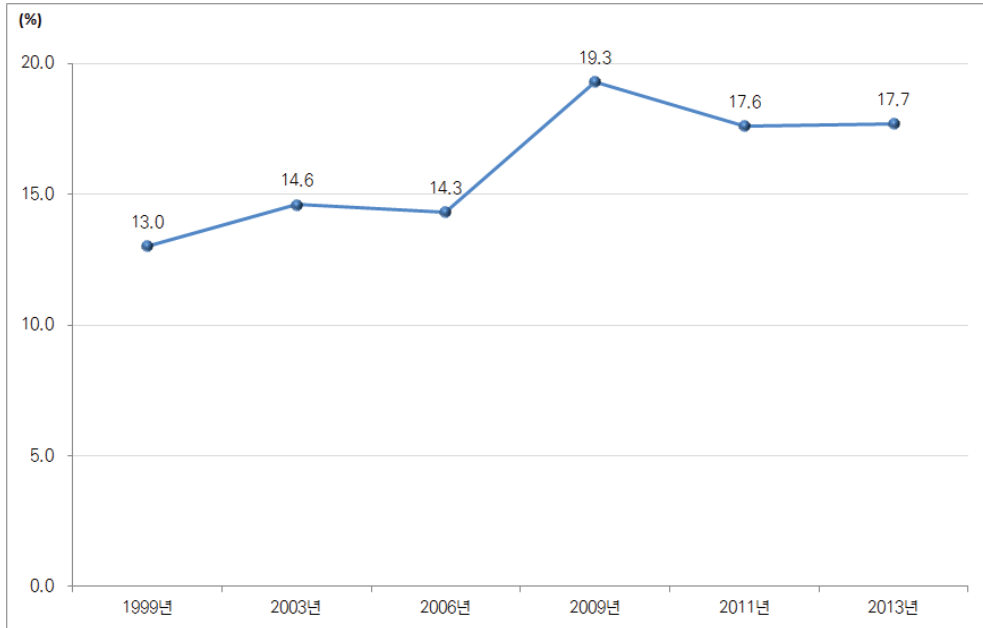
[그림 3-45]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3.0%였으나 이후 점차 높아져 2009년에는 19.3%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3년에는 17.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6]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1999~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인구사회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성별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남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년에는 남자가 14.0%, 여자가 14.6%로 여자가 0.6% 포인트 높았으나 2009년에는 19.3%로 같은 수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고, 2011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0.9%포인트 높은 18.0%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0.8% 높은 18.1%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13년의 경우 15~19세의 참여율이 7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40대 17.3%, 50대 14.5%, 20대 13.7%의 순이었고,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7.8%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표 3-18〉 성별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06~2013

(단위: %)

	2006	2009	2011	2013
전체	14.3	19.3	17.6	17.7
성				
남자	14.0	19.3	17.1	17.3
여자	14.6	19.3	18.0	18.1
연령대				
15~19세	59.5	79.8	72.3	75.4
20~29세	8.3	13.9	13.2	13.7
30~39세	10.2	13.6	11.2	11.2
40~49세	13.9	18.6	17.0	17.3
50~59세	12.4	15.5	14.6	14.5
60세이상	6.5	7.0	7.2	7.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교육정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0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18.4%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고졸이 11.4%로 높았으며, 중졸은 9.2%, 초졸이하는 6.1% 순이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앞의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5~19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층을 반영하는 중졸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7] 교육정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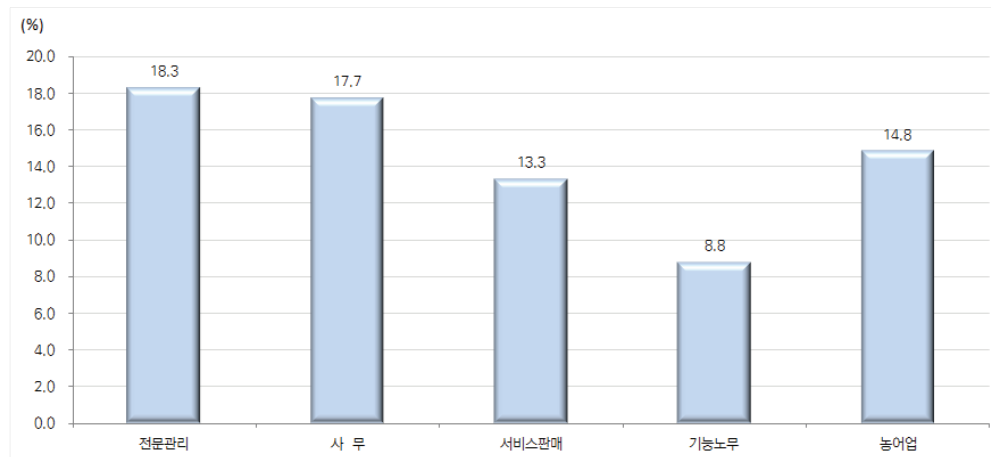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직업 및 소득정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직업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18.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무직이 17.7%, 농·어업직이 14.8%, 서비스 판매직이 13.3% 순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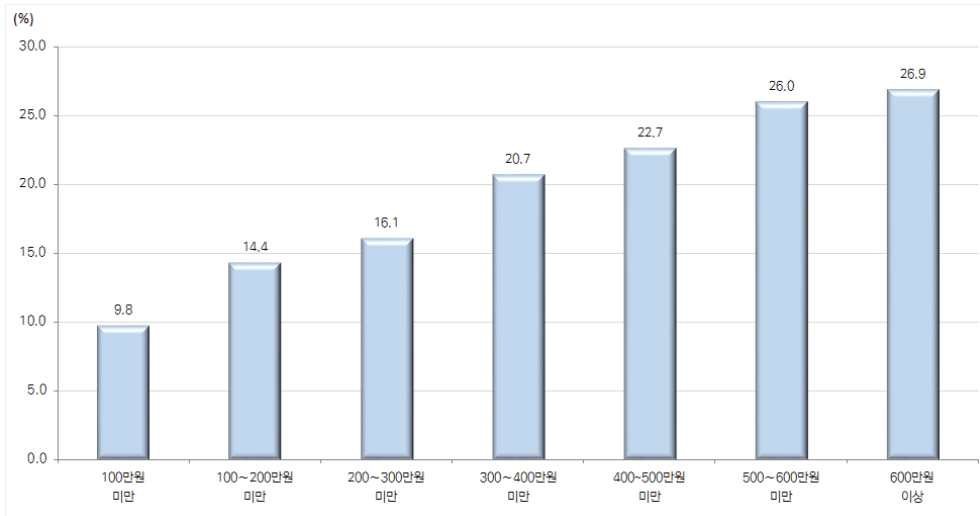
[그림 3-48] 직업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가구의 월평균소득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600만원이상 고소득자가 26.9%로 가장 높고, 다음은 500만원대로 26.0%였으며, 가장 낮은 층은 100만원 미만대로 9.8%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나타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9] 소득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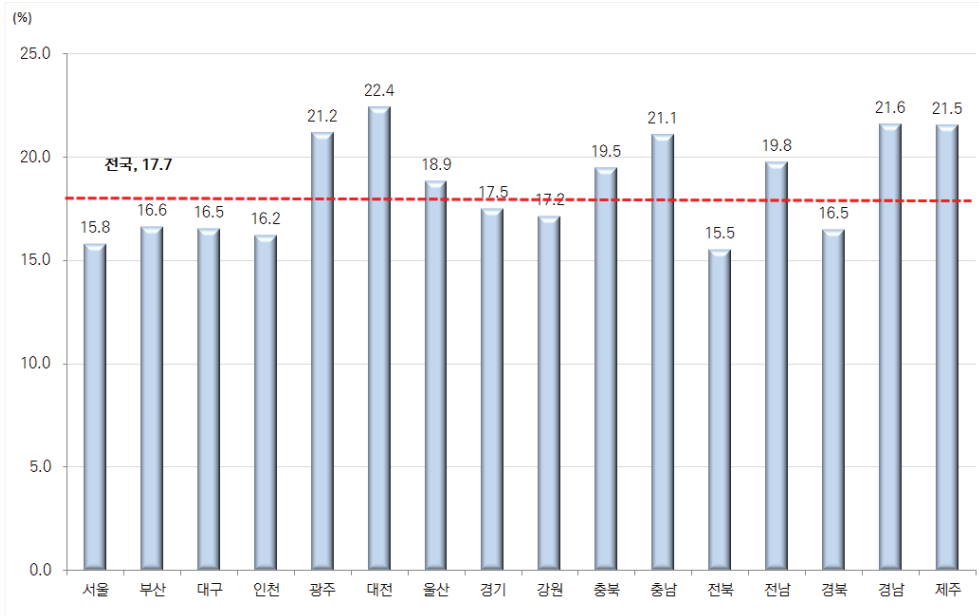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지역별 참여율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22.4%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으로 21.6%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제주 21.5%, 광주 21.2%, 충남 21.1%, 전남 19.8%, 충북 19.5%, 울산 18.9%로 전국 17.7% 보다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북이 가장 낮은 15.5%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그림 3-50]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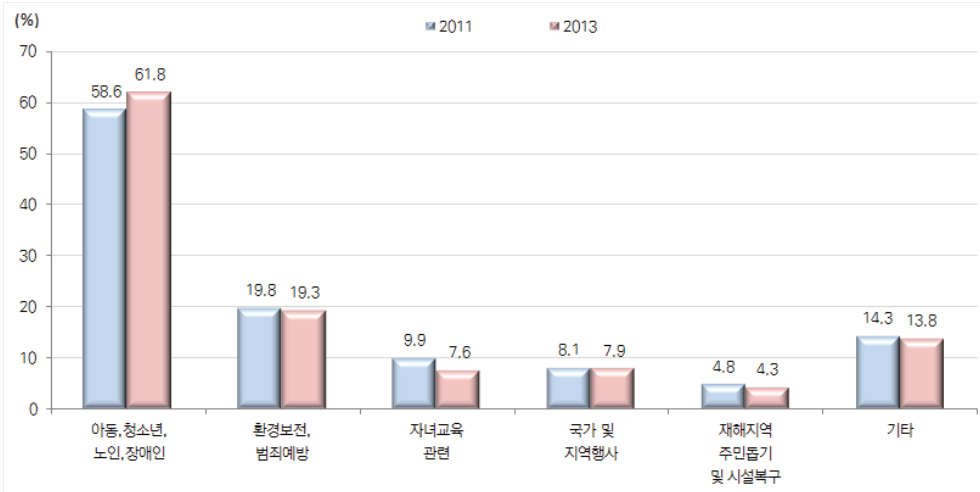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3)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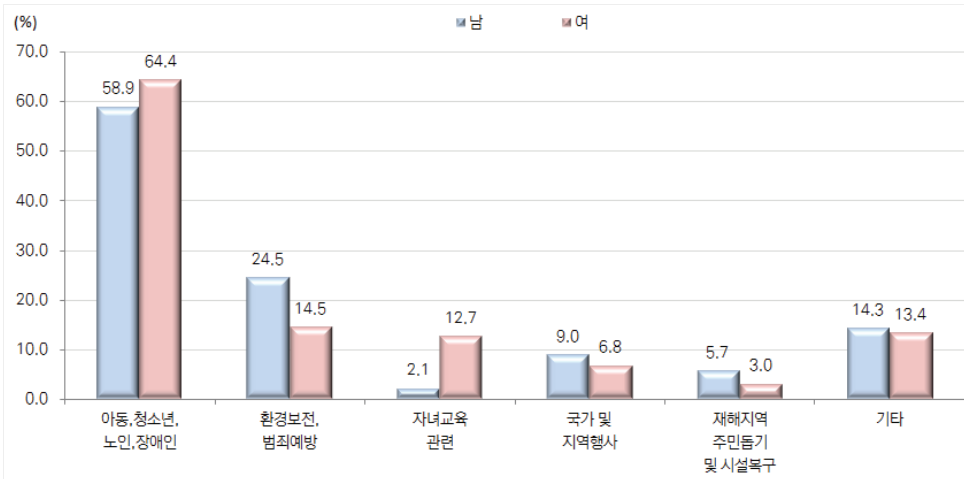
2013년 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참여율이 61.8%로 가장 높고, 다음은 환경보전·범죄예방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19.3%로 높았으며, 국가 및 지역행사, 자녀교육 관련,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은 10% 미만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3-51]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1, 2013



주: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52] 성 및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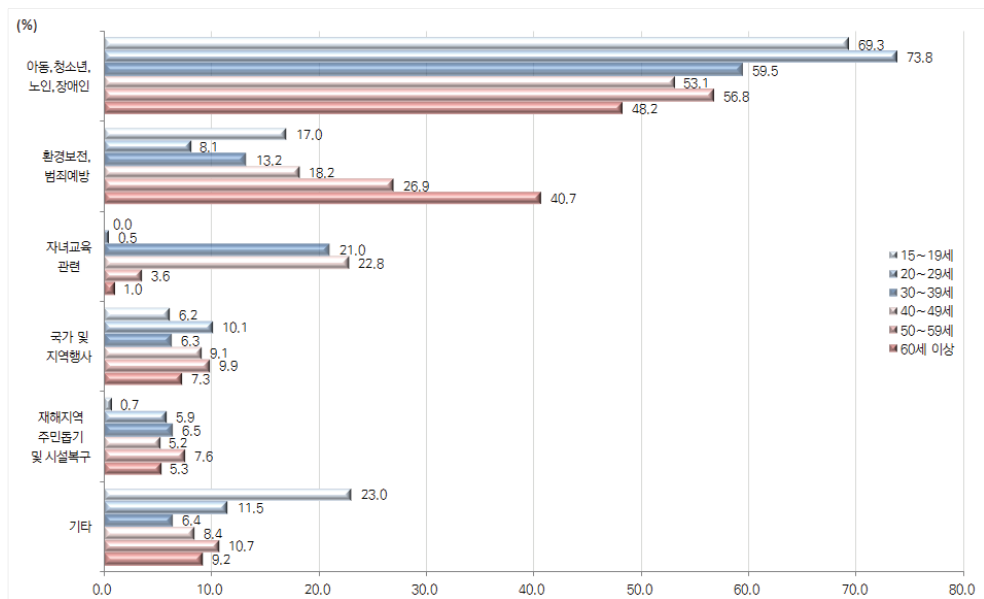


주: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2013년 남·녀별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분야, 자녀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여자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 남자보다 높으나 환경보전·범죄예방, 국가 및 지역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연령 및 활동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연령층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분야에서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50%에 가까운 48.2%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범죄예방 분야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가장 높고, 자녀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40대, 30대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3] 연령 및 활동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13



주: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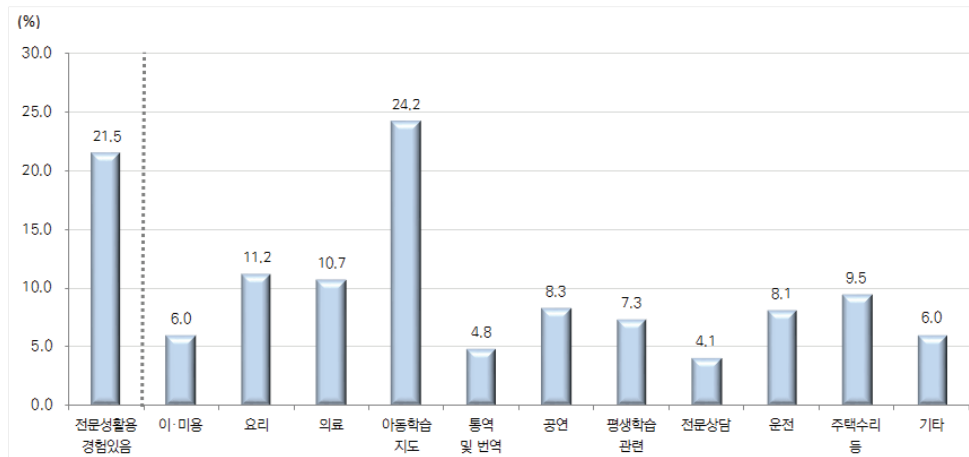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4)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201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중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5%였으며, 이 가운데 전문성을 살려 아동학습지도를 한 경우가 24.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요리가 11.2%, 의료 10.7%, 주택수리 등이 9.5%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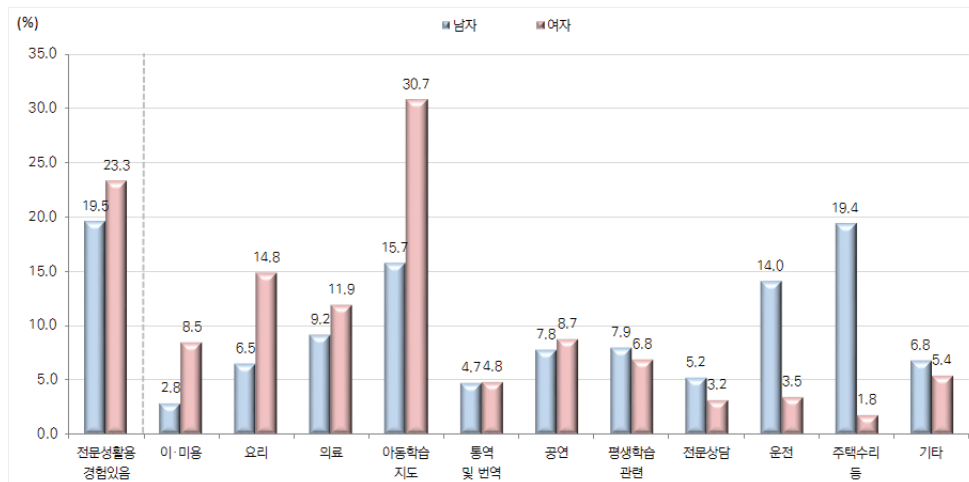
성별로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여자가 23.3%로 남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참여율 19.5% 보다 높았으며, 분야별로 보면 아동학습지도, 요리, 이·미용, 의료, 공연, 통역 및 번역 등에서 여자의 참여율이 남자보다 높았고, 평생학습관련, 전문상담, 운전, 주택수리 등에서는 남자의 참여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그림 3-54]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3-55] 성별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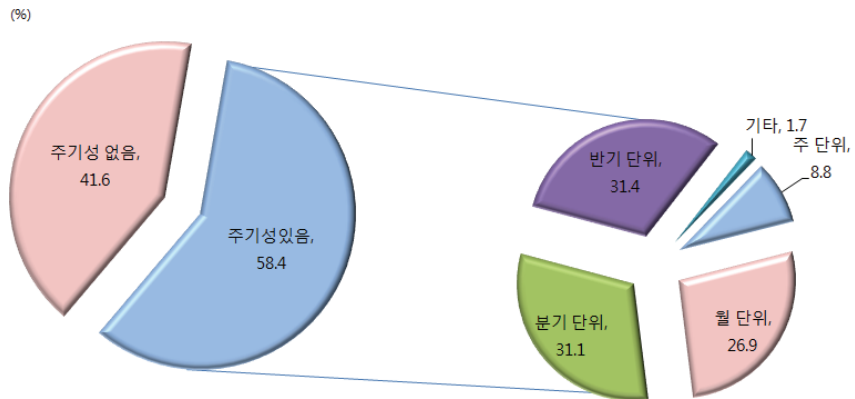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5)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중 58.4%는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주기는 반기단위가 31.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분기단위로 31.1%였으며, 월단위는 26.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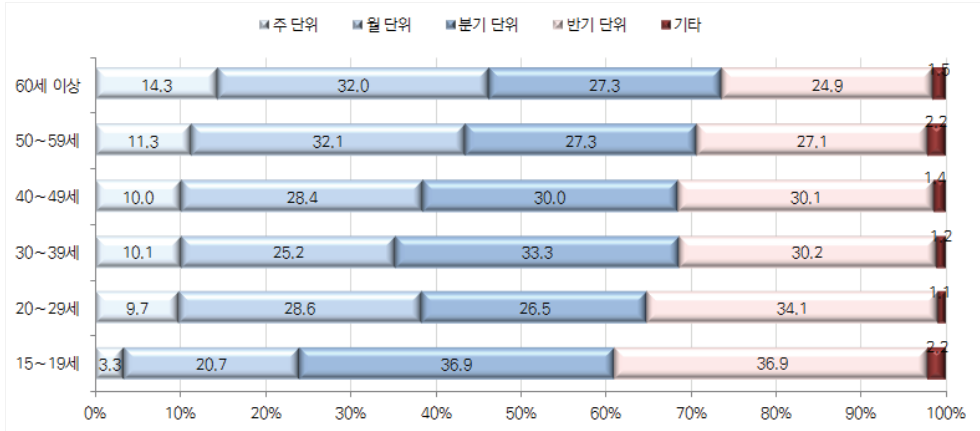
[그림 3-56] 정기적 자원봉사활동(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를 연령별로 보면 15~19세는 반기단위와 분기단위가 가장 높아 각각 36.9%를 차지하였으며, 20대는 반기단위가 3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월단위로 28.6%였으며, 30대는 분기단위가 가장 높은 33.3%였고, 반기가 30.2%였으며, 40대는 반기단위가 30.1%로 가장 높고, 분기단위도 30.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50대는 월 단위가 32.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분기단위로 27.3%였으며, 60세 이상은 월 단위가 32.0%로 가장 높고, 분기단위가 27.3%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3-57] 연령별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나. 자원봉사활동 규모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수와 횟수, 시간 등 참여규모를 통계청의 사회조사, 생활시간 조사,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구축한 DB에 등록된 실적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및 시간

인구사회특성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2013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평균횟수는 7.9회, 평균시간은 26.5시간으로 2011년의 7.6회, 26.9시간에 비하여 0.3회 증가, 0.4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8.1회에 평균 26.8시간 참여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이 7.3회에 25.3시간 참여하여 도시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이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8.9회에 28.0시간 참여한 반면, 남자는 6.9회에 24.9시간 참여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2.3회에 39.5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대로 9.7회에 33.4시간을 참여하였고, 가장 적은 연령층은 15~19세로 5.5회에 16.7시간을 참여하

였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많았다.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이 8.9회에 30.1시간을 참여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졸로 8.7회에 31.3시간 참여하였으며, 중졸이 6.1회에 18.6시간 참여하여 가장 적었다.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 및 시간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업이 8.9회에 30.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관리업으로 8.5회에 29.9시간을 참여하였으며, 농·어업은 가장 낮아 6.1회에 21.8시간을 참여하였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10.7회에 37.3시간을 참여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00만원이상 층으로 8.6회에 28.8시간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소득층은 500만원대로 6.6회에 22.8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인구사회특성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횟수 및 시간(15세이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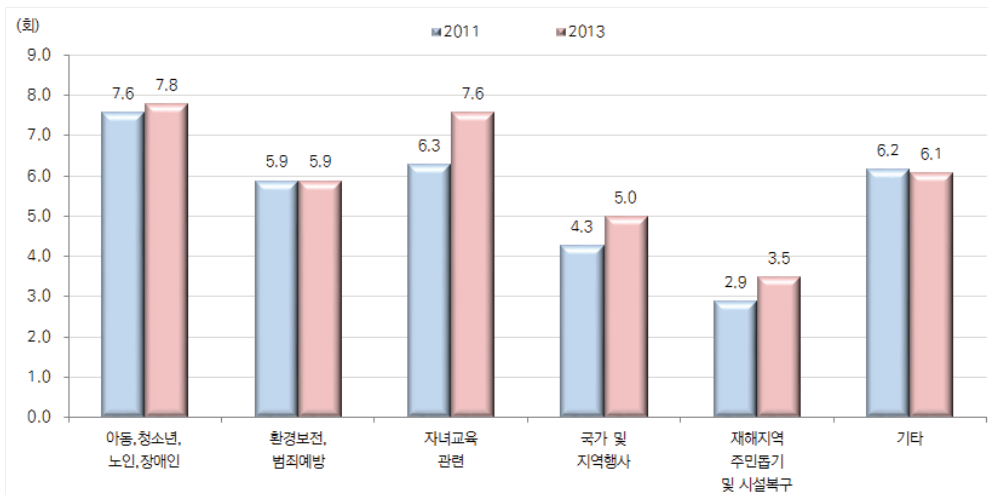
(단위: 회, 시간)

구분		평균 횟수	평균 시간
2011년		7.6	26.9
2013년		7.9	26.5
지역	도시(동부)	8.1	26.8
	농어촌(읍면부)	7.3	25.3
성	남자	6.9	24.9
	여자	8.9	28.0
연령	15~19세	5.5	16.7
	20~29세	7.4	28.7
	30~39세	7.6	27.3
	40~49세	9.3	30.5
	50~59세	9.7	33.4
	60세 이상	12.3	39.5
교육정도	초졸 이하	8.1	26.0
	중 졸	6.1	18.6
	고 졸	8.7	31.3
	대졸이상	8.9	30.1
직업	전문관리	8.5	29.9
	사 무	6.4	24.6
	서비스판매	8.9	30.8
	농어업	6.1	21.8
	기능노무	7.9	27.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7	37.3
	100~200만원 미만	8.2	26.4
	200~300만원 미만	7.6	25.8
	300~400만원 미만	7.5	25.3
	400~500만원 미만	7.3	23.8
	500~600만원 미만	6.6	22.8
600만원 이상	8.6	28.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3년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분야가 7.8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녀교육관련분야로 7.6회, 그리고 환경보전·범죄예방이 5.9회, 국가 및 지역행사 5.0회,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가 3.5회의 순이었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자녀교육관련분야에서 1.3회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국가 및 지역행사 0.7회,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가 각각 0.6회,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분야에서 0.2회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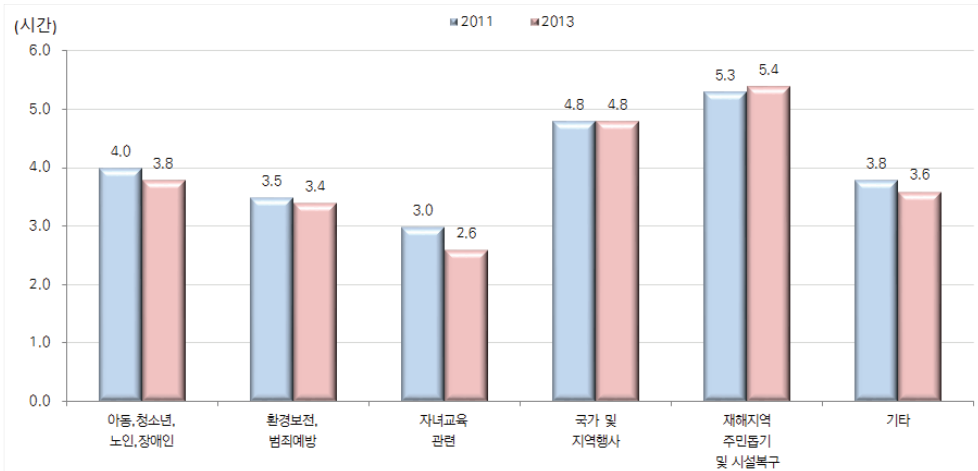
[그림 3-58]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횟수(15세이상): 2011, 2013



주: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분야에서 1회당 평균 5.4시간을 참여하여 가장 길게 활동하였고, 이는 2011년에 비하여 0.1시간이 증가하였다. 다음은 국가 및 지역행사 분야로 1회 평균 4.8시간 참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분야에서는 3.8시간, 환경보전·범죄예방 분야에서는 3.4시간, 자녀교육 관련분야에서는 1회평균 2.6시간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9]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시간(15세이상): 2011, 2013



주: 활동분야는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통계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루 10분 이상 주행동으로 한 사람은 전체의 0.5%이며, 이는 사회조사와 매우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생활시간 조사는 2일의 조사기간내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를 집계한 것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파악한 사회조사와는 기준 자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원봉사활동을 주행동으로 한 사람들의 요일 평균시간은 2시간 11분이었고, 여자가 2시간 14분으로 남자 1시간 54분보다 길었다.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2시간 11분, 2시간 13분, 2시간 8분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별로 요일평균시간을 알아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등에서 활동한 시간이 2시간 34분으로 국가 및 지역행사, 자녀교육관련, 재해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기타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비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율 및 시간(주행동): 2009

(단위 : %, 시간:분)

구분	요일 평균	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자원봉사활동 행위자 비율	0.5	0.2	0.8	0.6	0.3	0.3
행위자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	2:11	1:54	2:14	2:11	2:13	2:08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1:48	1:31	2:08	1:46	1:45	3:30
자녀교육 관련	1:14	2:30	1:12	1:16	0:46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관련	2:34	2:18	2:37	2:38	2:56	1:38
재해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1:10	1:10	-	-	1:10	-
기타 자원봉사활동(헌혈, 무료상담 등)	1:48	1:15	2:02	1:28	1:08	3:26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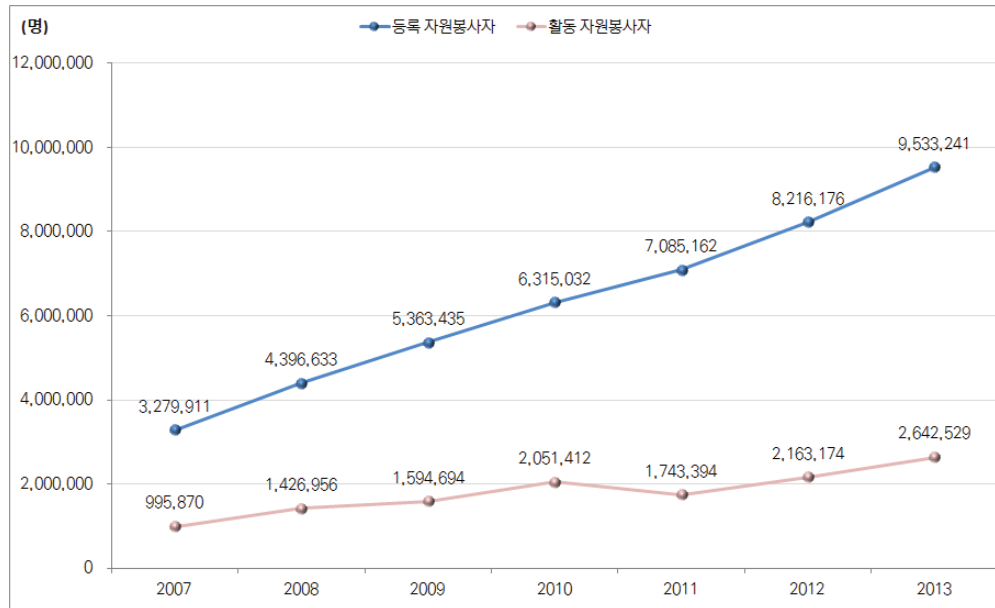
2) 등록 자원봉사자 인원 및 시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실적인증 DB를 통해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인원 및 활동시간 등을 알아보았다.

□ 행정자치부 DB 등록 자원봉사자 규모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를 통한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현황을 살펴 보면 등록 자원봉사자수는 2007년 328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953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1회이상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2007년 99만 6천명에서 2013년에는 264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활동자원봉사자는 등록 자원봉사자의 27.7%로 2012년의 26.3%에 비하여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0]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200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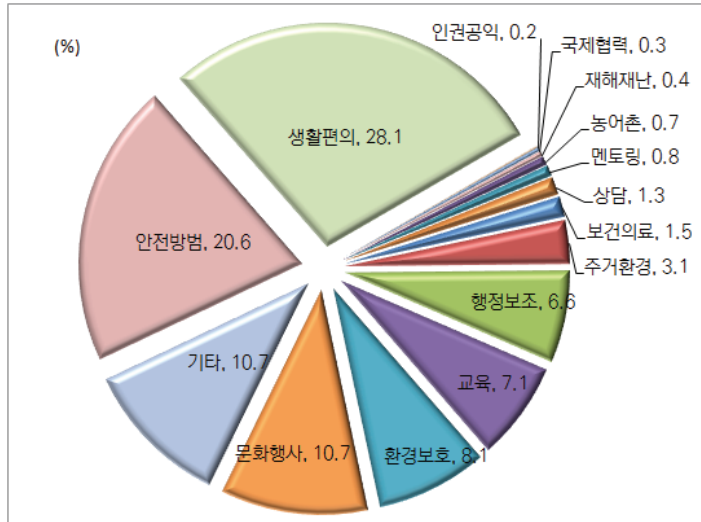


주: 활동 인원은 실인원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4 자원봉사센터 현황, 2014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인원(연인원)은 2,139만 5천명이고, 활동 분야는 생활편의에 28.1%, 안전방법에 20.6%, 문화행사에 10.7%, 환경보호에 8.1%, 교육에 7.1%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1]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현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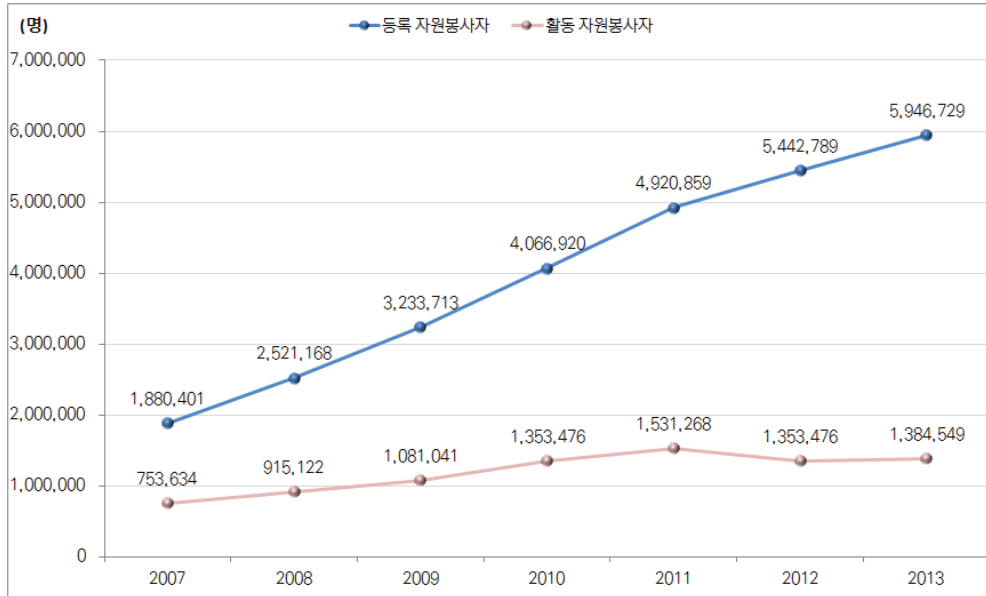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2014 자원봉사센터 현황, 2014

□ 보건복지부 DB 등록 자원봉사자 규모

보건복지부 DB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등록자원봉사자수는 594만 7천명이고, 활동자원봉사자수는 138만 5천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증가를 보이던 활동자원봉사자수는 2011년에 153만 1천명을 정점으로 2012년에는 135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이보다는 약간 증가한 138만 5천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감소의 원인이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져 활동봉사자수가 적게 집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관리센터종류별 사회복지 활동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활동한 전체 자원봉사자수는 129만 1천명(현행실적으로만 인정 받은 자원봉사자 수 제외)이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85.4%, 보건의료분야에 5.1%, 기타분야에 9.5%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등록인원을 보다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등록 자원봉사자 중 노인시설 30.1%, 장애인시설 26.0%, 복지관 17.8%, 법인/단체 11.2%, 아동시설 11.0%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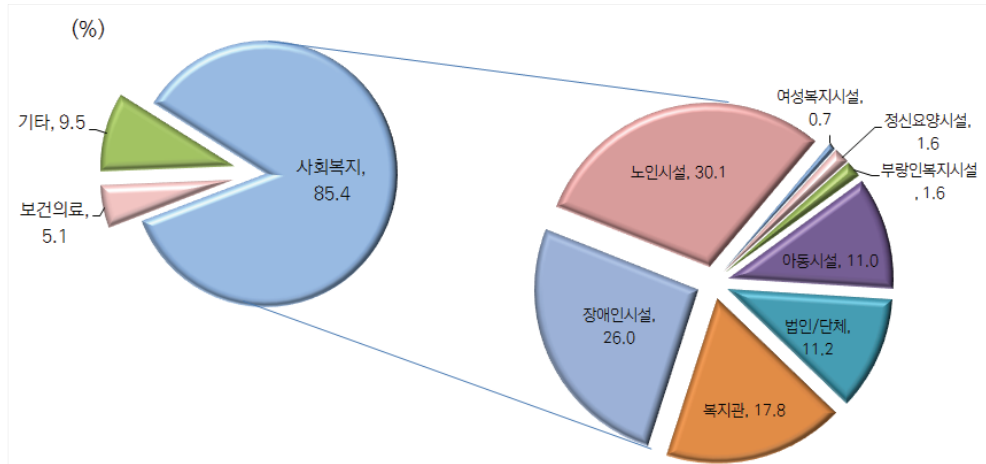
[그림 3-62]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2007~2013



주: 등록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육성·지원사업' 정보등록 기준년도인 2001.1부터 2013.12.31까지의 등록된 봉사자임.

활동자원봉사자는 2013년 1회 이상 활동한 봉사자로 중앙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 본부활동 자원봉사자 포함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014

[그림 3-63] 관리센터 종류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현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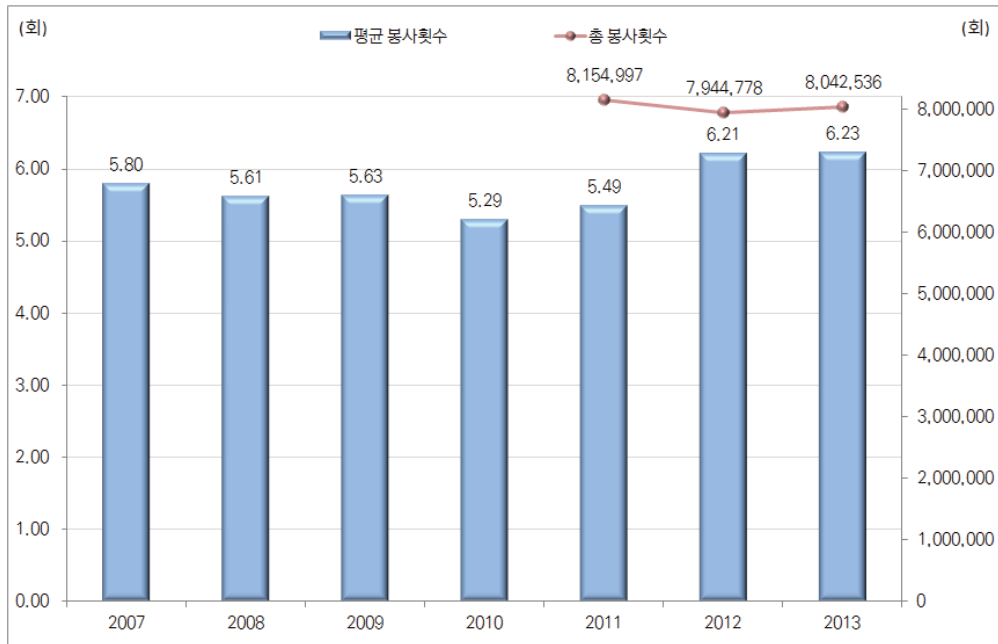


주: 현행으로만 자원봉사를 인정받은 인원을 제외한 1,291,264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014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총 봉사횟수와 평균 봉사횟수를 살펴보면, 총 봉사횟수는 2011년 8,155천회에서 2012년에는 7,945천회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8,043천회로 증가하였다. 평균 봉사횟수는 2007년 5.80회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5.29회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6.23회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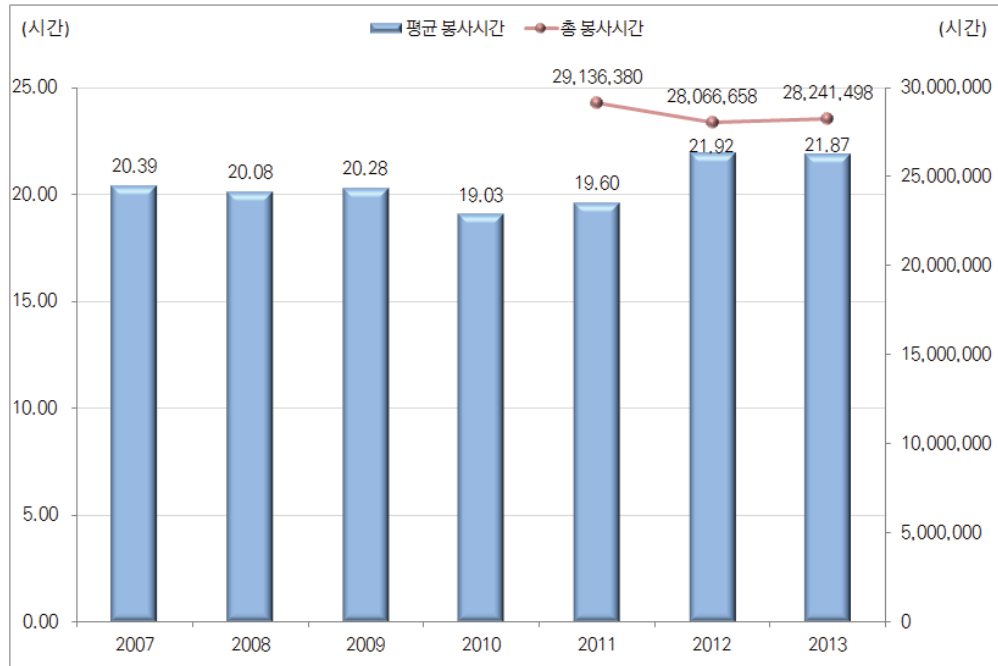
[그림 3-64]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총 봉사 횟수 및 평균 봉사 횟수: 2007~2013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각년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총 봉사시간과 평균 봉사시간을 살펴보면, 총 봉사시간은 2011년 2,913만 6천 시간에서 2012년에는 2,806만 7천 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2,824만 1천 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봉사시간은 2007년 20.39시간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9.03시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21.87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6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총 봉사 시간 및 평균 봉사 시간: 2007~2013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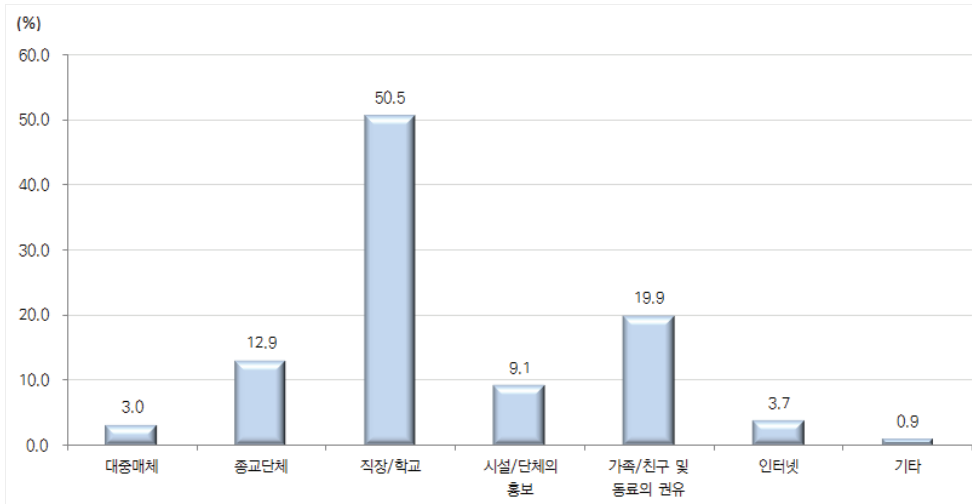
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특성

1)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50.5%가 직장/학교를 통하여 활동한 단체 등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친구 및 동료의 권유로 알게 된 경우는 19.9%, 종교단체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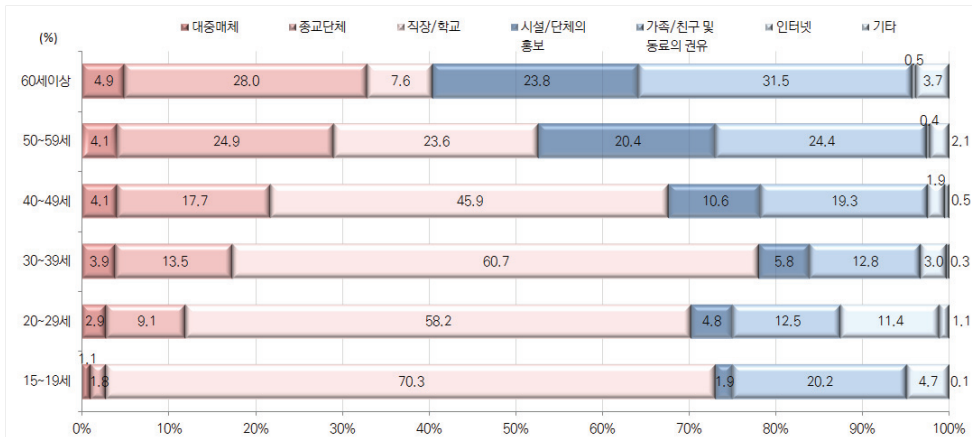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15~19세, 20대, 30대는 직장/학교를 통하여 알게된 경우가 50%를 넘었으며, 40대는 50%에 근접하는 45.9%가 직장/학교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50대는 종교단체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직장/학교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보다 높은 24.9%를 나타냈으며, 60세 이상은 이보다 높은 28.0%가 종교단체를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 40대까지는 직장/학교, 50대부터는 종교단체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6]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3-67]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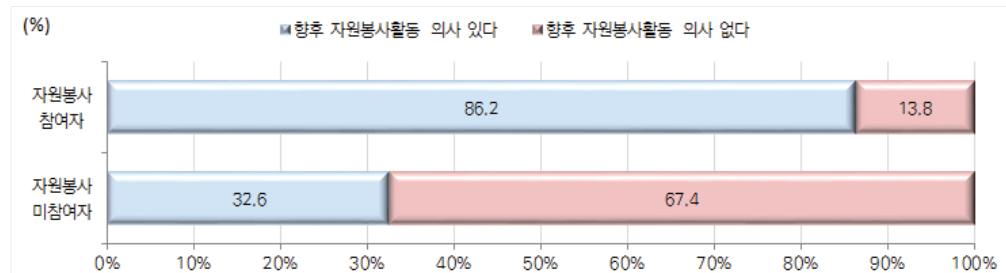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2)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경우 86.2%가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의 경우는 32.6% 만이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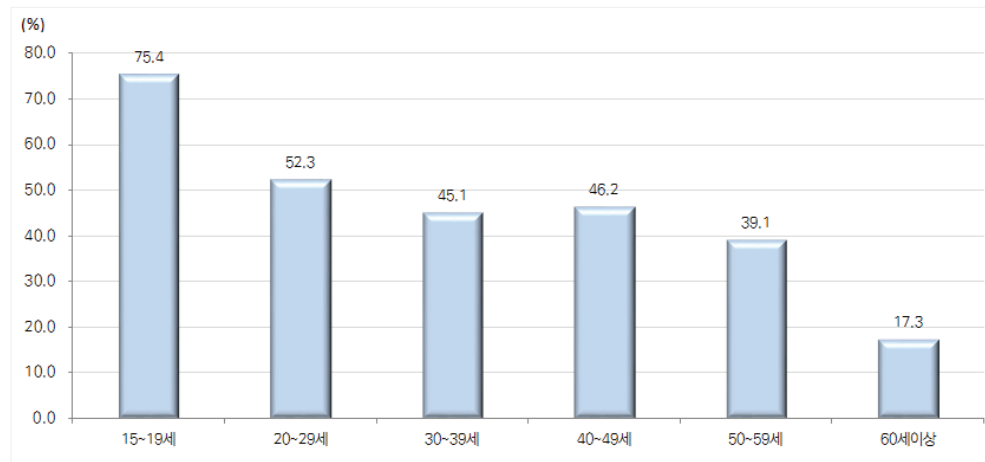
연령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는 75.4%가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는 52.3%, 30대는 45.1% 그리고 60세 이상은 17.3% 만이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그림 3-68]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15세이상):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그림 3-69] 연령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20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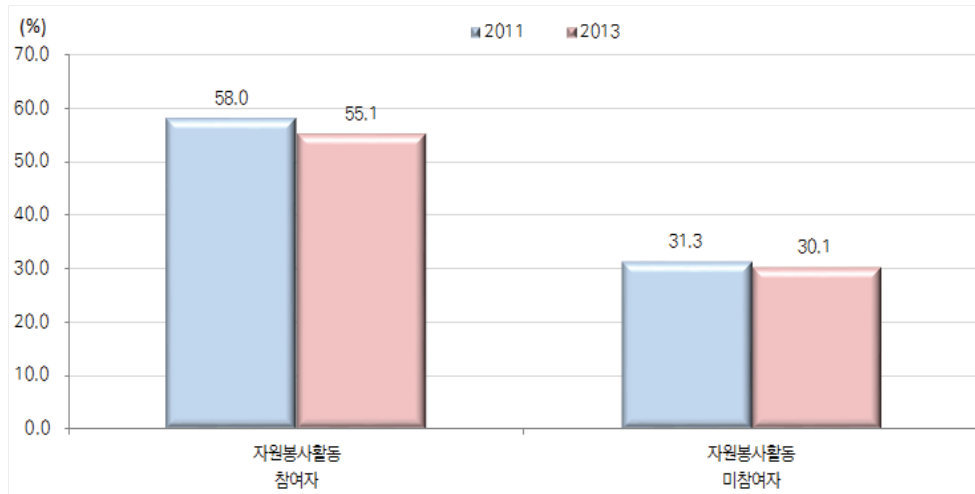
라. 자원봉사활동 여부별 특성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기부참여 경험,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수준 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부 참여율

201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별 기부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55.1%가 기부에 참여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30.1%만이 기부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나 미참여자 모두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약간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기부 참여율이 2011년 58.0%보다 2.9% 포인트가 낮아졌으며, 미참여자는 31.3%보다 1.2% 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림 3-70]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기부 참여율(15세이상): 2011,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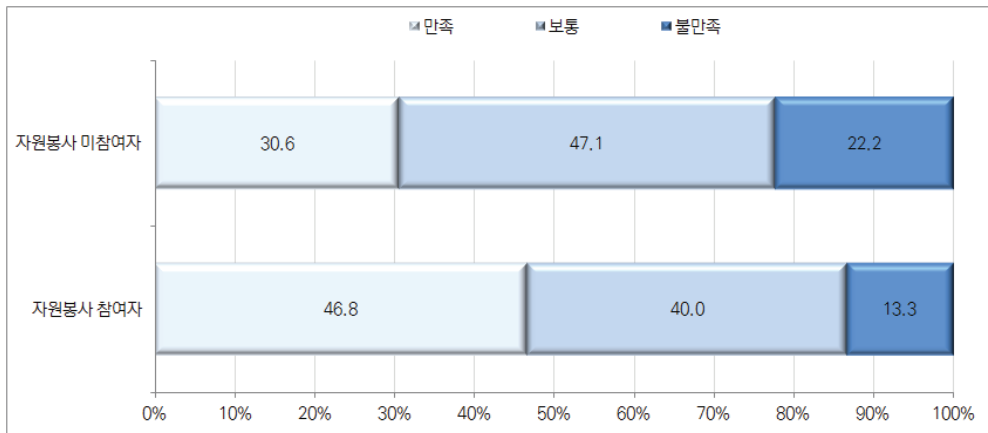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삶에 대한 만족감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현재 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미참여자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6.8%로 미참여자의 만족수준 30.6% 보다 16.2% 포인트가 높았다. 삶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13.3%인 반면 미참여자는 22.2%로 미참여자가 8.9% 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1]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감(15세이상): 2013



주: 만족은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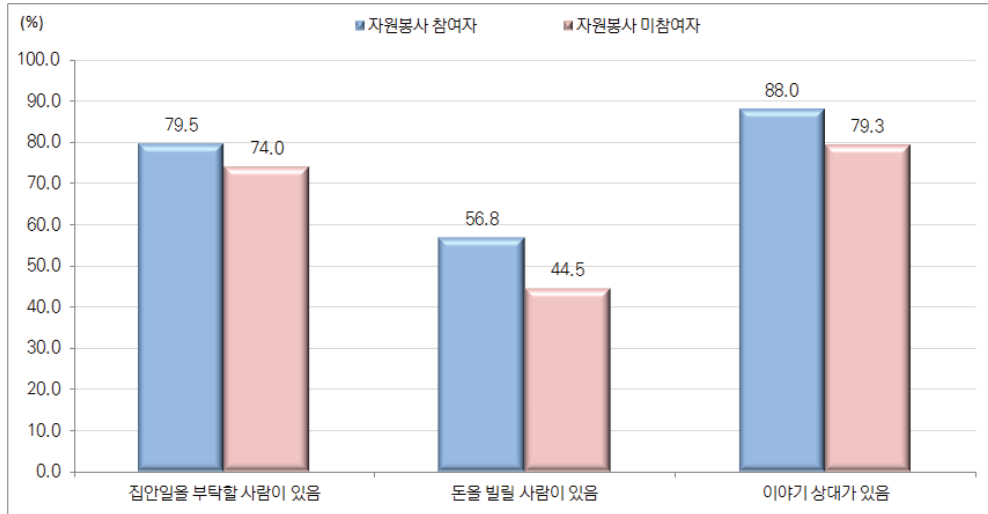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3) 사회적 관계망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79.5%,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가 74.0%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5.5% 포인트 높았으며,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56.8%,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가 44.5%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12.3% 포인트 높았다. 이야기 상대가 있는지의 여부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88.0%,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가 79.3%로 8.7% 포인트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높았다. 사회적

관계망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2]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15세이상): 2013



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조사대상이 19세 이상인.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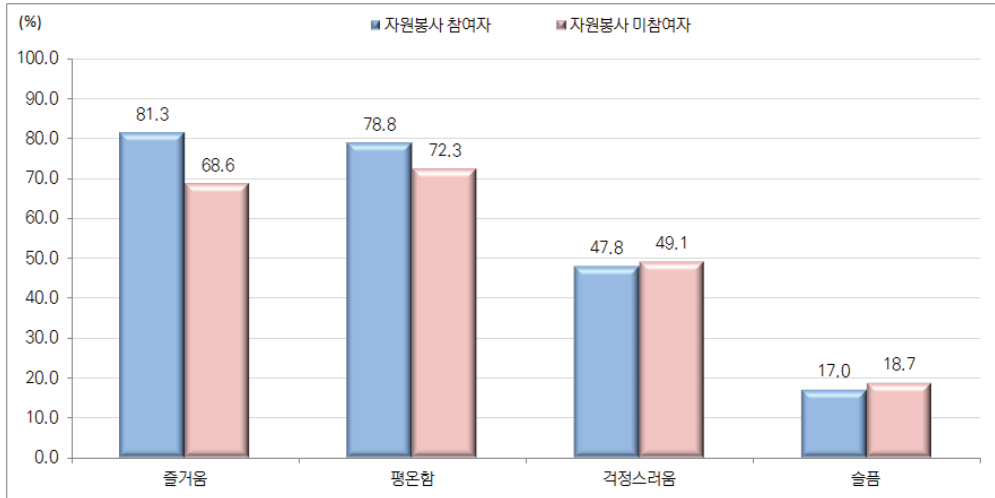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4) 정서경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정도를 비교해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정서적인 면에서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81.3% 경험한 반면,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68.6%만이 경험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12.7% 포인트 높았으며, 평온함에 대한 감정 경험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78.8% 경험한 반면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72.3%만이 경험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6.5% 포인트 높았다. 반면 좋지 못한 감정인 걱정스러운 감정 경험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47.8%인 반면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49.1%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1.3% 포인트 낮았으며, 슬픔에 대한 감정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17.0% 느낀 반면,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18.7% 느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 보다 1.7% 포인트 낮았다. 좋은 감정 경험은 자원봉사활동 경험자가 높은 반면

나쁜 감정경험은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가 높았다.

[그림 3-73]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른 정서경험(15세이상): 2013



주: “귀하는 어제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마.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회귀분석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분형 변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15세 이상 인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한 변수 위주로 진행하였다.

자원봉사활동 관련 변수 중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전문자원봉사활동 여부, 자원봉사활동 분야 등은 무응답이 많아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분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전체 시·도에서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제주 1.720배, 경남 1.611배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 비해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응답자는 2.013배, 중학교 2.247배, 고등학교 2.032배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교의 경우 94.6% 수준을 보였다.

주관적 만족감이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에 비해 ‘약간 만족’ 응답자가 1.262배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을 보인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에 비해 ‘100~200만원’인 응답자와 ‘200~300만원’인 응답자는 더 낮은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을 보이지만, ‘300~400만원’, ‘500~600만원’, ‘7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1.018배, 1.293배, 1.308배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을 보인다.

〈표 3-2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Odds ratio ¹⁾		변수명		Odds ratio ¹⁾			
지역	서울			주관적 만족감	매우 불만족				
	부산	1.132	**		약간 불만족	0.877	***		
	대구	1.114	***		보통	0.969	***		
	인천	1.057	***		약간 만족	1.262	***		
	광주	1.478	***		매우 만족	1.355			
	대전	1.517	***		계층 의식	하	하		
	울산	1.088	***	상		1.476	***		
	경기	1.039	***	중		하	2.013	***	
	강원	1.121	**	상		3.027	***		
	충북	1.438	***	상		하	3.275	***	
	충남	1.584	***			상	4.243	***	
	전북	1.040	***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전남	1.421	***				100~200만원	0.918	***
	경북	1.125		200~300만원	0.869		***		
경남	1.611	***	300~400만원	1.018	**				
제주	1.720	***	400~500만원	1.131					
성	남자			500~600만원	1.293		***		
	여자	1.021		600~700만원	1.199				
연령	(연속형)	0.955 ¹⁾	***	700만원 이상	1.308		***		
	무학								
교육 정도	초등학교	2.013	***						
	중학교	2.247	***						
	고등학교	2.032	***						
	대학교	0.946	***						
	대학원 이상	1.456							

주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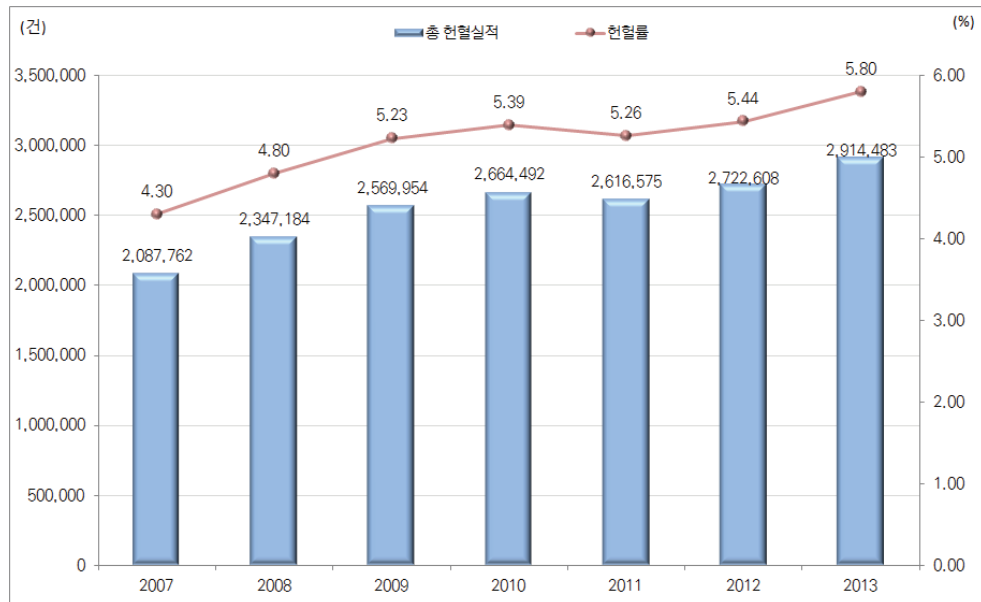
2)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서 회귀계수의 부호를 기준으로 해석함. 연령의 추정된 회귀계수 값은 음수임(-0.0463).

제3절 생명나눔

1. 헌혈

적십자의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총 헌혈실적은 291만 4천 건으로 2012년의 272만 3천 건에 비하여 7.0%가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헌혈실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08만 8천 건이던 헌혈실적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66만 4천 건에 이르렀으나 2011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261만 7천 건의 헌혈실적을 나타내었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272만 3천 건, 2013년에는 291만 4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헌혈실적에 따른 헌혈률은 2007년 4.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4%에 이르렀으나 2011년에는 5.3%로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4%, 2013년에는 5.8%로 증가하였다.

[그림 3-74] 총 헌혈실적 및 헌혈률: 200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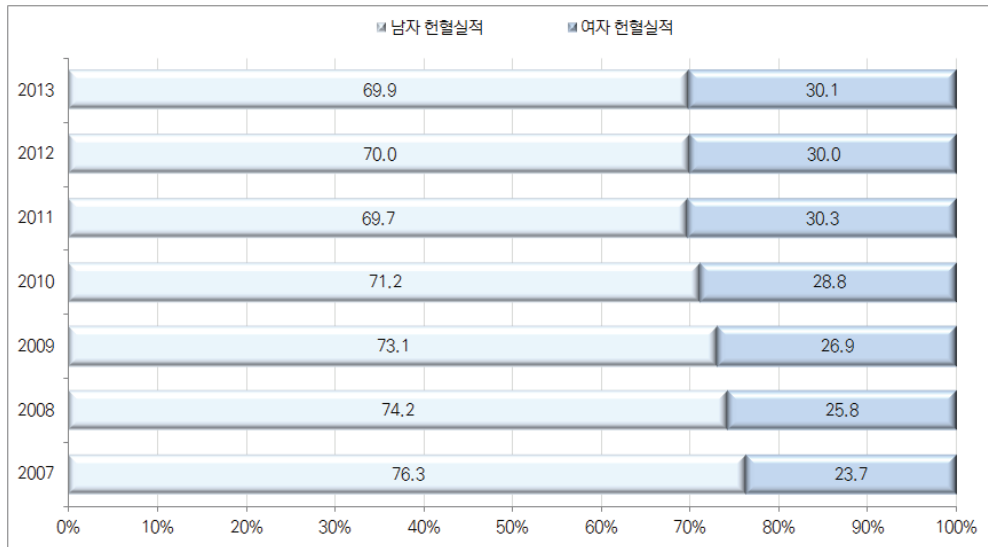


자료: 대한적십자사, 2013 혈액사업통계연보, 2014

2013년 성별 헌혈실적을 살펴보면 남자가 69.9%, 여자가 30.1%로 남자가 여자보다 39.8% 포인트 높았다. 이와 같은 남녀의 차이는 과거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2007년의 남자와 여자의 헌혈비율은 각각 76.3%, 23.7%로 남자가 여자보다 52.6% 포인트 높았으나 점차 그 차이가 좁혀져 2010년에는 남자가 71.2%, 여자가 28.8%로 그 차이가 42.4% 포인트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 보다 더 감소한 39.8%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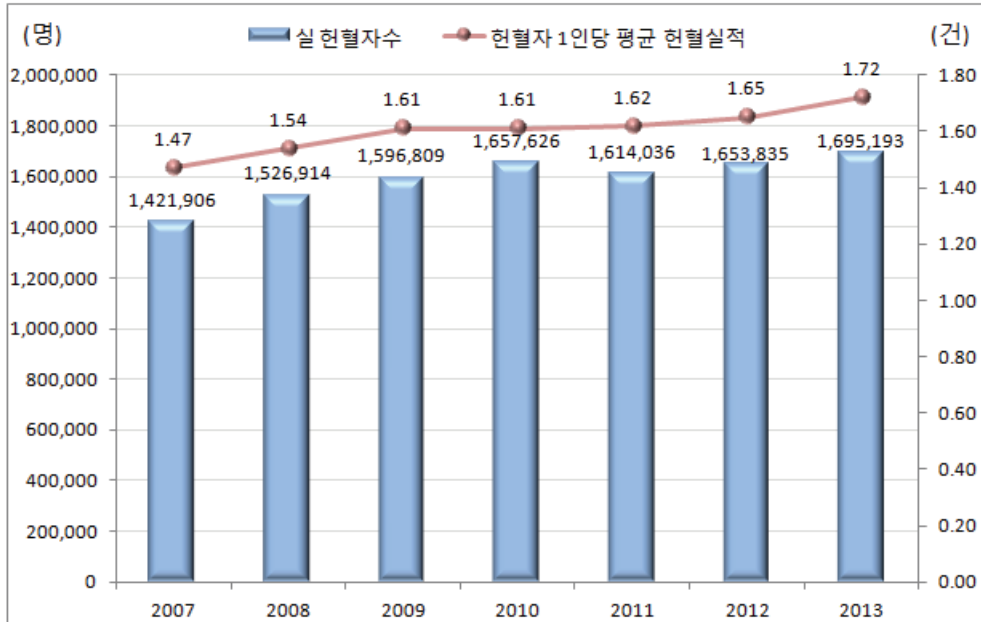
[그림 3-75] 성별 헌혈실적: 2007~2013



자료: 대한적십자사, 2013 혈액사업통계연보, 2014

실헌혈자수와 헌혈실적을 헌혈자수로 나눈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실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헌혈자수는 1,422천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1,65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1,614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69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헌혈자 1인당 평균헌혈실적은 2007년 1.47회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1.61회로 그리고 2012년에는 1.65회로 그리고 2013년에는 1.72회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즉 헌혈참여자의 헌혈횟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6] 실 헌혈자수 및 평균 헌혈실적: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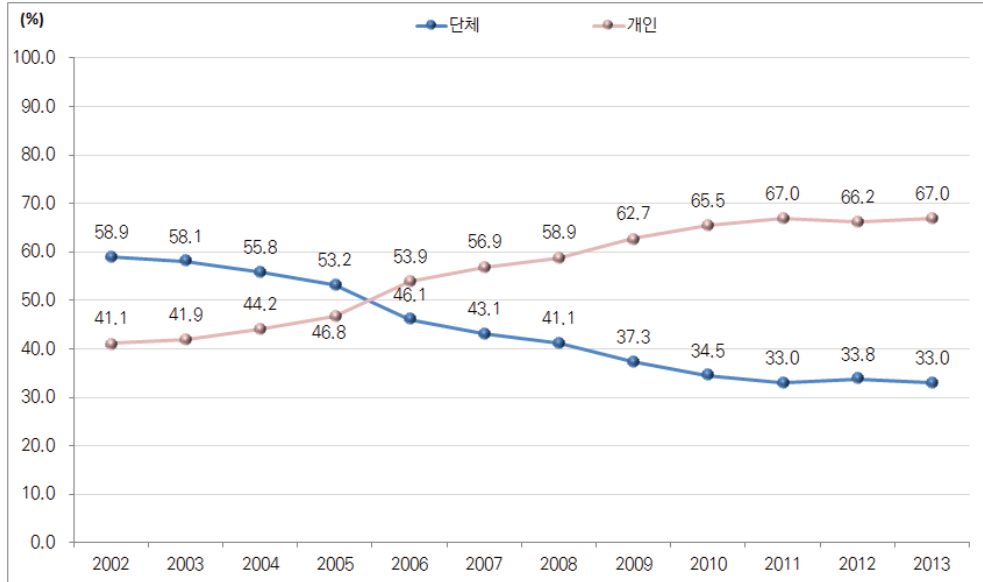


자료: 대한적십자사, 2013 혈액사업통계연보, 2014

2013 헌혈실적을 헌혈의 집 및 가두헌혈을 통한 개인헌혈과 학교 및 군부대 등 단체헌혈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단체헌혈이 개인헌혈보다 높아 58.9% 차지하고 개인은 41.1%를 차지하여, 단체헌혈이 개인헌혈보다 17.8% 포인트가 높았으나 점차 그 간격이 좁혀져 2005년에는 단체 53.2%, 개인 46.8%로 그 차이가 6.4% 포인트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단체가 46.1%로 감소하고 개인이 53.9%로 증가하여 그 차이가 7.8% 포인트 개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개인 비율의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2013년에는 개인 67.0%, 단체 33.0%로 개인이 단체보다 34.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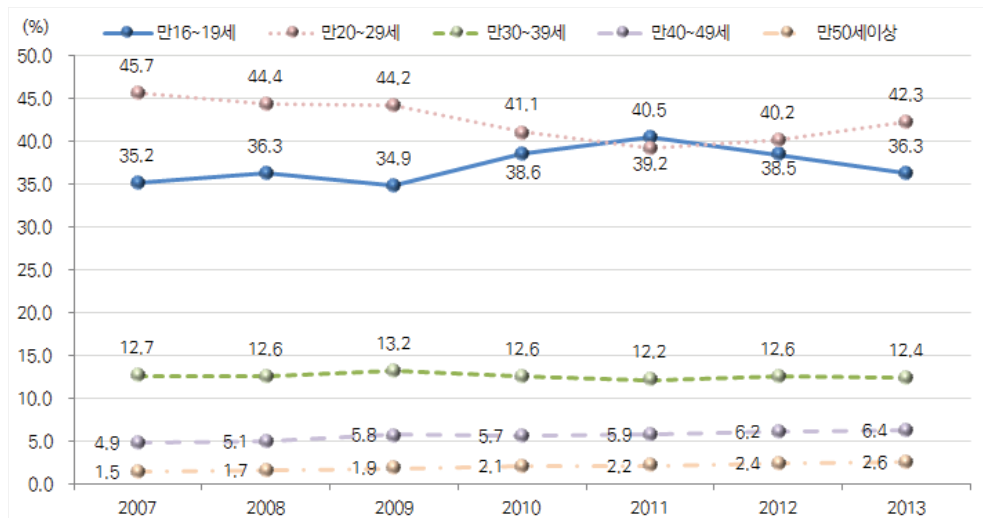
연령별 헌혈 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만 20~29세의 헌혈 실적 비율은 42.3%로 가장 높으며, 만 16~19세의 경우 36.3%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헌혈 실적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만 30~39세의 경우 12.4%, 만 40~49세는 6.4%, 만 50세 이상은 2.6%를 차지하였다.

[그림 3-77] 개인과 단체의 헌혈실적 비율: 2002~2013



자료: 대한적십자사, 2013 혈액사업통계연보, 2014

[그림 3-78] 연령별 헌혈실적 비율: 200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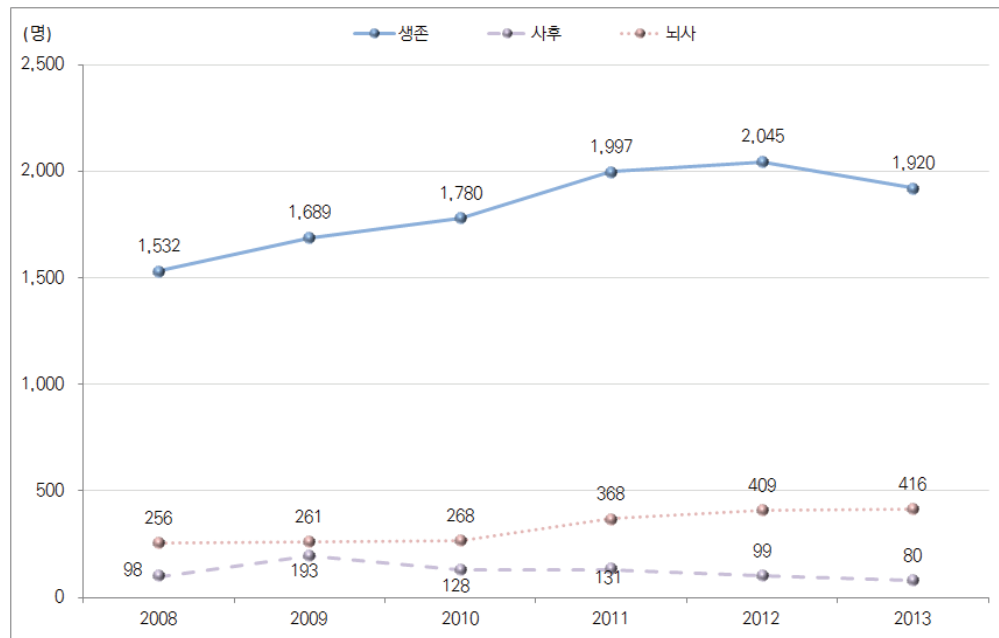


자료: 대한적십자사, 2013 혈액사업통계연보, 2014

2. 장기기증 등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장기이식 희망자와 장기기증 희망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장기이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매년 장기이식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장기이식통계연보를 통해 살펴 본 장기기증실태를 살펴보면 생존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1,532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45명에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1,920명이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256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368명으로 2013년에는 416명으로 증가하였다. 사후장기기증자는 2008년 98명에서 2009년에는 19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8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79] 기증형태별 장기 등 기증자 추이: 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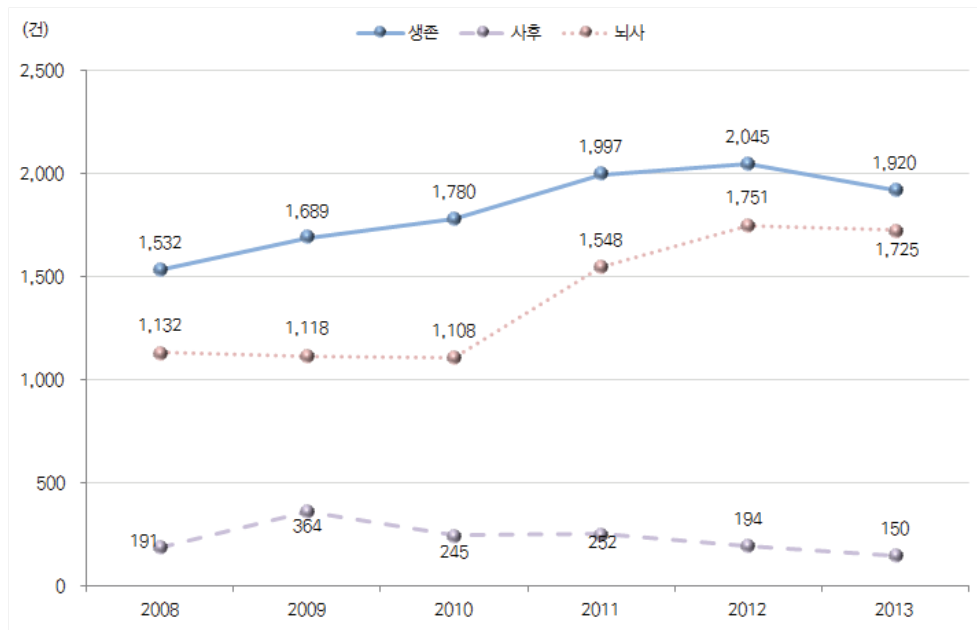


주: 골수, 안구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4

2013년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추이를 살펴보면 생존자의 장기를 이식한 건수는 1,920건이었으며,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은 건수는 1,725건 그리고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 받은 건수는 1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자 보다 장기이식 받은 건수가 더 많은 것은 뇌사나 사망이후에 한사람의 여러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3-80] 기증형태별 장기 등 이식 추이: 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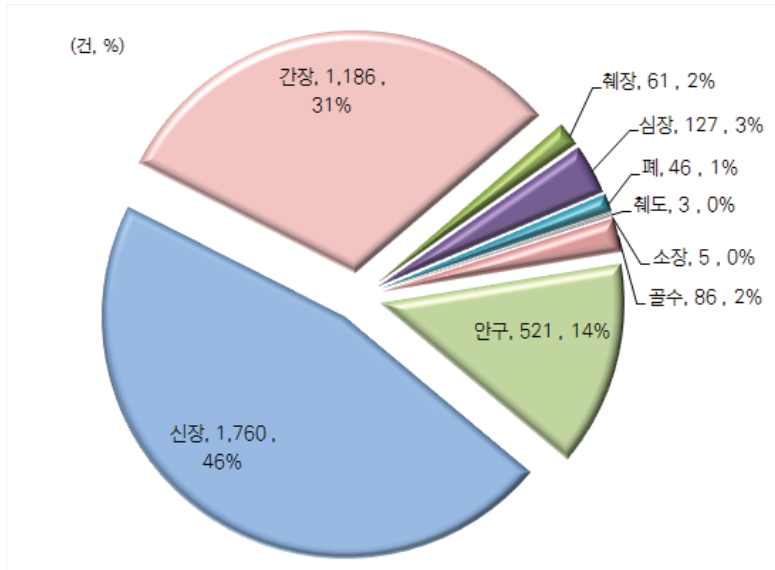
주: 골수, 안구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4

2013년 장기이식 실태를 장기별로 살펴보면 신장이 1,760건으로 가장 큰 비중 (46.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간장으로 1,186건(31.3%), 안구 521건(13.7%) 순으로 많았다. 신장과 간장 그리고 각막이식 건수의 합은 3,467건으로 전체의 91.4%로 이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장기를 이식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26,035명으로 2008년 17,418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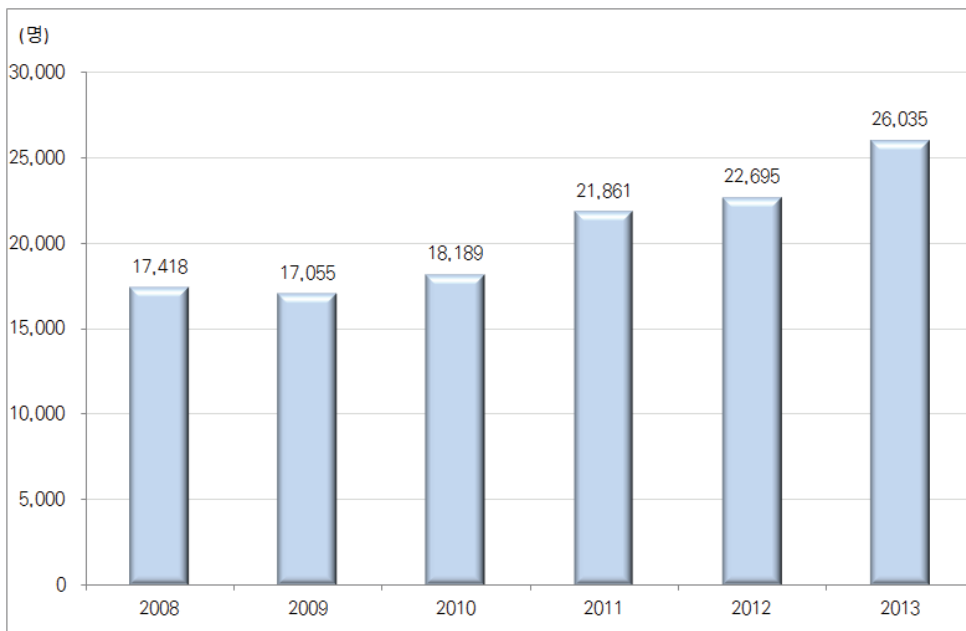
[그림 3-81] 장기 등 이식 현황: 2013



주: 골수, 안구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4

[그림 3-82] 이식대기자 추이: 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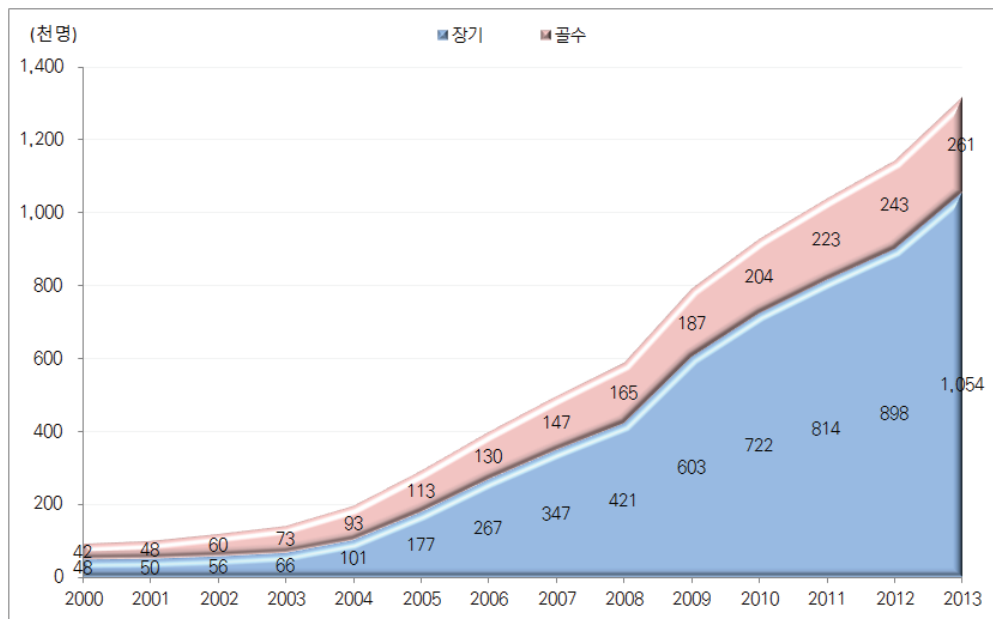


주: 골수, 안구 포함. 각년도말 누계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4

2013년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기기증희망등록자를 통해 살펴보면 2013년 장기기증 희망자는 105만 4천 5백 명, 골수 기증희망자수는 26만 1천 1백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즉, 2005년 장기기증희망자수는 17만 7천 4백 명에서 2010년에는 72만 2천 2백 명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105만 4천 5백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골수기증희망자수는 2005년 11만 2천 8백 명에서 2010년에는 20만 3천 9백 명 그리고 2013년에는 26만 1천 1백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83] 장기 등 기증희망자 추이(누계): 2000~2013



주: 기증희망 취소자, 사망자 제외함. 골수기증희망자는 HLA검사결과가 있는 데이터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4

제4절 소결

□ 기부

- 기부자의 특성별 기부형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20대보다는 40대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에 적극 참여

기부는 개인단위에서의 기부와 기업에서의 기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기부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남자가 37.3%, 여자가 31.9%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4.9%로 가장 높고, 20대가 24.8%로 가장 낮았다. 교육정도별로는 30세 이상 인구중 대졸이상이 53.3%가 기부경험을 갖고 있어 가장 높았고, 초졸이하는 17.2%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58.2%로 가장 높았고, 농·어업직이 25.3%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 기부 참여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이 57.7%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이 18.7%로 가장 낮았다. 기부경로별 기부 참여율은 모금단체가 57.8%로 가장 높고, 언론기관이 12.2%로 가장 낮았다. 현금기부자의 52.1%는 주기적으로 현금기부에 참여하였으며, 주기적 참여자의 67.0%는 월단위이하로 현금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 2013년 총 기부규모는 12조 4,859억 원이며, 현금 기부자의 평균기부횟수는 6.5회

2013년 기부규모는 근로소득자가 5조 5,842억 원, 종합소득자가 2조 2,472억 원, 법인이 4조 6,545억 원으로 총 12조 4,859억 원이었다. 평균기부횟수는 6.5회였으며, 기부경로별로는 대상자에게 직접전달,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가운데 종교단체가 6.7회로 가장 많고, 언론기관이 4.4회로 가장 적었다. 평균 현금기부액은 1인당 205천원이었다. 현금이외에 음식이나, 옷, 장남감 등을 기부한 사람들의 평균 기부횟수는 3.3회였으며, 기부경로별로는 대상자에게 직접전달,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가운데 대상자에게 직접기부한 경우가 3.6회로 가장 많고, 직장(기업)이 2.3회로 가장 낮았다.

○ 기부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목적이 가장 높아

기부이유를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움’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에 의해서가 26.8%였으며,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1.7%로 가장 낮았다. 기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5.5%였으며, 이들의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61.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가 18.2%였으며, 기부방법을 몰라서가 3.8%로 가장 낮았다.

○ 기부 대상인지 경로는 대중매체, 직장·학교 등의 순으로 높아

기부 대상을 인지한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지한 경우가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장·학교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23.0%였으며, 종교단체 20.1%, 시설·단체 직접홍보가 19.1%, 가족, 친구 및 동료권유가 8.9%, 인터넷을 통해서가 2.4%로 가장 낮았다.

○ 기부문화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 필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15세 이상 인구 중 54.6%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9.9%가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6.7%였다

○ 삶에 대한 만족감은 기부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높아

삶에 대한 만족감은 경제적인면, 직업, 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기부참여자가 43.5%가 만족하고 있으며, 기부 미참여 그룹은 28.2%만이 만족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및 단체참여를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기부참여자가 79.2%, 미참여자

는 72.3%였으며, 돈을 빌릴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부참여자의 54.6%, 미참여자의 42.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

기부 단체/기관선정시 고려사항은 2014년에 기부를 하기 위해 참여할 단체/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체/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기부 사업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23.0%였으며, 다음은 단체/기관의 인지도, 규모 등이 8.9%, 단체/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6.4%였다.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체/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기부 사업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13.2%였으며, 다음은 단체/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14.2%, 단체/기관의 인지도, 규모 등이 7.3%로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부 단체/기관 선정 시 차이를 보였다.

○ 기업의 기부참여는 참여수와 기부금 모두에서 증가

2013년 기부금 공제 신고법인수는 51만 7,805개이고, 기부금 총액은 4조 6,545억 원이고, 법정·특례기부금은 1조 7,849억원, 지정기부금은 2조 8,696억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신고법인수는 2007년 37만 2,141개에 비하여 14만 5,664개가 증가하였고, 기부금 총액은 2007년 3조 3,251억원에 비하여 1조 3,294억 원이 증가하였다. 법인당 평균기부액은 2007년 893만원, 2013년 899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5~19세가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음

2013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5세 이상 인구 중 17.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2011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7.6%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3.0%였으나 이후 점차 높아져 2009년에는 19.3%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3년에는 17.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년에는 남자가 14.0%, 여자가 14.6%로 여자가 0.6% 포인트 높았으나 2009년에는 19.3%로 같은 수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고, 2011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0.9%포인트 높은 18.0%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0.8% 높은 18.1%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13년의 경우 15~19세의 참여율이 7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40대 17.3%, 50대 14.5%, 20대 13.7%의 순이었고,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7.8%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22.4%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이 21.6%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제주 21.3%, 광주 21.2%, 충남 21.1%, 전남 19.8%, 충북 19.5%, 울산 18.9%로 전국 17.7% 보다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북이 가장 낮은 15.5%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 2007년 이후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증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를 통한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자원봉사자수는 2007년 328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953만 3

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1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2007년 99만 6천명에서 2013년에는 264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활동자원봉사자는 등록자원봉사자의 27.7%로 2012년의 26.3%에 비하여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DB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등록 자원봉사자수는 594만 7천명이고,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138만 5천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증가를 보이던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2011년에 153만 1천명을 정점으로 2012년에는 135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138만 5천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감소의 원인이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져 활동 자원봉사자수가 적게 집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는 직장/학교를 통하여서가 가장 높아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50.5%가 직장/학교를 통하여 활동한 단체 등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친구 및 동료의 권유로 알게된 경우는 19.9%, 종교단체를 통하여 알게된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기부참여에도 적극적

201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별 기부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55.1%가 기부에 참여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30.1%만이 기부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나 미참여자 모두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약간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기부 참여율이 2011년 58.0%보다 2.9% 포인트가 낮아졌으며, 미참여자는 31.3%보다 1.2% 포인트가 낮아졌다.

□ 생명나눔

○ 헌혈실적 및 헌혈률은 서서히 증가

적십자의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총헌혈실적은 291만 4천명으로 2012년의 272만 3천명에 비하여 7.0%가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헌혈실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08만 8천 건이던 헌혈실적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66만 4천 건에 이르렀으나 2011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261만 7천 건의 헌혈실적을 나타내었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272만 3천 건, 2013년에는 291만 4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헌혈실적에 따른 헌혈률은 2007년 4.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4%에 이르렀으나 2011년에는 5.3%로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4%, 2013년에는 5.8%로 증가하였다.

○ 생존자와 사후장기기증은 감소한 반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증가

장기기증실태를 살펴보면 생존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1,532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45명에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1,920명이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256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368명으로 2013년에는 416명으로 증가하였다. 사후장기기증자는 2008년 98명에서 2009년에는 19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80명으로 감소하였다.



제4장

국내 비영리조직의 실태

제1절 공익법인

제2절 비영리단체

제3절 소결



4

국내 비영리조직의 실태 <<

나눔관련 비영리조직으로는 공익법인과 민간비영리단체가 있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들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제1절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공익법인은 세무서에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사업목적별로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로 구분하였다. 2013년 기준 공익법인의 수는 29,849개로 이 중 종교법인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은 학술·장학법인으로 11.8%, 사회복지 10.5%, 교육사업 5.7%의 순으로 많았다.

<표 4-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09~2013

(단위: 개, %)

구분	합계	공익사업 유형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2009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2010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2011	29,170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2012	29,509	17,708	3,093	1,702	3,394	743	759	2,110
2013	29,849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비율	(100.0)	(59.1)	(10.5)	(5.7)	(11.8)	(2.6)	(2.7)	(7.6)

주: 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

사업목적·지역별 공익법인 가동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공익법인 중 23.1%가 소재해 있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도로 17.1%가 소재해 있다. 이 두 지역을 합하면 40.2%로 많은 공익법인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사업목적별 지역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13

(단위: 개, %)

구분	합계	공익사업 유형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전국	29,849 (100.0)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서울	6,881 (23.1)	3,356	462	326	1,343	330	87	977
인천	1,022 (3.4)	773	53	50	63	11	27	45
경기	5,101 (17.1)	3,747	291	267	312	90	140	254
강원	1,025 (3.4)	495	167	55	168	31	40	69
대전	932 (3.1)	581	96	45	91	17	28	74
충북	1,362 (4.6)	928	163	55	96	20	35	65
충남	1,302 (4.4)	724	220	82	131	28	48	69
세종	62 (0.2)	25	15	2	12	1	5	2
광주	901 (3.0)	432	156	74	149	18	11	61
전북	1,738 (5.8)	1,054	220	99	173	37	49	106
전남	1,593 (5.3)	904	258	89	156	42	46	98
대구	1,369 (4.6)	831	180	107	124	26	33	68
경북	2,222 (7.4)	1,485	190	156	163	38	90	100
부산	1,698 (5.7)	857	246	131	250	31	76	107
울산	317 (1.1)	178	43	22	28	3	16	27
경남	1,912 (6.4)	1,085	261	122	198	53	75	118
제주	412 (1.4)	174	114	22	53	7	11	31

주: 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이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증감의 기복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284억 4천2백만원이고,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액수는 2012년에 비하면 크게 적어진 액수이다. 즉, 2012년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958억 1천4백만원이고,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10억 8백만원으로 총액수는 968억 2천2백만원으로 2013년의 3.4배에 이른다.

〈표 4-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 2009~2013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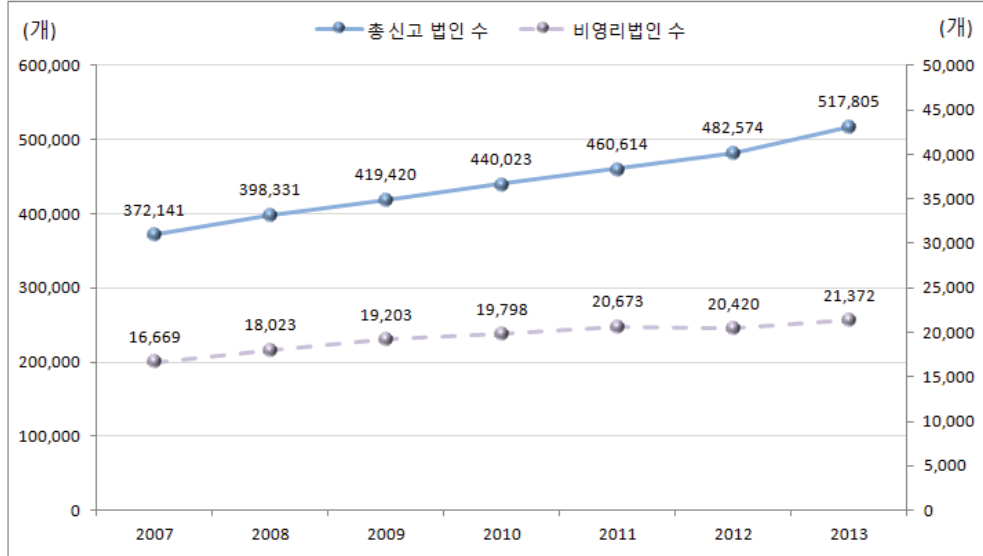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액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		
		소계	공익법인출연 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소계	공익법인출연 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2009	47,059	46,993	45,127	1,866	66	33	33
2010	41,244	40,744	39,382	1,362	500	-	500
2011	75,459	75,372	73,893	1,479	87	87	-
2012	96,822	95,814	95,646	168	1,008	508	500
2013	28,442	28,442	27,966	476	0	-	-

주: 해당연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총신고법인수와 비영리법인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총신고법인은 517,805개이며, 비영리법인은 이 가운데 4.1%인 21,372개이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수는 2007년 16,669개에 비하면 28.2%가 증가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한 공익법인수는 29,849개로 비영리법인 21,372개보다 많다. 이는 공익법인은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을 집계한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해당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만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 신고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수 파악에서 누락되어 실제 존재하는 법인보다 적은 수가 집계된다.

가동중인 비영리법인 수를 지역과 업태에 따라 살펴보면, 2013년에 가동중인 비영리법인수는 지점법인을 제외하고 23,944개로 서울청이 7,530개로 전체의 31.4%가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다음은 경기도가 4,356개로 전체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업태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7,700개로 전체의 32.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은 부동산업이 5,022개로 21.0%를 점하여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림 4-1] 법인세 신고 총 법인 수 및 비영리법인 수: 2007~2013



주: 각년도 말 신고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표 4-4> 지역별 업태별 가동 비영리법인 수

(단위: 개)

지역별	2012		2013		업태별	2012		2013	
	합계	2012	2013	합계		2012	2013		
서울청	합계	21,306	23,944	합계	21,306	23,944	농업·임·어업	514	574
충부청	인천	778	956	광업	5	5	제조업	978	1,059
	경기	3,294	4,356	전기·가스·수도업	27	39	건설업	691	709
	강원	723	776	도매업	1,093	1,368	소매업	717	904
대전청	대전	573	632	음식·숙박업	209	241	운수·창고·통신업	443	508
	충북	705	734	금융·보험업	4,100	4,074	부동산업	4,055	5,022
	충남	806	901	서비스업	6,867	7,700	보건업	1,313	1,424
광주청	세종	49	61	기타업종	294	317			
	광주	563	623						
	전북	843	891						
대구청	전남	854	882						
	대구	875	908						
	경북	1,200	1,251						
부산청	부산	1,345	1,430						
	울산	319	335						
	경남	1,170	1,260						
	제주	394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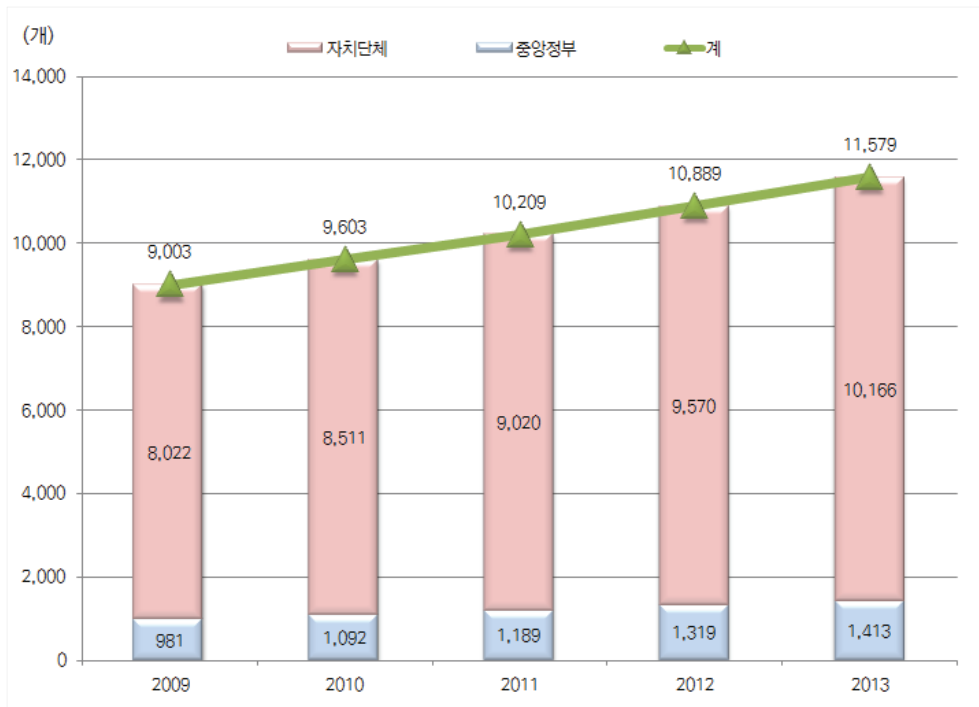
주: 해당연도 말 가동법인 기준으로 지점법인을 제외한 법인수임.
 업태분류는 법인의 신청, 정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세적)상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 비영리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의 요건을 갖추어 동법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시·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013년에 중앙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수는 1,413개로 2012년의 1,319개에 비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수는 94개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단체수가 225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보건복지부 167개, 외교부와 환경부가 각각 165개의 순이었다.

2013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수는 총 10,166개로 2012년의 9,570개에 비하여 596개가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등록단체를 가지고 있는 시·도는 경기도로 1,740개였으며, 다음은 서울로 1,590개, 전북 860개 그리고 경북 670개 순이었다.

[그림 4-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2009~2013



〈표 4-5〉 중앙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2013

(단위: 개)

	등록 수				등록 수		
	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계	1,413	797	616	해양수산부	26	18	8
기획재정부	7	4	3	국가보훈처	12	5	7
미래창조과학부	17	14	3	식품의약품안전처	2	0	2
교육부	43	17	26	국세청	1	1	0
외교부	165	107	58	통계청	1	1	0
통일부	125	74	51	경찰청	8	6	2
법무부	8	2	6	소방방재청	10	8	2
국방부	31	14	17	문화재청	6	6	0
행정자치부	225	119	106	농촌진흥청	6	6	0
문화체육관광부	147	68	79	산림청	13	10	3
농림축산식품부	36	30	6	중소기업청	2	2	0
산업통상자원부	9	8	1	특허청	2	2	0
보건복지부	167	84	83	해양경찰청	9	7	2
환경부	165	73	92	공정거래위원회	7	5	2
고용노동부	45	33	12	금융위원회	4	2	2
여성가족부	94	60	34	방송통신위원회	9	5	4
국토교통부	10	5	5	국가인권위원회	1	1	0

주: 2013.12월 기준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4 안전행정통계연보, 2014

〈표 4-6〉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2013

(단위: 개)

	등록 수				등록 수		
	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계	10,166	1,575	8,591	경기	1,740	194	1,546
서울	1,590	333	1,257	강원	264	32	232
부산	667	121	546	충북	377	58	319
대구	369	27	342	충남	355	49	306
인천	586	120	466	전북	860	36	824
광주	432	102	330	전남	512	67	445
대전	461	65	396	경북	670	108	562
울산	314	61	253	경남	645	136	509
세종	16	1	15	제주	308	65	243

주: 2013.12월 기준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4 안전행정통계연보, 2014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비영리조직 가운데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익법인의 수는 2013년 기준 29,849개로 이 중 종교법인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은 학술·장학법인으로 11.8%, 사회복지 10.5%, 교육사업 5.7%의 순으로 많았다.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이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284억 4천2백만원이고,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액수는 2012년에 비하면 크게 적어진 액수이다. 즉, 2012년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958억 1천4백만원이고,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은 10억 8백만원으로 총액수는 968억 2천2백만원으로 2013년의 3.4배에 이르러 매년 증감의 기복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기준 총신고법인은 517,805개이며, 비영리법인은 이 가운데 4.1%인 21,372개이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수는 2007년 16,669개에 비하면 28.2%가 증가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한 공익법인수는 29,849개로 비영리법인 21,372개보다 많다. 이는 공익법인은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을 집계한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해당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만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 신고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수 파악에서 누락되어 실제 존재하는 법인보다 적은 수가 집계된다.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는 2013년에 1,413개로 2012년의 1,319개에 비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수는 94개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단체수가 225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보건복지부 167개, 외교부와 환경부가 각각 165개의 순이었다.

2013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수는 총 10,166개로 2012년의 9,570개에 비하여 596개가 증가하였다.





제5장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제1절 나눔통계 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5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

제1절 나눔통계 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부

가. 기부관련 통계 생산 실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부와 관련한 통계는 총 11개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사회조사”,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이다. 그 외 조사통계로는 “지역사회조사”(광역시도), “복지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빙인덱스”(아름다운재단),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한국자원봉사문화), “개발복지 NPO 총람”(한국NPO공동회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보고통계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한국NPO공동회의)와 “식품기부실적”(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기부 관련 통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생산 범위 및 기준의 차이와 국제비교에 한계가 있고, 나눔 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생산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어떠한 통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러한 차이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시된 기부 관련 통계는 제한된 정보(보고통계)만 제공하거나 조사규모의 차이와 조사결과를 야기하는 요인들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절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기부관련 통계의 생산 실태를 살펴보면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필요성과 함께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1〉 기부 관련 통계 요약

통계명	작성현황			
	작성기관	유형	승인	내용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보고	승인	(개인) 기부금특별공제액 (법인) 기부금신고액
사회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기부율, 기부횟수/액수, 정기기부, 기부/미참여 이유, 인지경로, 기부희망분야, 향후 기부 의사 등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종교,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지역사회조사	광역시도	조사	승인	(개인) 기부액, 횟수 등
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승인	(개인) 기부 활동여부, 기부액 등
Giving Korea	아름다운 재단	조사	미승인	(개인) 기부참여여부, 기부처, 기부액, 동기, 기부 계획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및 조직, 사회공헌활동 실적(활동여부, 기부금), 사회공헌활동 성과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한국자원봉사문화	조사	미승인	(개인) 기부율, 기부자 특성, 기부액, 정기성 및 횟수, 기부참여경로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미승인	(기업) 기부율, 기부액, 기부분야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	한국NPO공동회의	보고	미승인	(매개) 241개 NPO 조직 현황, 사업영역, 예결산, 모금액, 후원자수, 직원/자원봉사자 현황
개발복지NPO	한국NPO공동회의	조사	미승인	(매개) NPO 모금액, 모금출처, 지출처(국내, 해외)
식품기부 실적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보고	미승인	(개인) 기부자, 기부식품, 이용자 현황 등

주: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함.

국세청 기부금 신고 현황은 세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부금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세법상 신고한 기부금만 포함하고 있어 면세자 및 미신고자의 기부금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종교적 헌금이나 노조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눔에 대한 정의나 분석틀과 괴리가 생긴다. 또한 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과세기준밖에 없어 나눔 정책의 기초통계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³⁾는 상당히 오랜 시간 구축된 시계열 자료이며, 전국 13세 이상 남녀 17,664가구(2013년 기준)를 대상으로 자선적 기부와 참여여부 및 시간 등을 조사

3)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기부 관련 문항의 수는 매우 적었음. 그러나 2011년부터 조사항목을 확대하였고, 2013년 사회조사에는 기부와 관련한 9개의 항목이 조사됨. 27. 기부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 28. 기부내용(후원경로, 종류, 횟수 및 금액), 29. 기부의 정기성, 30. 기부 이유, 31. 기부 희망 분야, 32. 기부 대상 인지 경로, 33. 향후 기부 의사, 34. 유산 기부 의사, 35. 기부 문화 확산입(통계청, 2013b).

했다는 장점이 있다(통계청, 2013a). 그러나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홈페이지, 2015/4/8). 따라서 나눔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위해 종교적 기부를 구분하거나 현물 기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기부액의 실태를 추정하기 위한 조사 문항이나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활용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통계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근거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4년 기준 18종)⁴⁾.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사회조사는 “대구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와 의식변화 등을 파악하여 지역정책 평가 및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1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문항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문항과 유사하나 기부와 관련한 문항은 1개 문항에 불과하다(통계청 사회조사 27번 문항과 동일).

다음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소비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 자료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 및 국민주택 공급대상의 기준설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2015/4/8).” 이 조사는 1963년부터 분기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며 전국 8,7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나눔과 관련한 항목은 지출 중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로 이전’ 항목이다. 이 때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은 다시 단체회비,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통계청, 2013a). 이러한 조사 항목은 기부금을 측정하는 데는 편리하나, 기부 활동에 대한 행태나 배경,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함의 등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의 목적이 국민소비수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눔과 관련한 문항의 세분화 혹은 확대 역시 불가능하다.

4)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조사들은 대구광역시의 사회조사와 유사하며 통계청 사회조사를 따르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조사를 통칭하여 ‘지역사회조사’라고 명명함.

이에 반해서 민간부문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나눔에 대하여 꾸준한 실태조사를 수행함에도 적은 표본 수와 통계적 검증 부족 등으로 국가승인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지수를 격년으로 조사하여 ‘기빙인덱스(Giving Index)’를 발표하며,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외 트렌드와 사례를 통한 한국 기부문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2001년에 시작해 2012년까지 총 12회 조사, 발표 및 영문판 기빙코리아(Giving Korea)를 발간하고 있다(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2015/4/8).” 기빙코리아는 ‘기빙인덱스’와 ‘문화예술 기빙인덱스’, ‘사회공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빙인덱스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2014년 기준)을 대상으로 다단계 지역표본추출과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을 통해 응답자를 선정하였으며(강철희, 2014), 일반적인 기부와 종교적 기부를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너무 적은 표본과 회상에 의한 조사의 특성상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오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을 비교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기부 참여율(48.5% vs 34.9%), 국민 1인당 평균기부금액(15만원 vs 7만원) 등으로 전반적인 모든 수치에서 기빙 인덱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강철희, 2014). 이러한 차이는 조사의 속성과 조사규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조사가 동질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표통계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와 유사하게 행정자치부의 수탁과제로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도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방법을 이용해 표본조사⁵⁾를 시행하였다(주성수 외, 2014). 그 결과 자선적 기부는 기빙인덱스(48.5%)와 사회조사(34.9%) 보다 낮은 2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3년 전인 2011년에 비해 20%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최근 기부문화의 확산 움직임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차이가 통계를 이용하는 정책결정자 혹은 학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에게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조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금액과 기부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5) 행정자치부가 발주한 과제의 명칭은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이나,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수행한 조사의 정식 명칭은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임.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측면에서는 조사명용, 발간된 보고서를 언급할 때는 보고서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표 5-2〉 기부관련 통계의 결과 차이

	아름다운 재단 기빙인덱스	한국자원봉사문화 실태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조사시점	2014년	2014년	2013년	2013년
조사대상	1,007가구	1,500가구	17,664가구	8,700가구
기부 참여율	48.5%	28.7% ¹⁾	34.9%	-
기부금액(평균)	15만원	20.3만원 ¹⁾	7만원	4.6만원

주: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실태조사는 평균 기부 금액 조사시 '종교기부'와 '자선기부'로 구분하고 있음. 본 표에서는 자선적 기부의 수치만 제시함. 2014년 종교기부금은 72.1만원, 종교 기부를 포함할 경우 참여율은 40.8%임.

자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4), 기빙코리아 2014-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자료집; 행정자치부-한국자원봉사문화(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통계청, 사회조사 20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3.

기업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중 법인에 대한 기부금 신고액 자료가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 법인세의 접대비 및 기부금 신고는 법정-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 역시 법인세 신고에 따른 것이며 법인규모, 상장여부, 업태, 수입금액, 자산규모, 소득금액 등의 독립변수만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활용하여 나눔의 실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행해지는 기업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편차가 매우 크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2013)에 포함된 '사회공헌'은 매출액 2,000위 이내 4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유형별(상장/비상장) 유의할당 추출을 실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공헌실태조사(2013)⁶⁾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주요 회원사 등 600개 기업과 80개 기업 재단에 대해 조사하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2012년 기준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아름다운 재단 69억원, 전경련 총 6.1조원(기업 3.2조원+기업재단 2.9조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NPO 공동회의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 개발복지NPO)은 회원 241개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2011년 한국 개발복지NPO 총람 기준) 실제 모집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표본이고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이 아니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2013년 기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 회원사 234개사의 사회공헌 규모는 2조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하였으며,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는 3조1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전경련, 2014).

나. 기부관련 통계 분석틀 문제와 개선방안 검토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생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아름다운 재단에서 생산하는 기부인덱스는 ‘개인기부지수’와 ‘기업기부지수’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기부지수는 영국의 세계 기부재단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기부지수에 한국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승인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과 조사 대상 표본 수의 한계, 사회조사 결과와의 괴리 등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기부지수라는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이러한 조사들이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나눔에 대한 개념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는 영국 민간 비영리기관인 자선재단(Charities Aids Foundation, CAF)의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와 OECD의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14)”에 포함된 “Helping Others”에 불과하다.

세계기부지수는 꺾림에서 전 세계 약 140여개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 중 1,000명을 표본으로 지난 한 달간 기부, 자원봉사활동,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경험 등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기부지수를 발표하는 것이다(Jane Arnott, 2014a). OECD Helping Others 역시 꺾림 자료를 바탕으로 현금 기부와 낯선 사람에 대한 도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4). 즉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제비교가능성을 언급할 때 이는 CAF의 세계기부지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현재 기부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므로 국제·국내 기부 관련 통계의 개념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국내 기부와 관련된 학문적 정책적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근거하여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나눔통계 개선방안』(박주언 외 2012a, pp.10~11)은 기부를 “현금 및 현물과 같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라 자발성과 무(無)대가성, 비강제성, 공익성을 띄고, 공식·비공식 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부 관련 통계를 개인의 기부와 기

업의 기부로 구분하면, 개인의 기부는 국세통계연보와 설문조사자료(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개인기부 실태조사,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등)를 활용하고 있고, 법인의 기부는 국세통계연보와 설문조사자료(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기업의 사회공헌백서)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는 매개집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매개집단에 대한 조사들이 추가적으로 실행되고 있다(Jane Arnett, 2014b). 특히 매개집단의 경우 중복 계상의 우려가 있어 매개집단을 이용한 기부의 이중계산을 밝혀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조사들에서 기부와 관련 분석틀을 논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헌금(십일조, 보시 등)’의 포함여부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종교적 헌금을 기부금으로 포함하는 반면, 통계청 ‘사회조사’와 아름다운 재단의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는 제외하고 있다. 다만 통계청 사회조사와 아름다운 재단(2014)은 종교적 헌금은 제외하나 종교단체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기부금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재단은 ‘자선적 기부’와 ‘종교적 기부’를 구분하여 조사하되 자선적 기부액과 포괄적 기부액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2조(정의)는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고,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받은 모든 금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종교적 헌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기부금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헌금에 대한 나눔 실태 포함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헌금에 대한 포함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헌금은 종교단체의 운영(인건비, 건축비, 운영비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는 과거 정부의 부족한 여력을 대신하여 자선활동을 하는 등 매개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측정하고 추계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헌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데, 종교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과 종교 기관에서 행하는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부의 분석틀과 관련한 두 번째 이슈는 조직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적으로 행한 ‘비공식적 기부’에 대한 것이다. 현행 조사들은 비공식적 기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아름다운재단의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는 비공식적인 기부를 포함하는 반면, 국세청의 국제통계연보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박주언 외, 2011).

비공식적인 기부를 포함하는 것과 함께 비공식적인 기부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비공식적인 기부의 범위를 거리의 모르는 노숙자나 걸인에 대한 개인적인 행위로 제한(World Giving Index)하기도 하지만, 비동거인 친척, 친구, 이웃까지 포함(미국 National Household Survey 등)하기도 한다(박주언 외, 2011). 국제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기부에 대한 조사는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항목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안면이 있는 지인을 위한 기부와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자를 위한 기부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계기부지수에는 비공식적인 기부 중 안면이 없는 길가의 부랑인이나 노숙자를 위한 직접적인 기부까지 포함하고 국내 통계의 생산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다.

〈표 5-3〉 기부관련 통계 생산 틀의 비교

	종교적 헌금		비공식적 기부	
	조사여부	통계생산	조사여부	통계생산
국제통계연보	○	○	×	×
가계동향조사	○	○	×	×
사회조사	● ¹⁾	×	○	○
기빙인덱스	● ¹⁾	×	○	○
한국자원봉사문화	○	○	○	○

주1) 사회조사와 기빙인덱스는 종교적 헌금은 포함하지 않으나 종교집단의 자선활동은 조사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2014), 국제통계연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3; 통계청, 사회조사 2013;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원(2014), 기빙코리아 2014-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자료집; 행정자치부-한국자원봉사문화(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부의 범위와 관련한 마지막 이슈는 매개기관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눔과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는 기부를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실제 기부행위는 직접적인 기부가 아니라 공식적인 매개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매개기관(은)은 자선조직, 종교집단, 복지시설, 문화/예술단체, 환경/동물단체 등으로 다양한

7) 매개조직은 나눔 주체(참여자, 수혜자, 매개하는 조직)에서 사용된 용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참여자로부터 체계적으로 자원을 조성하여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조직의 대다수는 ‘비영리조직

데, 대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감독 및 규제를 받고 있다(박주언 외 2011, p.10).

문제는 이들 매개기관에 대한 모집단 설정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때 소관 주무관청은 중앙정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제외하고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조직 역시 개별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설립 및 관리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통해 ‘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매년 지정하고 있다. 지정받은 단체와 해당 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법인세』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와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근거하여 조세 특례지원을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라 공익법인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며 매년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 등의 결산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천만원 이상 모금한 경우 등록청에 ‘모집 및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나 등록청은 행정자치부와 시도이다(박주언 외, 2012; 2013b).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비영리조직에 대한 소관부처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비영리조직이 나눔 활동에서 매개하는 금액이나 역할, 나눔 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다. 기부관련 통계 생산 문제와 개선방안 검토

나눔 통계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 세계기부지수에 한국의 통계로 제시되는 한국기부지수는 민간부문에서 조사한 데이터로 적은 수의 표본과 국가대표통계라고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나눔의 분석틀에 근거한 국가대표 통계가 필요한 현실이다.

통계생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이슈는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관련 통계의 구체화이다. 국세통계연보는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액’을 매년 발표함으로써

(non-profit organization, NPO) 임(박주언 외 2014, p.5).

지난 일 년의 국내 기부총액과 연도별 규모변화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소득공제액'은 기부자의 세금 징수 기준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기부자가 스스로 신고한 '세법에 규정된 단체'에 대한 총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자와 법인의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부금액이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세법에 규정된 단체로 한정되므로 나눔의 정의에 적합하나 세법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경우와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비공식적인 기부금도 집계에는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종교적 헌금과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등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액을 통해 과세가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과다 발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종교적 헌금과 협회 회비 등은 정확한 의미에서 나눔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기부를 목적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나 협회에서 특정인 및 특정기관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는 자선적 성격의 기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설문조사의 기부 참여율을 통해 추정한 총 기부자 수와 1인당 평균 기부액을 곱하여 총 기부금액을 산출하고 있다(박주언 외, 2011). 우리나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 소득공제'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세법상 누락되는 기부금 등에 대한 집계를 위해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세청의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후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개인 기부금특별공제액 자료 공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특별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서식 45)와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2)을 제출해야 한다(박주언 외, 2011). 기부금명세서는 개인의 직장,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역 등의 인적 사항과 기부 명세로 구성된다. 기부 명세는 기부 유형과 코드, 기부내용, 기부처, 기부자, 기부내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를 통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1 참조).

그러나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통계 홈페이지는 개인기부금(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과 법인기부금에 대한 연도별 기부금액(계)과 종합소득규모별, 10분위분포, 성별, 연령별 기부금만 제시되고 있다(그림 5-2 참조). 2012년까지는 개인기부금에 정치후원금이 포함되어 공시되었으나 세법 개정과 함께 기부금과 기부정치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통계연보에 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자선적 기부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단체 기부액은 분리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기부금명세서

기 부 금 명 세 서

※ 위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③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⑬ 기부 명세		
⑦ 유형	⑧ 코드		⑩ 상호(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금액
정치자금	20								

④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코드		10	20	40	41	42	50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 45

[그림 5-2]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현황

구분 Classification		합계 Total		기부금특별공제 Deduction for Donation [C]		필요경비 Necessary Expenses [D]	
		인원 Number of Taxpayers	금액 Amount	인원 Number of Taxpayers	금액 Amount	인원 Number of Taxpayers	금액 Amount
		(1=2+3)		(2)		(3)	
2009년	2009 Total	594,931	1,512,795	566,887	1,357,250	28,044	155,545
2010년	2010 Total	643,969	1,673,999	617,091	1,516,864	26,878	157,135
2011년	2011 Total	689,252	1,901,707	662,523	1,745,299	26,729	156,408

자료: 국세통계 홈페이지(<http://stats.nts.go.kr/national>)>소득세>세목별 검색(기부금 신고 현황)

두 번째 이슈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과 관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은 다시 '단체회비, 사회단체기부금 및 기타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단체 기부금과 기타기부금이 자선적 기부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만 공식적으로 국가 통계포털을 통해 공표되고 있으며,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 각각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요청에 의해서만 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교기부금'과 '단체회비' 항목을 모두 제외한 자선적 기부액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서 항목의 세분화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계열의 안정화 및 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소요되는 시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별 분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표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슈는 앞서 언급한 매개기관과 관련하여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UN)는 NPO를 12개의 대분류(문화 및 레크레이션,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개발과 주거, 법-옹호 및 정치, 자선매개 및 봉사증진, 국제, 종교, 경영 및 전문직 조직-노조, 기타)로 구분한다. 그러나 국내 NPO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다양하며 합의되지 않은 현실이다⁸⁾. 통계청은 나눔 실태의 생산과정 중 하나로 한국 NPO에 대해 연구하면서 통계작성의 분석틀을 법률적 근거로 삼았다(박주연 외 2012, pp. 8-9). 이러한 기준은 통계 생산의 측면에서는 용이하나 장기적으로 매개기관별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개기관은 대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감독 및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매개기관은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개기관이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을 활용한 나눔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지원금과 개인 및 기업의 후원금이 집합되는 매개기관의 윤리의식이나 투명성이 향후 모금의식 및 모금 행위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8) 박태규(2006)는 국제 NPO 기준에 한국의 매개기관을 적용하면서 12개 대분류 중 8가지 분야(문화 및 예술, 교육연구, 의료보건, 사회서비스, 시민단체, 종교, 산업 및 전문가단체, 연고단체)로 구분하였고, 채은경(2004)은 공익단체(의료 및 보건, 교육 및 연구, 복지서비스, 예술 및 문화, 환경, 기금매개, 시민권리옹호, 종교)와 집단이익추구단체(직능단체, 친목단체)로 구분하였음(박주연 외 2012, p.10).

지금까지 매개기관은 모집단 설정조차 어려운 영역인 회색지대로 정부에서는 이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매개기관의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개기관이 다양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있어 매개기관 모집단 자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정보공시제도는 법에 근거한다. 국내 비영리조직(NPO)의 근거법 중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비영리조직은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액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부금품 모집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만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정보를 공시할 뿐 대부분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하거나 등록청에 제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에 정보공시를 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전체 비영리조직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⁹⁾.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부터 국세청 정보공시 대상인 공익법인의 기준이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등록청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 자료의 DB구축, 학교 및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조건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상당 기관이 홈페이지가 없거나 게시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¹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 및 복지 분야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눔 실태에서 기부의 범위는 보건 및 복지 분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모집단에 대한 매개기관의 기부금 모집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개기관의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자료의 공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예·결산 자료를 전자자료로 전환하여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석을 위해 매개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에 대한 통계 생산의 문제는 매개기관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 정리¹¹⁾와 이에 대한 등록-심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예·결산 자료 등에

9) 박주연 외(2012, p.7)는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의 관계에 대한 검토에서 법률을 근거로 비영리조직(NPO)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 순으로 정리함. 그러나 각각의 모수는 제시하지 않음.

10) 고경환 외(2013)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승인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민간부문에 대한 기부금 지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모집단의 12%는 홈페이지 등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11) 고경환 외(2013)에서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및 세법상 지정 기부금단체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기

관한 DB를 구축할 소관부처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매개기관에 대한 정보공시의 확대와 기부금 모집과 지출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라. 기부관련 통계 생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마지막으로 나눔통계 생산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이슈는 매개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제고이다(박주연 외, 2013b). 기부는 매개기관을 경유하는 공식적인 활동과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Jane Arnott, 2014b). 그러나 현재 국내의 기부통계는 대부분 참여자에 의해 작성되고 있고, 과거에 대한 회상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통계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정보공개제도가 선행된다면 매개기관을 통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영리조직은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조달받은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소득세 면제와 공제가능 기부금 수취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대한 도덕적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의 요구가 있다.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설립·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법』과 『특별법』(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 주무부처에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활동과 관련된 소관 주무부처의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와 사후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사업의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추가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개 의무와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예·결산자료의 제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또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역시

부금품모집등록기관을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시도,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은 상당수 중복되고 일부는 회원들의 회비를 모집하기 위한 단체였음. 이에 따라 조사대상 모집단은 751개소임.

모집 및 사용계획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서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소관부처의 상이성으로 인해 총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고, 정보 공개의 대한 요건 역시 근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상당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한 기관 및 단체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명세서를 공시해야 하나 홈페이지조차 없는 단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환 외, 2013).

또한 지금까지는 각 소관부처를 통해 관리된 비영리단체 및 기관의 예·결산자료 역시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2014년 기획재정부령 제41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의무 공시 공익법인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시양식 항목이 추가 및 개선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공익법인의 회계자료 상당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는 3,482개 공익법인 데이터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한국가이드스타에서 기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가로 수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가이드스타, 2015b). 2015년부터 의무 공시 공익법인의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한국가이드스타, 2015a). 다만, 공익법인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대한 회계자료 공시를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기부금 매개기관으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에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모집단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금의 수집과 운영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재검토이다.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기부금에 대해 3,000만원까지는 15%를,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기부금 세제 혜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소득자가 6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은 144만원(2013)에서 90만원(2014)으로 감소하였고, 과세표준 1억원인 소득자가 3,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은 1,050만원(2013)에서 450만원(2014)으로 감소하였다. 또

한 과세표준 10억 원인 소득자가 1억 원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은 3,800만원(2013)에서 2,200만원(2014)으로 감소하였다¹²⁾.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46만 명)의 기부금이 9,721억 원 줄어들고, 3억 원 이하(9만 명)과 3억 원 초과(7000명)에선 기부금이 각각 8,504억 원, 3,21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¹³⁾.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정부의 한 해 세입은 3,057억 원 증가하지만 기부 총액은 2조 37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¹⁴⁾.

미국에서는 개인기부자가 교회 및 교회협회, 대학 및 연구기관, 병원 및 의료 연구단체 등 공공자선단체나 자선활동이 주 목적인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여 기부한 금액의 절반을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프랑스는 개인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액의 66%를 세액공제(소득금액의 20% 한도)를 하고,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음식 및 주택제공을 하는 단체에게 기부하는 개인에게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더 해주고 있다¹⁵⁾.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고액기부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소액 기부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배 가까이 증가하던 고액 기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자 전년 대비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직장인과 일반인들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매월 1만원~5만원 정도를 떼어내 기부하는 '소액기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관계로 2013년 기준 기부금은 다소 증가했다¹⁶⁾.

그러나 기부가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나눔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소득공제로의 회귀나 세액공제의 확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와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조세감면조치의 폐지에 따라 정부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적절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12) 윤종성. (2015.1.29.) 발목잡힌 기부- 1억 기부 환급액, 388만원 → 22만원으로. 이데일리, 인터넷판

13) 윤종성. (2015.1.29.) 발목잡힌 기부- '영터리 세제' 탓에 '고액기부' 급브레이크, 이데일리, 인터넷판

14) 윤종성. (2015.3.10.) 고액기부 감소에 '화들짝'- 기부금 稅 혜택 손본다. 이데일리, 인터넷판

15) 윤종성. (2015.1.29.) 발목잡힌 기부- 美 50%, 佛 66% 세제 혜택, 이데일리, 인터넷판

16) 윤종성. (2015.1.29.) 발목잡힌 기부- 월 1만 ~ 5만원 '작은 기부'는 늘어. , 이데일리, 인터넷판

2. 자원봉사활동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사는 총 9개 정도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사회조사”이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특히 조사를 위한 행동분류표의 6. 참여 및 봉사활동에 포함된다. 이는 다시 세분화되는데,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는 소득이 있는 활동 돕기, 가사 활동 돕기, 기타 일 돕기로 구분되며, 62. 참여활동은 의무적 참여활동과 자발적 참여활동으로 구분된다. 또한 63. 자원봉사활동은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자녀교육 관련, 아동노인장애인 등 관련, 재해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기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행동분류를 통해 활동유형과 대상 유형, 분야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ILO(2011) 역시 노동력 조사와 각국의 가구조사 등의 추가 자료를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추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측정에 관한 매뉴얼의 제작으로 국제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2011년부터 조사항목을 확대하여 2013년 조사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즉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시간, 주기성, 인지 경로,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여부, 향후 의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조사는 근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다른 고유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을 자원봉사활동 통계로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한계가 있다.

그 외 조사통계로는 “지역사회조사”(광역시도), “복지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빙인덱스”(아름다운재단),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한국자원봉사문화) 등이 있다. 이 중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한국자원봉사문화)와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코리아’는 대표적인 민간 조사이다. 이 조사들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항목으로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활동 시간, 자원봉사활동 분류(직업), 자원봉사활동 내용분류, 자원봉사기관 관련성, 자원봉사기관 영역(산업), 자원봉사기관(활동처) 분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통계인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보건복지부)와 “자원봉사센터현황”(행정자치부) 자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행정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표 5-4〉 자원봉사활동 관련 통계 요약

통계명	작성현황			
	작성기관	자료수집	승인	내용
자원봉사센터현황	행정자치부	보고	미승인	(개인) (성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고	승인	(개인) 자원봉사자 수, 활동횟수/시간/분야 등
사회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참여율, 참여횟수 및 평균시간, 정기봉사, 인지경로, 향후 활동의사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활동 분야별 평균 참여시간
지역사회조사	광역시도	조사	승인	(개인) 자원봉사자 수, 횟수 등
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승인	(개인) 자원봉사 활동여부, 자원봉사활동 횟수
Giving Korea	아름다운재단	조사	미승인	(개인) 활동처별 참여율 및 참여시간, 정기참여율, 인지경로, 미참여이유 등 (기업) 참여율, 활동영역, 평균시간 등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한국자원봉사문화	조사	미승인	(개인) 참여율, 활동영역, 횟수, 평균시간, 주요내용, 비공식도움 등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	조사	미승인	(기업) 임직원 활동건수, 시간 및 참여율 등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생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들이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제2장 나눔에 대한 개념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는 “ILO 자원봉사활동조사”와 국가별 자원봉사활동 관련 통계에 불과하다. 즉 ILO 자원봉사활동조사는 국제기구에 의해 생산되는 통계로 가장 신뢰할만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제비교가능성은 ILO의 조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념 측정의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ILO의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2011)에 제시된 자원봉사활동의 7가지 특성(근로, 무보수, 비강제성, 조직기반+개인, 직계가족 불포함, 모든 형태의 기관 대상, 대상자의 제한 불필요 등)에 따르면 종교 내에서 수행되는 자원봉사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은 포함하고, 학점 및 졸업 등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통계 중 ‘종교단체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포함하는 반면,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종교단체 내의 활동(예, 주일교사, 식당 자원봉사 등)은 자원봉사활동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만, 종교단체의 주관으로 외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예, 지역사회 독거노인 대상 김장 담그기 행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

한편 초·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은 일정 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졸업 요건으로 일정 시간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이는 ILO(2011)에서 규정한 비강제성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학령기에 의무적으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눔 교육의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강제적 봉사를 걸러낼 질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개인이 수행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측정하고 후속 문항으로 “이 중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라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지난 1년간 본인이 수행한 자원봉사활동을 측정 한 뒤 후속 문항에서 “이 중 학교 및 교육기관의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한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등의 추가 질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통계생산 시에는 강제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제외할 수 있다.

또한 ILO(2011)는 조직이나 단체에 기반을 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한 “비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포함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비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통계청 ‘사회조사’와 아름다운재단의 ‘Giving Korea’는 포함하는 반면,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는 제외하고 있다. 단, 한국자원봉사문화는 자원봉사참여율로 집계하지는 않

지만 조사표의 별도 항목을 통해 '비공식적 도움' 여부는 조사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구원이나 직계 가족 외의 사람을 공식적인 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돕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단체를 경유한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조사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적으로 비 가구원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을 무급으로 도와준 경험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와 친척을 도와준 경험 여부 및 도움 등을 같이 조사하고 통계를 생산할 때 구분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한편, 국제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의 측정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 ILO(2011)는 자원봉사활동을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경제의 생산경제 내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을 따르고 있다. ILO(2011)는 직업분류 ISCO-08코드를 따르며, 산업분류 ISIC Rev.4 코드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직업분류와 산업분류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직업분류와 산업분류를 따를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 생산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는 총 6종으로 승인통계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 광역시도의 '지역사회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에 불과하다.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닌 관계로 조사 문항의 수가 제한적이고, 자원봉사활동 분야와 유형,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민간기관의 조사는 2000년 전후부터 주기적으로 다수 항목을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표본의 설계와 원자료에 대한 검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승인통계이다.

보고통계는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화관광부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등 각 부처에서 수집되던 정보를 행정자치부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으로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통계의 경우 단순하게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통계만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ILO 역시 노동력조사에 포함된 항목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했으나, 최근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측정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조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국의 Community Life Survey, 캐나다의 Canada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독립된 전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 와 호주 General Social Survey는 부가조사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ILO(2011)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조사하여 노동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ILO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대상, 방법 및 항목 등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조사는 조사결과의 시계열 유지가 중요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항목은 다양한 조사 부문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의 구성이나 길이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ILO(2011)의 매뉴얼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활동 관련 심층적인 설문조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상세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사로 자원봉사 활동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조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생산할 수 있는 조사들을 추린 후 그 외 부가적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독립된 전문 실태조사를 과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초·중·고 및 대학생과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 사회조사(2013)에서 15~19세 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13.7%), 30대(11.2%), 40대(17.3%), 50대(14.5%) 등 중장년층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자 현황(2012)에서도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60.4%로 남성(39.6%)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60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기업 및 기업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

는 시기와 원하는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매칭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도 필요하다.

제2절 나눔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국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로 보충하거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복지의 주체로서 정부와 시장,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영향과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한 취약한 개인의 증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인해 정부와 시장, 개인 외에 제3섹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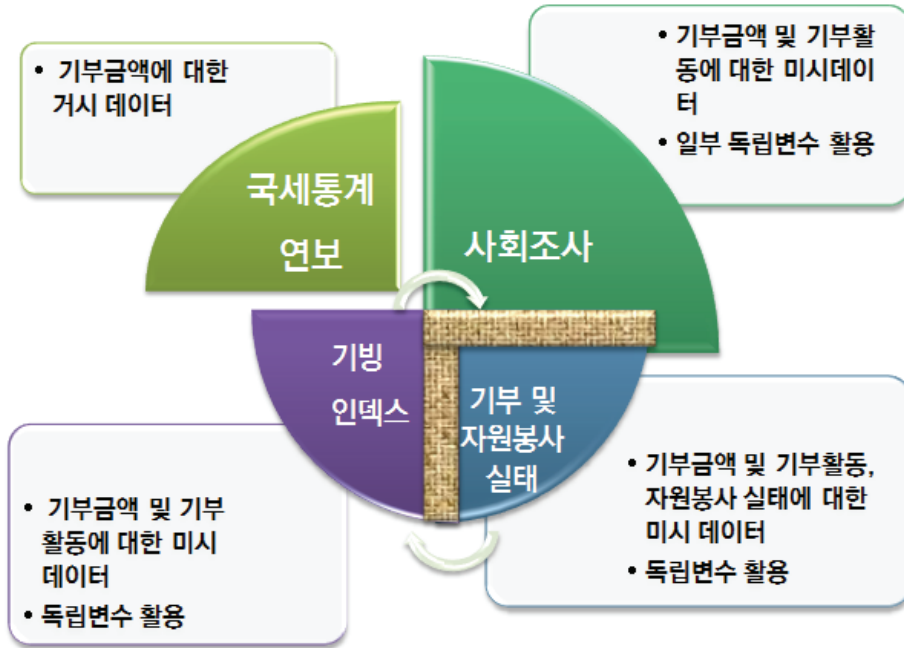
제3섹터의 증대는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통해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활동의 공식화를 통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비경제적활동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나눔이 확대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모금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자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매칭시켜주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나눔 확산에 대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을 통해 보충하려는 부정적 의도로 확대해석하는 경향도 있으나, 그 핵심에는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며 국가의 막대한 권한을 시민사회가 균형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나눔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는 없다. 지금까지 나눔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은 나눔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에 기반을 두고 분석틀을 구성한 후 이에 따른 통계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조사에서 나눔과 관련한 내용 일부를 포함하거나(예, 사회조사), 나눔 활동의 일부분에 대한 현황 및 조사(예, 자원봉사현황)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과년도 나눔실태 역시 서로 다른 통계들을 수집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제시하는 모자이크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절적인 조사자료의 생산은 나눔에 대한 정확한 추정에 한계를 야기할 뿐만 아

나라 서로 다른 통계 수치가 우후죽순 논의되면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통계의 생산에 근거한 나눔 문화 확산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림 5-3] 현행 나눔실태 분석 틀



주: 나눔실태를 측정하는 주요한 조사인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자원봉사문화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 조사',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인덱스' 등은 조사내용에 있어 일정부분이 중복(거친 질감)이 발생하고 있음.

2012년 보건복지부는 “나눔에 관하여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기본원칙 및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나눔 실천자의 권리 및 예우, 나눔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나눔주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여 생활 속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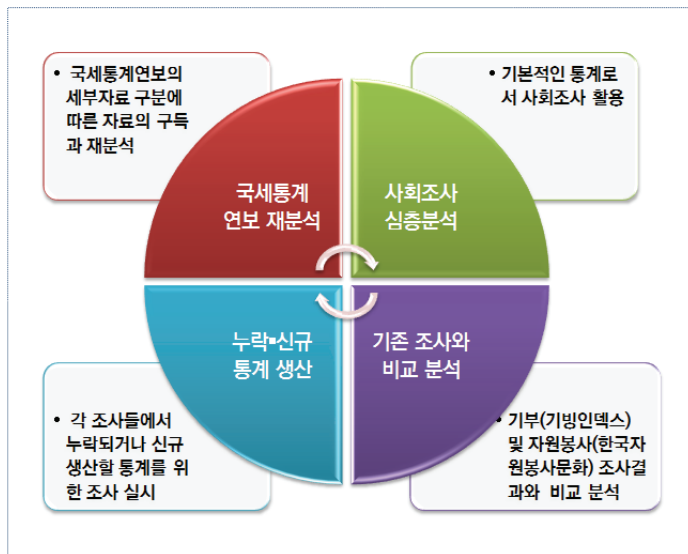
동 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나 기부연금제도 시행(2015), 나눔 금융 상품 운용(201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2015) 등 개별적인 정책 대안들은 실현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통계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나눔 활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통계의 생산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나눔 통계의 생산,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 나눔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나눔 통계의 생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눔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는 현재의 모자이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통계를 활용하되 단순 취합방식을 벗어나 나눔실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조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다양한 조사 자료들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적이다.

[그림 5-4] 기존 조사를 활용한 나눔 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주: 점선 네모는 서로 다른 조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나눔통계 분석틀의 범위를 뜻함.

현재 나눔과 관련한 조사는 부문별로(공공부문, 민간부문), 기관별로(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자원봉사문화, 아름다운 재단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나눔 실태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 중 국가

가 공식적으로 ‘나눔’이라고 인정하는 나눔 통계에 포함되는 기준과 선정은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조사자료들의 결과의 차이에 따라 혼란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의 나눔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과 원자료에 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부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각종 조사들은 조사의 범위와 조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표본의 설계 및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기부 참가율이나 기부금액과 같은 동일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표본의 설계와 조사방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본의 설계와 조사방법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각종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된 후에는 나눔의 개념틀에 근거하여 통계의 중복과 누락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수행된 조사들을 활용할 경우 조사대상이나 조사항목, 조사범위에 대한 중복 혹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 자료의 서면 검토로 제한되어 있어 이는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절에서는 개별 조사들을 활용하여 나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여 기술한다.

기존의 조사들은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나 공신력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들을 활용한다고 해도 물질나눔(기부)과 인적나눔(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후 이를 토대로 사각지대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나눔통계의 개념적 분석틀이 필요한데 앞 절에서 살펴본 쟁점과 개선방안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종교적 헌금과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를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비공식적 기부에 대한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공식적 기부는 가급적 포괄적인 범위를 조사하고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기부의 경우,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특별공제액과 법인의 기부금손금삽입액은 기부금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의 누락이 발생하고 수집되는 정보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누락되는 기부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참여율, 횟수 및 액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통계로는 표본에 대한 과학적인 설계와 적절한 표본 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계청 사회조사(개인)와 아름다운재단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기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개인이 신고하는 기부금 신고양식에 포함된 기부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공표하거나 최소한 기부를 측정하는 연구진에게는 분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나눔 문화 확산 등 정책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부 인지경로, 기부 희망분야, 향후 기부 의사, 기부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을 위한 기부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매개기관에 대한 실태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제도의 확대를 통해 향후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익법인이 아닌 기부금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선행하여 전체 매개기관에 대한 모집단 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매개기관에 대한 모집단 관리를 통해 공익법인 외의 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공익법인 중 공시 대상이 아닌 집단을 추가로 선정하여 조사와 공시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비교적 실태에 대한 조사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비교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간조사에서 이용하는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활동분류 등을 ILO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국제 기준 분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특히 비강제성의 기준을 벗어나는 학생에 대한 의무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후속적인 문항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정보고를 기준으로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의 총량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한 기존 보고 및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표본과 조사

시점 등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나눔 통계를 생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나눔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나눔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나눔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통합된 조사가 단일 기관에서 수행될 필요는 없다.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거나, 매개기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조사 기관이 가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되 조사의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념적 틀에서 보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교적 헌금, 비공식적인 나눔, 비자발적인 행위 등을 조사에 포함하되 이를 통계에서 배제하거나 포함하는데 용이하도록 조사 문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설문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을 두되 거주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는 등 과학적인 표본 설계가 필요하다.

독립된 전문 실태조사의 장점은 독립변수로 활용할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비교에서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기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단편적이고 단답형인 보기 문항의 선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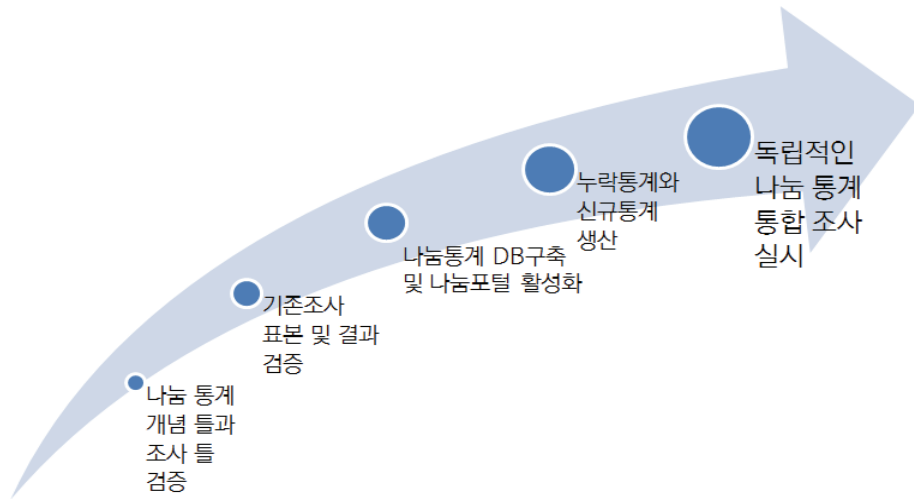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영국과 캐나다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모자이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조사항목들이 오랜 시간 있었으나 근래에 독립적인 실태조사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가 고찰해야 할 함의는 조사문항과 조사방법 등 인터넷 자료 구득을 통해 알 수 있는 자료 외에 오랜시간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통해 제공되어오던 자료들을 어떻게 통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조사의 합리적 운용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독립된 전문조사가 단일한 조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조사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과 영역별 조사를 수행해온 기관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비용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실태를 조사한 모든 자료가 한 곳에 집적되어 조사 수행에 따른 다양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사각지대 등에 대

한 추정을 통해 단일한 나눔통계로 제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사들이 가지는 표본 수의 한계, 표본의 이질성 등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구축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나눔통계 생산을 위한 연차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차별 계획은 현재 조사되고 있는 각종 조사들을 활용하는 실용적인 방안에서 이상적인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그림 5-5] 나눔 통계 효율적 생산을 위한 단계별 방안



1차년도는 나눔통계에 대한 개념들과 측정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계청을 중심으로 나눔실태를 파악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던 바 나눔실태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원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았거나, 원자료 비공개로 인해 기존 자료를 재분석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한 것이다. 그 외에도 조사범위와 조사활동, 조사 내용 등의 항목에 있어서 일부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다 신뢰성 있는 나눔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일차년도 연구에서는 나눔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나눔 통계에서 조사할 측정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론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개념들이더라도 각 조사기관과 조사항목 등의 이유로 측정

이 어렵거나 통계 생산이 불가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계 생산의 실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입하는 코드별로 통계를 생산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즉 이론적이고 학술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통계 요소들과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생산 가능한 요소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나눔과 관련한 행정 및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나눔 통계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들을 구별해내는 단계이다.

이와 별개로 나눔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나눔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분석틀을 국내 자료와 국외 제출 자료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은 나눔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국제 인식 등을 통합적으로 혹은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틀이 명확하다면 국제통계에 제출하는 통계와 국내에서 나눔의 총량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하는 통계간의 구분 역시 명확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는 나눔관련 조사자료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눔 관련 조사목록과 조사 자료는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나눔 통계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단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수집해온 조사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때 조사 자료의 검토는 표본의 설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검증과 함께 원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는 표본의 한계, 조사수행 및 결과 해석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최대한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3차년도는 나눔관련 통계DB의 구축이 필요하다. 통계청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부문 나눔 관련 조사들은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 혹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의 용역발주를 통해 나눔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수탁발주기관에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처의 승인을 얻어 연구수행기관에도 홈페이지 게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나눔에 대한 총량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별 조사자료를 집적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독립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적인 통계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조사 결과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조사들의 표본과 조사 대상, 조사결과 등을 한데 집적하여 비교하고 어떤 자료를 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눔통계 생산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된다고 해도 조사 첫 해에 많은 것을 조사하기 보다는 개념틀과 측정틀을 정립한 상태에서 가능한 영역부터 조사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옳은 관계로 신규조사의 조사결과 역시 기존의 다른 조사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계DB 구축은 단순한 조사 결과만을 취합하는 것은 아니다. 나눔과 관련하여 지역조사가 수행되는 지역이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사들의 조사표를 취합하고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나눔 정책의 확산과 활성화 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눔관련 통계DB의 구축은 사회보장통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으나 나눔포털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다. DB구축에 방점을 둘 경우 사회보장통계에 포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통계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나눔포털의 일부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운영 중인 나눔포털은 주는 것(giving)과 받는 것(taking)과 관련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나눔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기부자와 기부모금기관을 연계하기도 하는 종합적인 포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차년도에는 누락통계와 신규통계의 생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눔 통계 개념틀을 기준으로 생산이 누락된 통계와 신규통계의 생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누락통계는 대표적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시 입력 코드에 비해서 공시된 자료는 과다하게 축소되어 가용한 통계 자료가 부족한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생산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과 사회보장위원회 안전으로 상정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통계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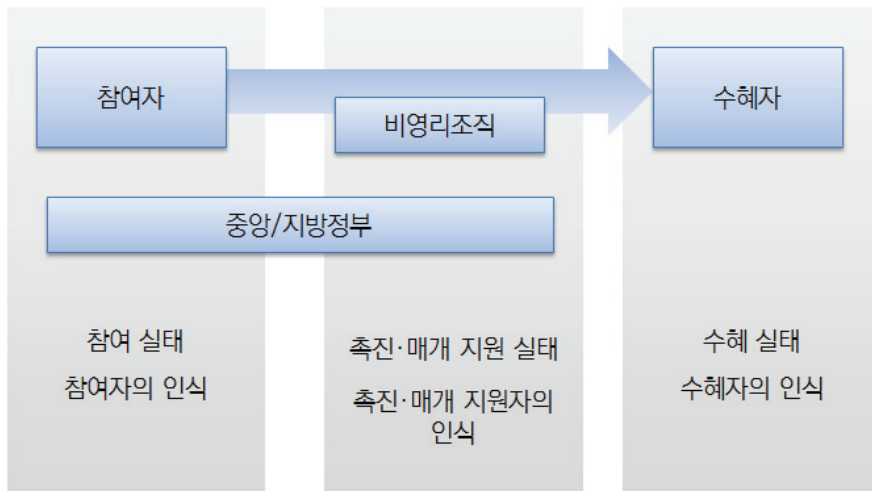
이 때 행정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정보의 구체적 분류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계자료에 대한 조사 및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변수를 통해 이중계산에 필요한 함수를 도출하고 매개기관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통계의 생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나눔 실태를 파악하는 데 회색지대였던 매개기관에 대한 조사의 실시가 대표적이다.

나눔은 참여자에게서 직접 수혜자에게로 전해지는 비공식 경로와 비영리조직(촉진, 매개)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해지는 공식경로가 있다. 나눔통계는 참여자 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와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통계 그리고 수혜자 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통

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와 인식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보는 것은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림 5-6] 나눔 단계별 필요 통계



5차년도에는 나눔통계의 생산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전면적인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분절적인 조사들의 단순 취합을 통해 나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나눔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 현행 행정정보나 조사자료를 가능한 활용하되 조사자료의 경우 표본의 설계 및 조사 내용, 조사 항목 등이 동일한 분석틀과 기준에 따라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조사가 조사수행기관의 고유자료였던 것에서 벗어나 조사의 수행은 독립적으로 하되 나눔통계 생산이라는 고유 브랜드는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조사의 설계, 조사의 관리, 사후모니터링, 자료의 분석 등에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을 취합한 가공통계로서 나눔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국가 승인통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비경제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 환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비경제적 활동(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을 위한 변

수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은 기관이나 학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환산을 하든 정확한 통계자료와 독립변수들이 있어야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에 고려되어야 할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공인된 나눔통계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나눔통계 생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눔통계를 생산함으로써 나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요약하면 나눔 통계의 향후 5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나눔통계에 대한 분석틀을 확정하고 나눔관련 조사에 대한 검증과 통계 DB를 구축한 뒤 누락 및 신규 통계의 생산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난 후 독립적인 전문 조사의 수행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나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가치 환산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 나눔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표 5-5〉 나눔통계 5개년 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나눔통계 분석틀 확정					
나눔관련 통계 DB 구축					
누락 및 신규 통계개선					
독립적인 전문 조사 수행					
비경제적 활동 가치 환산					
나눔통계 실무자 회의 운영					
나눔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요약

사회경제가 발전할수록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에서 제한된 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공백을 메꾸는데 국민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눔이며, 이와 같은 나눔에 대한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나눔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나눔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나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의 결과는 통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 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청의 국세통계연보, 적십자사의 헌혈통계, 장기이식센터의 장기이식통계 등을 통해 실태를 알아보았다.

기부자의 특성별 기부형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총 기부규모는 12조 4,859억원이며, 현금기부자의 평균기부횟수는 6.5회로 나타났으며, 기부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목적이 가장 높았고, 기부 대상인지 경로는 대중매체, 직장·학교 등의 순으로 높았다.

기부문화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은 기부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높았고,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기부참여는 참여수와 기부금액에서 모두 증가를 보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5~19세가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았으며, 2007년 이후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는 직장/학교를 통하여서가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자 참여자가 기부참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실적 및 헌혈률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와 사후장기기증은 감소한 반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나눔분석틀에 따른 나눔실태 조사개발

나눔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이와 관련된 통계생산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나눔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각종 조사와 행정자료를 이용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조사들이 나눔실태 파악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조사된 자료로 나눔실태 파악을 위한 신뢰성 높은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나눔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이에 따른 분석틀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된 통계들로는 국제적인 비교 가능한 통계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나눔분석틀에 따른 나눔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의 개발이 요구된다.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나눔분석틀 마련을 위한 노력 지속

날로 높아지는 나눔에 대한 정책 추진과 국민의 관련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나눔에 대한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분석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나눔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분석틀의 마련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한 정의와 분석틀이 마련되었다 하여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여야 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정의에 대한 논의와 분석틀 마련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 중복통계 파악 및 누락통계와 신규통계 생산방안 모색

현재의 관련 자료 이용 시스템에서 나눔에 대한 통계생산은 나눔의 누락이나 중복으

로 인한 과소나 과다 추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헌금과 같은 나눔에의 포함여부도 나눔통계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따라서 나눔의 분석틀에 따른 현재 이용가능 자료에 대한 누락부문과 중복부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추가 확보 필요자료와 이의 확보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할 경우 조사방법이나 조사규모 등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문항으로 조사표가 이루어졌는지도 전문가를 통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생산방법에 대한 관련 자료의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등록시스템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통계의 일원화된 통계생산 방안 모색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다. 두 시스템의 주관부처가 상이하여 시스템마다 별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현황 및 실적이 여러 소스로부터 별도 생산되는 체계가 아니라 하나로 취합된 종합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체계의 구성이 절실하다.

○ 나눔통계생산의 체계화 및 정보의 공유

현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관련 조직 및 운영실태 파악 등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요구된다. 나눔통계발전을 위해 관계자의 나눔에 대한 제도 및 실태, 통계 등을 포함한 각종 정보의 공유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계생산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보다 발전된 나눔통계의 생산을 위해 연차별로 체계적인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연구논문

- 강철희, 김미희, 허수연 (2012). 기업 사회공헌 확대계획의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건 사회연구, 32(3), 191-220
- 김형용 (2013).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 소비주의 나눔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국사회 복지행정학 15권 제 4호(통권 제41호), pp. 87~113.
- 진관훈(2012). 사회적자본이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39, No. 4, pp. 205-230
- L. M. Salamon, S. W. Sokolowski, M. A. Haddock(2011),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Volunteer Work Globally: Concepts, Estimates, and A Roadmap to The Futur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82, No.3, pp.217-252.
- Salamon, L. M., Sokolowski, S.W., Haddock, M.A (2011).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Volunteer Work Globally: Concepts, Estimates, and A Roadmap to The Futur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82, No.3, pp.217-252.

□ 단행본

- 강철희(2014). 2013 Giving Korea 조사결과: 통계청 나눔통계 결과와의 비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서문희, 이규용, 김진욱, 윤상용(2013).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주언, 이희길(2012). 나눔통계 개선방안. 대전: 통계청 동향분석실.
- 박주언, 이희길(2013). NPO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통계 작성방안. 대전: 통계개발원.
- 박주언, 이희길(2014a). 국내 나눔실태 2013.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박주언, 이희길(2013b). 공익법인 정보공시양식의 통계활동 제고방안. 대전: 통계개발원(미발간).
- 박현정, 박영실, 김 현(2012). 자원봉사 규모 및 실태 측정방안. 대전: 통계개발원.
- 신경희(2009).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무성, 배도, 이은화, 장진용, 구혜영, 박태규 외(2011).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 주성수, 정희선, 윤영미, 김민정(2014).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문화.

Friedman, L.J and McGarvie, M.D. 2002. *Charity, Philanthropy, and Civility in American Hist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 발표자료

아름다운 재단(2014). 기빙코리아 2014-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서울: 아름다운 재단.

한국가이드스타(2015a). 공익법인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공익법인 공
시자료 연구 최종 보고회-. NPO 가이드스타, 9, pp.12-13. 서울: 한국가이드스타.

한국가이드스타(2015b). 공익법인 공시자료 연구 시리즈-기부금. NPO 가이드스타, 9,
pp.14-15. 서울: 한국가이드스타.

Jane Arnott(2014a). Charities Aid Foundation: 전세계 기부 현황 및 미래의 기부문화.
2014 국제나눔문화선진화 컨퍼런스 자료집. 서울: 한국NPO 공동회의·한국국제교류재
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눔국민운동본부.

Jane Arnott(2014b). Charities Aid Foundation: 영국 및 전세계 CAF 역사, 법제도, 나눔문
화 분석, NPO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소개.
2014 국제나눔문화선진화 컨퍼런스 자료집. 서울: 한국NPO 공동회의·한국국제교류재
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눔국민운동본부.

□ 기관 간행물

국세청(2014). 국세통계연보. 대전: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2014). 나눔(모금) 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세
중: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2013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Voluntary Work*. Australia.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2014. 2). News Release: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2013.

Charities Aid Foundation (2014. 3). UK Giving 2012/13.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4).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 Annual Report: Treatment of End-Stage Organ Failure in Canada,
2003 to 2012*.

- Canadian Blood Services (2014). *Delivering Value Annual Report 2013-2014*.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Australian Organ and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uthority Annual Report 2013-14*.
- National Health Service Blood and Transplant (2014. 5. 15).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ctivity Report*
-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 and Scientific Registry of Transplant Recipients (SRTR)(2014). *OPTN/SRTR 2012 Annual Data Report*. Rockvill, MD: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 Social and Aboriginal Statistics Division (2012).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Tables Report, 2010*.

□ 신문기사

- 윤종성(2015, 1.29a). 발목잡힌 기부-‘영터리 세제’ 탓에 ‘고액기부’ 급브레이크. 이데일리, 인터넷판.
- 윤종성(2015, 1.29b). 발목잡힌 기부-1억 기부 환급액, 388만원→22만원으로. 이데일리, 인터넷판.
- 윤종성(2015, 1.29c). 발목잡힌 기부-월1만~5만원 ‘작은 기부’는 늘어. 이데일리, 인터넷판.
- 윤종성(2015, 1.29d). 발목잡힌 기부-美 50%, 佛. 66% 세제 혜택. 이데일리, 인터넷판.
- 윤종성(2015, 3.10). 고액기부 감소에 ‘회들짝’-기부금 稅혜택 손본다. 이데일리, 인터넷판.

□ 전자사이트

-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가구원), 행동분류표, 산업분류, 직업분류.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에서 2015/3/16 추출
- 통계청(2013a). 가계동향조사 조사표, 설계서 및 코드집. <http://meta.narastat.kr/> 에서 2015/3/16 추출
- 통계청(2013b). 2013 사회조사 조사표(가구원). <http://meta.narastat.kr/> 에서 2015/3/16 추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4.10.23.). 자원봉사활동참여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 에서 2015.3.16 추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5.3.8).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 에서 2015.3.16. 추출



1. 국제비교가능 지표

- 봉사활동, 기부, 타인 돕기 등 나눔과 관련한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는 시도가 이뤄짐
- 데이터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대상과 질문 등 공통의 조사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국제기구에서 수집한 국가별 자료나 국제적 리서치 회사의 자료가 주로 인용됨

(1) World Value Survey

□ 조사단체

- World Value Survey(WVS)는 변화하는 가치와 이러한 변화가 사회와 정치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임
 - 국내 조사의 연구책임자: 어수영(이화여대 명예교수), 공동연구자:이남영(세종대 교수)
- 1981년 첫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5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됨
- 국가 대표 조사로 세계 인구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100개국 정도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
- WVS는 인간의 믿음과 가치에 대하여 비상업적이며, 다국가를 대상으로 세계 열적으로 이뤄지는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임
- WVS에서는 나눔통계와 관련하여 자발적 활동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

〈부표 1〉 World Value Survey 조사개요

연구대상	18세 이상				
표본추출 방법	1단계에서 주어진 사회적 통계의 지리적, 센서스 유닛, 선거구, 중앙 인구 등록 등을 바탕으로 샘플링 지점의 랜덤 선택이 이뤄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수와 도시화 정도가 고려됨				
표본사이즈	각 국가별로 최소 1,000명 이상				
조사방법	대인 면접 조사				
조사문항 (나눔통계 관련)	Wave 1/3/5 /6	회원으로 계신 단체가 있으시면 해당 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구분	회원 아님	소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① 종교나 교회단체			
		② 스포츠, 레크레이션 단체			
		③ 예술, 음악 또는 교육·문화적 단체			
		④ 노동단체			
		⑤ 정당			
		⑥ 환경보호단체			
		⑦ 전문가 협회			
		⑧ 인권 혹은 자선단체			
		⑨ 소비자 보호 단체			
		⑩ 자활모임, 공제모임			
		⑪ 기타 단체			
	Wave 2/4	다음 단체에서 현재 무보수 자발적 노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사회복지, ② 교회단체, ③ 문화적 활동, ④ 노동단체, ⑤ 정당, ⑥ 지역정치, ⑦ 인권, ⑧ 동물권리, ⑨ 전문적 협회, ⑩ 청소년 활동, ⑪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⑫ 여성단체, ⑬ 평화운동, ⑭ 건강관련 단체, ⑮ 기타 사회적 단체			

□ 조사결과

〈부표 2〉 World Value Survey 조사결과

(Wave 6) 인권이나 자선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전체	회원 아님		소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N	%	N	%	N	%
Total	84293	71659	85.0	7260	8.6	5374	6.4
India	1581	654	41.4	476	30.1	451	28.5
New Zealand	786	495	63.0	124	15.8	167	21.2
Australia	1440	944	65.6	219	15.2	277	19.2
United States	2193	1501	68.4	329	15.0	363	16.6
Taiwan	1234	726	58.8	308	25.0	200	16.2
Kuwait	1094	789	72.1	134	12.2	171	15.6
Philippines	1200	862	71.8	158	13.2	180	15.0
Bahrain	1200	949	79.1	90	7.5	161	13.4
Libya	2060	1661	80.6	147	7.1	252	12.2
Sweden	1199	840	70.1	226	18.8	133	11.1
Brazil	1479	1268	85.7	49	3.3	162	11.0
Mexico	2000	1596	79.8	187	9.4	217	10.9

(Wave 6) 인권이나 자선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전체	회원 아님		소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N	%	N	%	N	%
Qatar	1060	829	78.2	118	11.1	113	10.7
Trinidad and Tobago	999	801	80.2	102	10.2	96	9.6
Kyrgyzstan	1498	1221	81.5	142	9.5	135	9.0
Thailand	1195	991	82.9	101	8.5	103	8.6
Lebanon	1200	951	79.3	146	12.2	103	8.6
Slovenia	1061	895	84.4	79	7.4	87	8.2
Colombia	1510	1296	85.8	96	6.4	118	7.8
Nigeria	1759	1354	77.0	270	15.3	135	7.7
Hong Kong	999	784	78.5	144	14.4	71	7.1
Zimbabwe	1500	1209	80.6	188	12.5	103	6.9
South Africa	3531	2254	63.8	1049	29.7	228	6.5
Cyprus	1000	847	84.7	89	8.9	64	6.4
Chile	1000	867	86.7	75	7.5	58	5.8
Rwanda	1527	1087	71.2	352	23.1	88	5.8
Argentina	1028	883	85.9	87	8.5	58	5.6
Ghana	1552	1371	88.3	98	6.3	83	5.3
Palestine	994	866	87.1	80	8.0	48	4.8
Malaysia	1300	1154	88.8	84	6.5	62	4.8
Singapore	1972	1719	87.2	160	8.1	93	4.7
Germany	2045	1790	87.5	160	7.8	95	4.6
Spain	1177	1088	92.4	42	3.6	47	4.0
Poland	965	891	92.3	36	3.7	38	3.9
Iraq	1200	1094	91.2	60	5.0	46	3.8
Jordan	1200	1088	90.7	67	5.6	45	3.8
Peru	1201	1102	91.8	55	4.6	44	3.7
Ecuador	1202	1130	94.0	31	2.6	41	3.4
Yemen	1000	912	91.2	55	5.5	33	3.3
Uruguay	983	922	93.8	29	3.0	32	3.3
Netherlands	1899	1597	84.1	245	12.9	57	3.0
South Korea	1070	932	87.1	110	10.3	28	2.6
Algeria	1200	1132	94.3	41	3.4	27	2.3
Romania	1497	1436	95.9	35	2.3	26	1.7
Estonia	1531	1453	94.9	53	3.5	25	1.6
Pakistan	1200	1129	94.1	52	4.3	19	1.6
Kazakhstan	1500	1426	95.1	51	3.4	23	1.5
Japan	2407	2333	96.9	38	1.6	36	1.5
Morocco	1140	1112	97.5	11	1.0	17	1.5
Azerbaijan	1002	975	97.3	13	1.3	14	1.4
Turkey	1600	1562	97.6	20	1.3	18	1.1
Belarus	1535	1495	97.4	24	1.6	16	1.0
Ukraine	1500	1455	97.0	31	2.1	14	.9
Armenia	1100	1084	98.5	8	.7	8	.7
Uzbekistan	1484	1470	99.1	4	.3	10	.7
Russia	2478	2433	98.2	30	1.2	15	.6
China	2298	2251	98.0	37	1.6	10	.4
Egypt	1523	1511	99.2	6	.4	6	.4
Tunisia	1205	1192	98.9	9	.7	4	.3

(Wave 4) 노인, 장애인 또는 취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무보수 노동을 제공			
	전체	제공함	
		N	%
Total	37390	3756	10.0
China	1000	560	56.0
Viet Nam	1000	287	28.7
Tanzania	1171	288	24.6
Bangladesh	1500	291	19.4
Algeria	1282	242	18.9
United States	1200	173	14.4
Uganda	1002	112	11.2
Albania	1000	108	10.8
Singapore	1512	161	10.6
Puerto Rico	720	76	10.6
Philippines	1200	121	10.1
Canada	1931	185	9.6
Sweden	1015	94	9.3
South Korea	1200	109	9.1
Moldova	1008	80	7.9
South Africa	3000	191	6.4
India	2002	126	6.3
Chile	1200	73	6.1
Zimbabwe	1002	60	6.0
Japan	1362	74	5.4
Mexico	1535	82	5.3
Macedonia	1055	51	4.8
Kyrgyzstan	1043	39	3.7
Peru	1501	50	3.3
Montenegro	1060	34	3.2
Argentina	1280	35	2.7
Spain	1209	25	2.1
Serbia	1200	16	1.3
Bosnia	1200	13	1.1

□ 자료 활용 현황

- United Nations Regional Information Centre, 2011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Universal Values for Global Well-being.
- OECD Family database, CO4.1: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 자료출처

- WVS 홈페이지: www.worldvaluessurvey.org

(2) OECD Time Use database

□ 데이터베이스 개요

- 시간사용조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배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함.
- OECD 국가에서 시간조사는 26개국에서 가능하며 중국, 인도, 남아공 등 OECD 이외의 국가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국가별로 기록시간, 기록일 등 시간조사에 대한 방법과 접근이 약간 다르므로, 시간사용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에 몇 가지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표 3〉 OECD 각 국가별 조사개요

국가	조사명	조사처	조사기간	조사대상	샘플사이즈	기록일	시간 간격	비고	활동 분류수
호주	Time Use Survey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6년	민간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6,961명 (3,643가구)	연속 2일	5분		61
오스트리아	Time Use Survey	Statistics Austria	2008년 3월~2009년 4월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8,234명	1일	15분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까지는 30분 간격	420
벨기에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5년 1월~ 2006년 1월	(1) 민간 가정에 사는 12세 이상 인구 (2) 민간 가구	6,412명 (3,474가구)	주중1일+ 주말1일	10분		49
캐나다	General Social Survey (special module)	Statistics Canada	2005년 1월~11월 (12월로 연장됨)	민간 가구에 사는 15세 이상 인구 (유론 Nunavut와 Northwest Territories는 제외함)	19,597명	1일	5분	12월 후반은 연휴로 인하여 biased되었을 수 있음	182
중국	Time Use Surve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08년 5월	15~74세 인구	37,142명 (16,661가구)	주중1일+ 주말1일	10분	조사원이 대표성을 가 지지 않으므로 biased 되었을 수 있음	30
덴마크	Time Use Survey	Danish Data Archive	2001년 1월~11월	민간 가구에 사는 15세 이상 인구	2,741가구	주중1일+ 주말1일	10분	조사원이 대표성을 가 지지 않으므로 biased 되었을 수 있음. 가중 치 적용하지 않음	167
에스토니아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1999년 4월 ~ 2000년 3월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5,728명 (2,581가구)	2	10분		49
핀란드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1999년 3월 ~ 2000년 3월	(1)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2) 민간가구	5,332명 (3,011 가구)	주중1일+ 주말1일	10분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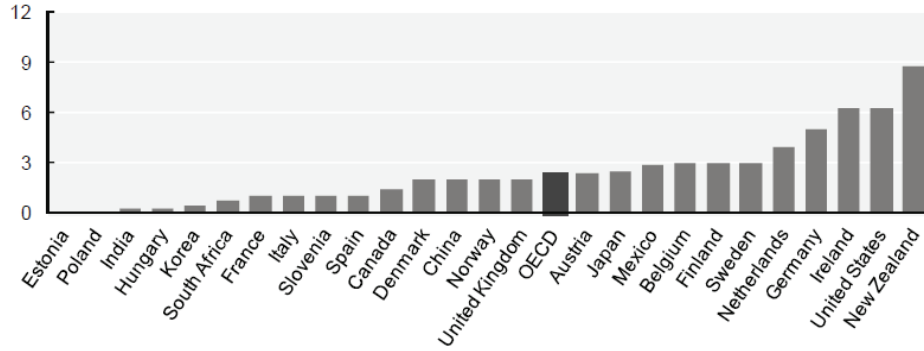
국가	조사명	조사처	조사기간	조사대상	샘플사이즈	기록일	시간 간격	비고	활동 분류수
프랑스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1998년 2월 ~ 1999년 2월 (8월 4~18일과 12월 21일~1월 4일 제외함)	민간 가구에 사는 15세 이상 인구. 표본추출단위는 가구임	15,441명 (12,000가구)	1일	10분	조사일이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biased 되었을 수 있음.	49
독일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1년 4월 ~ 2002년 3월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10,051명 (5 443가구)	주중일+ 주말1일	10분		49
헝가리	Time Use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1999년 9월 1일 ~ 2000년 9월 6일	민간 가구에 사는 15~74세 인구	11,000명	4일(각 시즌별로 주중 다른 날)	10분		21
인도	Pilot Time Use Survey	Department of Statistics	1999년: 3개월 마다 4라운드	민간 가구에 사는 6세 이상 인구	18,591 가구	3일	10분	패밀릿 조사는 6개의 선택된 주(state)에서 진행됨	155
아일랜드	National Time-Use Survey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05년 4월 22일 ~ 7월 1일	18세 이상 인구	1,089명 (585가구)	주중일+ 주말1일	15분	조사일이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biased 되었을 수 있음. 매우 작은 샘플사이즈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26개 활동 리스트가 사전 코드화됨. 4개 까지 동시에 하는 활동으로 선택 가능함	26
이탈리아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2년 4월 ~ 2003년 3월	민간 가구에 사는 3세 이상 인구	47,589명 (21,000가구)	1일	10분		49
일본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Questionnaire B)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al Research	2006년 10월 14~22일	외국인을 포함한 10세 이상 모든 인구	18,291명 (3,866가구)		15분	조사일이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biased 되었을 수 있음.	85

국가	조사명	조사처	조사기간	조사대상	샘플사이즈	기록일	시간 간격	비고	활동 분류수
한국	Time Use Survey	Training Institute Statistics Korea	2009년 3월 12~23일/ 2009년 9월 9~22일	10세 이상 인구	20,263명 (8,100가구)	연속2일	10분		144
멕시코	National Survey on Time Use (Encuesta Nacional sobre Uso del Tiempo, ENUT)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EGI)	2009년 10,11월	영토 내 민간 가구에 사는 12세 이상 인구	16,925가구	연속7일	1주당 하루, 1분	조사일이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biased 되었을 수 있음. 지난 7일간 그들이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79가지 질문을 받음	79
네덜란드	Time Use Survey - (Tijdsbestedingsonderzoek, TBO)	Data Archiving and Networked Services (DANS)	2006년 1~12월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1,875명	연속7일	10분	매우 작은 샘플사이즈	대략 360
뉴질랜드	Time Use Survey (TUS)	Statistics New Zealand (SNZ)	2008년 7월~ 2009년 6월	민간 가구에 사는 12세 이상 인구	8,522명	연속2일	5분	마오리 인구 과대표집됨(1.913명정도)	88
노르웨이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0년 2월~ 2001년 2월	노르웨이에 등록된 9-79세 모든 인구(60-66세 추가 샘플 67지)	3,369명	연속2일	10분		49
폴란드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3년 6월~ 2004년 5월	사회경제적 그룹을 대표하는 선택된 가구의 15세 이상 멤버	20,264명 (10,200가구)	추진1일+ 추방1일	10분		49
포르투갈	Time Use Survey	Statistics	1999년	민간 가구에	5,500가구	1일	10분	HETUS를 따르고 있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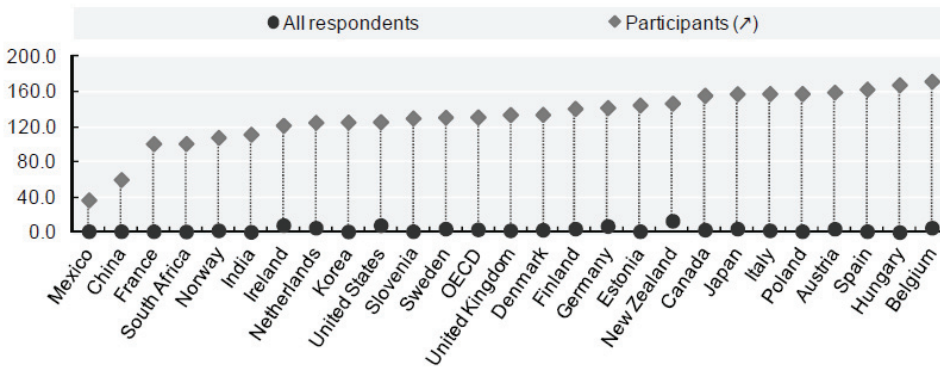
국가	조사명	조사처	조사기간	조사대상	샘플사이즈	기록일	시간 간격	비고	활동 분류수
슬로베니아	Portugal	Portugal	10~11월	사는 15세 이상 인구				이나 예산제한으로 2달 동안 조사되었으며 질문이 간소화됨	
남아공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0년 4월 ~ 2001년 3월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6,190명 (4,500가구)	주중1일+ 주말1일	10분		49
	Time Use Survey	Statistics South Africa	3라운드: 2000년 2, 6, 10월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14,553명 (8,564가구)	1일	10분	3라운드로 진행되어 계절의 영향을 줄였으나, 전체 년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biased되었을 수 있음.	99
스페인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2년 10월 ~ 2003년 9월	민간 가구에 사는 10세 이상 인구	46,774명 (17,700가구)	1일	10분		49
스웨덴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0년 10월 ~ 2001년 9월	조사 기간 스웨덴에 등록된 20~84세 인구	3,998명 (2,138가구)	주중1일+ 주말1일	10분		49
	Time Use Survey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TURKSTAT)	2006년 1~12월	민간 가구에 사는 15세 이상 인구	10,893명 (4,197가구)	주중1일+ 주말1일	10분		27
영국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EUROSTAT and NSO	2000년 6월 ~ 2001년 7월	선택된 가구의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	9,590명	주중1일+ 주말1일	10분		49
미국	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2008년 1~12월	민간 가구에 사는 15세 이상 인구	12,723명	1일	1분		대략 400

□ 조사결과

[부도 1]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전체 인구 중 비율(%)



[부도 2] 하루당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분), 전체 응답자와 봉사자



□ 활용현황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 자료출처

- Miranda, V. (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3) Gallup World poll

□ 조사소개

- Gallup World poll은 전세계에서 이뤄지는 설문조사로 자원봉사활동, 기부, 타인 돕기 등 나눔의 경험과 관련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나눔의 국제비교 자료로 활용됨
- 영국의 민간 비영리기관인 Charities Aids Foundation(CAF)는 2010년부터 Gallup World Poll 자료를 활용하여 World Giving Index를 발표함
- OECD는 Society at a Glance 2014에서도 “Helping Other”라는 챕터에 해당 통계를 소개하고 있음
- 갤럽은 전세계 약 140여개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 중 1,000여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기부, 자원봉사활동,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경험 여부를 질문함

〈부표 4〉 Gallup World poll 조사개요

연구대상	비시설화된 15세 이상 인구
표본추출 방법	전화가 인구의 최소한 80%를 커버하는 국가의 경우 전화조사가 이뤄짐. 전화조사가 적용된 국가에서는 Random-Digit-Dial(RDD) 또는 전국적 대표적인 전화번호부가 사용됨
표본사이즈	최소 1,000명 이상의 개인이 조사에 포함됨. 중국, 러시아 등 인구수가 큰 국가의 경우 최소 2,000명의 샘플사이즈가 수집됨
조사방법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샘플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적으로 대표적임
조사문항 (나눔통계 관련)	(기부)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움)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 있습니까?

*Gallup에서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으로 판매함

□ 조사결과

〈부표 5〉 World Giving Index 2014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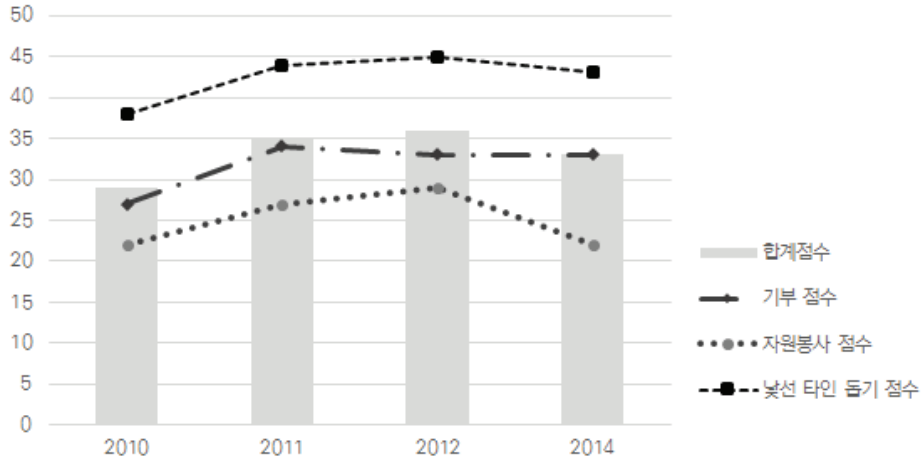
	합계		낯선 타인 돕기		기부		자원봉사활동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Myanmar	1	64	63	49	1	91	2	51
United States of America	1	64	1	79	9	68	5	44
Canada	3	60	11	66	6	71	5	44

	합계		낮선 타인 돕기		기부		자원봉사활동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Ireland	4	60	15	64	4	74	10	41
New Zealand	5	58	7	69	13	62	5	44
Australia	6	56	12	65	10	66	16	37
Malaysia	7	55	19	63	15	60	10	41
United Kingdom	7	55	24	61	4	74	33	29
Sri Lanka	9	54	40	56	17	56	3	50
Trinidad and Tobago	10	54	2	75	21	49	16	37
Bhutan	11	53	46	54	12	63	9	43
Netherlands	12	53	46	54	7	70	21	34
Indonesia	13	51	67	48	10	66	13	40
Iceland	14	50	52	52	7	70	33	29
Kenya	15	49	10	67	24	43	16	37
Malta	16	49	86	43	2	78	46	25
Austria	17	48	35	57	16	57	33	29
Denmark	18	47	44	55	13	62	52	23
Iran	19	46	22	62	20	52	50	24
Jamaica	20	45	4	73	58	26	20	35
Nigeria	21	44	19	63	50	29	10	41
Thailand	21	44	106	38	3	77	70	18
Cyprus	23	43	29	58	22	47	46	25
Turkmenistan	23	43	40	56	75	21	1	53
Finland	25	43	46	54	24	43	25	32
Guatemala	25	43	29	58	47	31	13	40
Dominican Republic	27	42	24	61	41	33	25	32
Germany	28	42	29	58	27	42	46	25
Uzbekistan	28	42	29	58	75	21	4	46
Philippines	30	41	35	57	56	27	15	38
Syria	30	41	12	65	37	36	60	21
Israel	32	40	98	40	19	53	39	28
Mongolia	32	40	86	43	27	42	19	36
Costa Rica	34	40	15	64	38	34	55	22
Slovenia	34	40	72	47	29	41	25	32
South Africa	34	40	15	64	68	23	23	33
Tajikistan	34	40	56	51	61	25	5	44
Uganda	34	40	9	68	71	22	30	30
Northern Cyprus	39	40	12	65	31	40	90	14
Guinea	40	39	22	62	58	26	30	30
Haiti	40	39	78	45	23	44	33	29
Sweden	40	39	56	51	18	55	104	12
Iraq	43	39	2	75	62	24	70	18
Nepal	44	38	52	52	38	34	33	29
Liberia	45	38	4	73	130	7	21	34
Panama	46	38	78	45	35	37	29	31
Saudi Arabia	47	37	7	69	47	31	107	11
Taiwan	47	37	62	50	31	40	60	21
Zambia	47	37	6	71	120	10	30	30
Chile	50	36	56	51	24	43	83	15
Kosovo	50	36	35	57	34	39	96	13

	합계		낮선 타인 돕기		기부		자원봉사활동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Belgium	52	36	86	43	29	41	50	24
Colombia	53	35	24	61	62	24	65	20
Ghana	54	34	24	61	93	16	43	26
Sierra Leone	55	34	19	63	120	10	33	29
Malawi	56	34	29	58	83	20	52	23
Bolivia	57	33	46	54	83	20	43	26
Cameroon	58	33	15	64	87	17	70	18
Honduras	58	33	76	46	75	21	25	32
Republic of Korea	60	33	86	43	41	33	55	22
Pakistan	61	32	67	48	45	32	78	16
Botswana	62	32	44	55	87	17	52	23
Spain	62	32	51	53	56	27	83	15
Uruguay	62	32	56	51	50	29	83	15
Lebanon	65	31	63	49	45	32	104	12
Luxembourg	65	31	126	31	31	40	55	22
Nicaragua	67	30	86	43	52	28	65	20
Paraguay	68	30	92	41	38	34	90	14
Côte d'Ivoire	69	29	28	60	85	19	114	9
Gabon	69	29	29	58	87	17	96	13
India	69	29	103	39	52	28	60	21
Bangladesh	72	29	46	54	85	19	90	14
Ethiopia	72	29	52	52	101	14	60	21
Hungary	72	29	56	51	62	24	104	12
Peru	72	29	78	45	68	23	68	19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72	29	98	40	41	33	90	14
Argentina	77	29	63	49	71	22	83	15
Portugal	78	28	76	46	62	24	83	15
Afghanistan	79	28	78	45	62	24	83	15
Italy	79	28	72	47	52	28	114	9
Senegal	79	28	35	57	101	14	96	13
Vietnam	79	28	52	52	71	22	108	10
Belarus	83	28	118	35	97	15	23	33
Kyrgyzstan	83	28	92	41	101	14	39	28
Albania	85	27	40	56	87	17	114	9
Mexico	85	27	83	44	93	16	55	22
Azerbaijan	87	27	92	41	101	14	46	25
United Republic of Tanzania	87	27	83	44	68	23	96	13
Latvia	89	26	106	38	52	28	96	13
Brazil	90	26	98	40	71	22	78	16
Burkina Faso	90	26	72	47	97	15	78	16
France	90	26	129	30	58	26	55	22
Japan	90	26	134	26	62	24	39	28
Slovakia	94	26	124	32	49	30	83	15
Zimbabwe	94	26	67	48	123	9	65	20
Angola	96	25	92	41	87	17	78	16
El Salvador	96	25	92	41	112	12	6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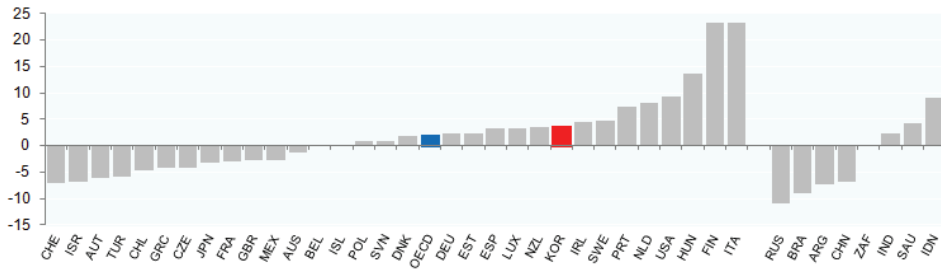
	합계		낮선 타인 돕기		기부		자원봉사활동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Republic of Moldova	96	25	113	36	75	21	76	17
Jordan	99	24	67	48	87	17	122	8
Congo	99	24	72	47	107	13	96	13
Kazakhstan	101	24	92	41	112	12	68	19
Niger	102	24	35	57	132	5	114	9
Benin	103	23	63	49	118	11	108	10
Bosnia and Herzegovina	103	23	126	31	41	33	129	6
Estonia	103	23	113	36	93	16	70	18
Ukraine	103	23	118	35	123	9	43	26
Nagorno-Karabakh Region	103	23	56	51	123	9	108	10
Cambodia	108	23	135	22	35	37	108	10
Romania	108	23	98	40	75	21	122	8
Madagascar	110	22	133	27	107	13	42	27
Rwanda	110	22	110	37	107	13	76	17
Czech Republic	112	22	126	31	75	21	90	14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12	22	110	37	107	13	78	16
Morocco	112	22	40	56	132	5	132	5
Chad	115	22	103	39	112	12	90	14
Mauritania	115	22	113	36	93	16	96	13
Poland	115	22	118	35	75	21	114	9
Mali	118	21	78	45	112	12	125	7
Lithuania	119	21	106	38	112	12	96	13
Egypt	120	21	98	40	97	15	125	7
Greece	120	21	86	43	123	9	108	10
Tunisia	120	21	67	48	128	8	129	6
Georgia	123	20	103	39	134	4	70	18
Armenia	124	20	83	44	123	9	125	7
Serbia	124	20	118	35	75	21	134	4
Bulgaria	126	19	110	37	101	14	125	7
Russian Federation	126	19	122	34	131	6	70	18
China	128	18	113	36	107	13	129	6
Turkey	128	18	106	38	112	12	132	5
Croatia	130	18	131	29	101	14	108	10
Montenegro	130	18	131	29	97	15	114	9
Ecuador	132	17	124	32	118	11	114	9
Palestinian Territory	133	17	123	33	128	8	114	9
Venezuela	134	16	129	30	120	10	122	8
Yemen	135	14	113	36	134	4	135	3

[부도 3] World Giving Index 2010~2014: 한국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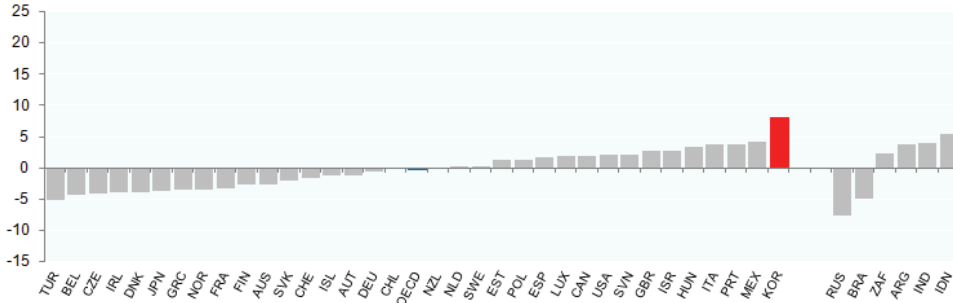
* 한국은 2013년 지수에 포함되지 않음

[부도 4] OECD 국가의 타인돕기: 2007~2012년 변화율(%포인트)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부도 5] OECD 국가의 자원봉사활동: 2007~2012년 변화율(%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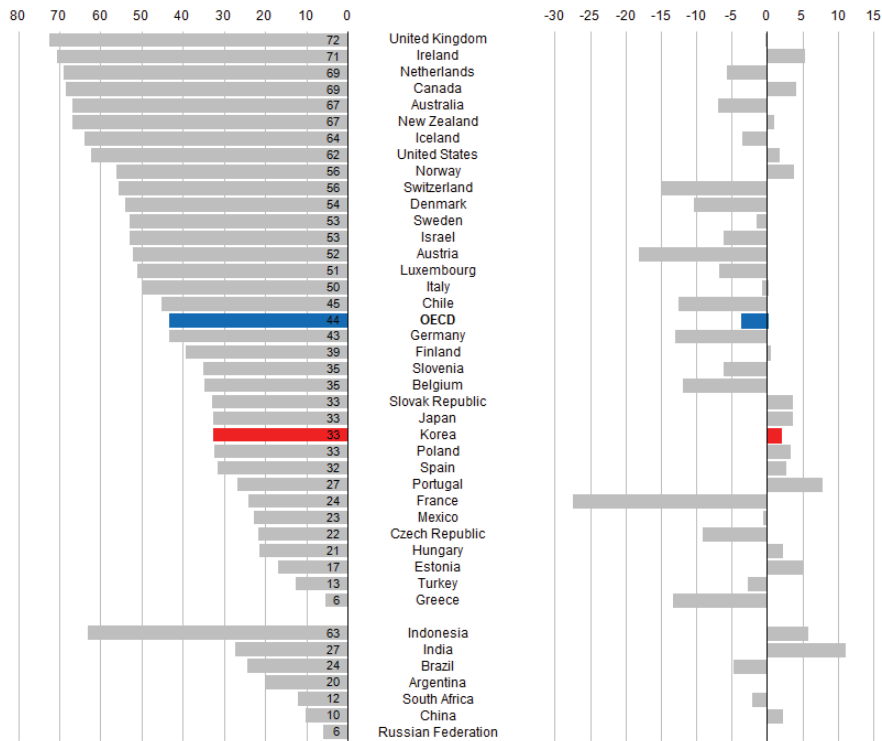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부도 6] OECD 국가의 기부: 2012년 기부율(%), 2007~2012년 변화율(%포인트)

Panel A. Percentage of people who have donated money to a charity in the last month, 2012 (%)

Panel B. Percentage point change between 2007 and 2012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 활용현황

- CAF, World Giving Index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Helping Others”

□ 자료출처

- CAF, World Giving Index 2010~2014
- Gallup 홈페이지:
<http://www.gallup.com/poll/105226/world-poll-methodology.aspx>

(4) BNP Paribas Individual Philanthropy Index

□ 조사단체

- 2013년부터 Forbes Insights가 BNP Paribas 자산관리회사와 협력 하에 전 세계 자산가를 대상으로 기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함

〈부표 6〉 BNP Paribas Individual Philanthropy Index 조사개요

	2013	2014
연구대상	투자 가능한 자산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자산가	
설문대상자 선정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4개 지역에 균일하게 나누어 조사 대상을 선정함	
설문대상자	300명 이상	414명
조사기간	2013년 1-3월	2013년 10-12월
조사방법	Forbes Insight는 응답자를 설문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지수는 다음 4가지 가중 요소를 포함함 현재 기부(30% 가중): 응답자의 연간 소득 대비 기부액(%) 미래 기부(20%): 향후 계획된 재산 대비 기부액(%) 프로모션(25%): 그들의 자선기금을 홍보하려는 노력 이노베이션(25%): 결과 중심적이며, 기업가적 접근으로 비용 효율적이며 기부 노력, 양적 지표, 이익의 효과가 지속가능하고 반복가능한지를 강조함	
조사문항 (나눔통계 관련)	당신의 연간소득의 몇 퍼센트를 매년 얼마를 기부하십니까? 당신의 재산 중 몇 퍼센트를 기부하실 계획입니까? 당신이 집중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 영역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눔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눔 노력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나눔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국가에서 가장 시급한 나눔 니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가 당신의 나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현재의 정책이 당신의 나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당신의 나눔의 결과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겠습니까?
--	---

[부도 7] 조사결과: 당신의 나눔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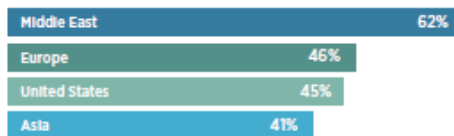
What motivates your philanthropy? (Top Five)

Europe		Asia		United States		Middle East	
Altruistic desire	22%	Desire to give back to society	19%	Personal experience with area of focus	22%	Personal experience with area of focus	29%
Personal experience with area of focus	16%	Altruistic desire	19%	Religious faith	16%	Religious faith	21%
Sense of duty	16%	Sense of duty	16%	Sense of duty	14%	Ethnic or national identity	13%
Family legacy	15%	Personal experience with area of focus	11%	Family legacy	12%	Sense of duty	12%
Desire to apply business know-how	10%	Religious faith	11%	Desire to give back to society	11%	Family legacy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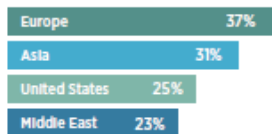
[부도 8] 조사결과: 현재의 정책이 당신의 나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How do current policies promoting giving influence your philanthr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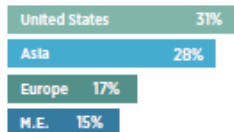
Urge me to increase giving



Urge me to decrease g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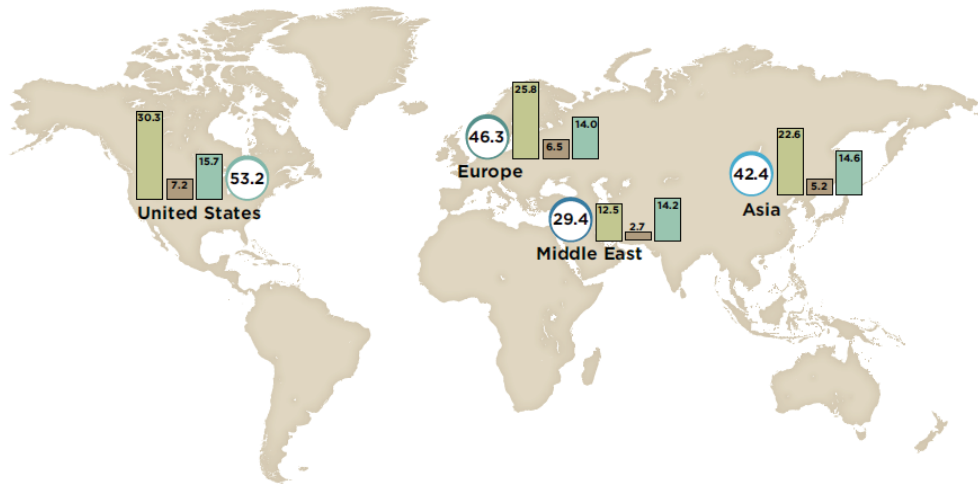


No impact



[부도 9] 조사결과: 나눔지수

BNP Paribas Individual Philanthropy Index



○ TOTAL INDEX SCORE

■ **Current Giving** (max score = 30) reflects the percentage of annual income respondents say they give to philanthropy on average. **Projected Giving** (max score = 20) reflects the percentage of total fortune they plan to eventually contribute.

■ **Promotion** (max score = 25)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respondents strive to publicize their charitable causes.

■ **Innovation** (max score = 25)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respondents say their philanthropic efforts take a results-oriented, entrepreneurial approach, with an emphasis on quantitative metrics, cost-effectiveness, sustainability of beneficial effects and replicability. (Other types of philanthropic innovation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study.)

The sum of these components equals the Total Index Score on a 0-100 scale. A perfect score of 100 would imply an ideal philanthropic world of extreme generosity, advocacy and effectiveness.

□ 자료출처

- Forbes Insights, 2014 BNP Paribas Individual Philanthropy Index

(5) EU-SILC survey: 2006년 부가조사

□ 조사소개

-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는 횡단적 종단적 샘플 조사로 유럽통계청에 의해 조정되며 유럽 연합 국가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함

- EU-SILC는 소득, 빈곤, 사회적 배제와 생활 수준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함
- 2005년부터 매년 조사되며 횡단면데이터와 종단데이터 두 가지로 제공됨
- 사회적 배제와 주거 수준에 관한 정보는 가구 단위로 수집되며, 구체적인 부문별 소득은 개인 수준에서 수집됨. 노동, 교육 및 건강 관측은 16세 이상 인구에 해당됨
- 2006년 조사 진행시 사회적 참여에 관한 부가 조사가 이뤄짐

〈부표 7〉 EU-SILC survey 조사개요

연구대상	유럽연합 내 16세 이상의 개인. EU-SILC의 기준 인구는 조사 당시 각 국가의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민간 가구와 그들의 모든 가구원임. 집합적 가구에 살고나 시설에 살고 있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목표 집단에서 제외됨.			
표본추출방법	거주지/주소 표집	Simple random sampling	말타, 오스트리아	
		Stratified simple random sampling	룩셈부르크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체코,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가구 표집	Stratified simple random sampling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Quota plus sampling based on an ACCESS panel	독일	
	개인 표집	Simple random or systematic sampling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Stratified simple random or systematic sampling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Stratified two-phase sampling	핀란드	
		Stratified two-stage sampling	슬로베니아	
	샘플사이즈	대략 270,000명(130,000가구)		
	조사기간	2006		
조사방법	면접 조사			
조사문항 (나눔통계 관련)	- 지난 12개월 동안 비공식적 자원 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 단체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비공식적 자원 활동: 조직적인 맥락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개인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음. 비공식적 자원 활동은 타인을 위한 요리; 병원 또는 가정 내 간병; 산책과 쇼핑 등을 포함함. 이러한 활동은 응답자의 가구나 직장 또는 자원 단체 내 이뤄진 활동을 제외함			

〈부표 8〉 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빈도)

	매일	매주	매달 수차례	한달에 한번	1년에 한번 이상	참여하지 않음
벨기에	13.4	86.6	0.0	0.0	0.0	0.0
그리스	0.1	0.2	0.5	0.6	1.8	96.8
체코	4.5	95.5	0.1	0.0	0.0	0.0
덴마크	0.1	0.5	0.8	0.6	1.2	96.9
독일	35.6	64.4	0.0	0.0	0.0	0.0
에스토니아	1.1	4.2	6.7	9.2	10.0	68.8
아일랜드	24.2	75.8	0.0	0.0	0.0	0.0
그리스	0.6	1.7	2.9	3.3	10.5	81.1
스페인	6.5	9.1	9.0	7.0	13.3	55.0
프랑스	1.0	3.5	3.7	3.0	6.2	82.6
이탈리아	4.7	7.9	7.0	2.3	2.9	75.2
사이프러스	66.9	33.1	0.0	0.0	0.0	0.0
라트비아	1.3	5.3	7.2	8.2	12.3	65.7
리투아니아	0.8	2.9	2.8	2.6	4.9	86.0
룩셈부르크	3.8	9.4	5.9	7.4	10.4	63.1
헝가리	0.3	0.8	1.2	2.7	6.1	88.9
말타	12.2	87.8	0.0	0.0	0.0	0.0
네덜란드	2.3	10.5	12.7	10.7	18.5	45.2
오스트리아	1.5	6.5	6.0	7.9	9.0	69.1
폴란드	51.5	48.5	0.0	0.0	0.0	0.0
포르투갈	3.0	5.4	4.5	5.5	10.1	71.5
슬로베니아	4.9	11.2	18.9	19.9	15.8	29.3
슬로바키아	2.1	3.2	5.4	6.0	14.9	68.4
핀란드	4.1	12.5	9.2	8.3	5.0	60.9
스웨덴	1.0	8.8	6.5	8.2	11.9	63.7
영국	6.1	30.6	20.0	23.1	19.7	0.5
아이슬란드	4.3	20.9	16.7	14.4	10.5	33.3
노르웨이	57.2	42.8	0.0	0.0	0.0	0.0

자료: Eurostat. EU-SILC Module 2006: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부표 9〉 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참여 활동)

	아래 단체 참여(활동) 여부							전체
	타인돕기	정당 및 무역연합	전문 협업체	교회 및 기타 종교단체	레크레이션 단체	자선 단체	기타단체	
벨기에	13.5		7.2		32.9	7.1	7.9	44.5**
체코	4.5	2.5	6.6	5.9	21.8	3.3	3.2	32.4
덴마크	:	12.8	12	11.3	33.7	11.8	7.7	:
독일	35.6	6.4	3.1	15.4	21.3	5.9	16.4	53.9
에스토니아	31.2	3.7	3.7	5.3	14.6	2.3	1.1	44.9

	아래 단체 참여(활동) 여부							전체
	타인돕기	정당 및 무역연합	전문 협약체	교회 및 기타 종교단체	레크레이션 단체	자선 단체	기타단체	
아일랜드	24.2	4.1	7.7	48.2	35.7	23.7	7.8	70.6
그리스	19	5.1	6	29.2	8.2	3.3	5.6	50.4
스페인	44.9	3.7	4.4	17.5	13.8	11.2	7	63.9
프랑스	17.4	2.7	1	1.4	23.2	1.5	10.9	41
이탈리아	24.8	4	4.7	19.1	10.4	7.1	4.8	46.1
사이프러스	67	8.3	10.3	87.3	29.8	15.5	3.2	95.5
라트비아	34.4	7	3.8	8.9	3.9	2	4.9	43.4
리투아니아	14	2	1.7	21	6.7	1.8	2.6	36.5
룩셈부르크	36.9	4.7	11.6	33.9	35.4	17	8.8	70.4
헝가리	11.1	3.2	2.7	3.5	5.8	1.6	6.3	21.3
네덜란드	54.8	4.3	11.6	44.5	46.8	32.8	21.1	87.8
오스트리아	30.9	5.6	3.7	13.6	22.9	6.6	2.4	52.8
폴란드	51.5	3.7	3.4	68.7	5.9	3.2	1.7	83.9
포르투갈	28.5	2.8	3.3	43	11.2	5.1	2.3	61.7
슬로베니아	70.7	5.3	12.2	22.7	19.9	12	23	84.5
슬로바키아	31.7	7.3	3.4	35.9	19.5	8.1	13.9	64.1
핀란드	39.1	11.1	8.4	15.8	38.4	12.9	17.6	72.1
스웨덴	36.3	8.9	9.8	19.6	37.1	11.7	24.6	71.3
영국	.*	2.4	4.6	10.6	35.2	8.4	3	.*

* 영국의 일부 항목은 높은 결측치(53%)로 인하여 수치가 제공되지 않음

** 벨기에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단체 활동에 관한 데이터 결측에 따라 전체 수치는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음
 자료: Eurostat.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solation

□ 활용 현황

- Eurostat(2010).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solation

□ 자료출처

- Eurostat. EU-SILC Module 2006: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 Eurostat(2009), Comparative Final EU Quality report
- Eurostat(2010),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solation

2. 국가별 나눔통계 생산 현황

(1) 영국 Community Life Survey: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 조사소개

- Community Life Survey는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의 주관 하에 TNS BMRB가 수행하는 조사로 2012~13년 첫 시행됨. 현재까지 2013~14년 2차 조사가 시행됨
- 본 조사는 사회적 행동을 독려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부, 지역사회 참여와 웰빙 등을 포함하는 핵심 이슈에 대한 공식적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지원함
- 본 조사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 내 행동과 태도에 관하여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과 행동을 위한 강건(robust)하며,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
 - 공공 부문과 외부 이해관계자와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
 - 강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뒷받침함
- Community Life survey는 과거 Citizenship Survey(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부처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10~11년까지 운영됨)의 주요 측정치를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도록 Citizenship survey의 핵심 측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방법론을 모방(replication)함

〈부표 10〉 영국 Community Life Survey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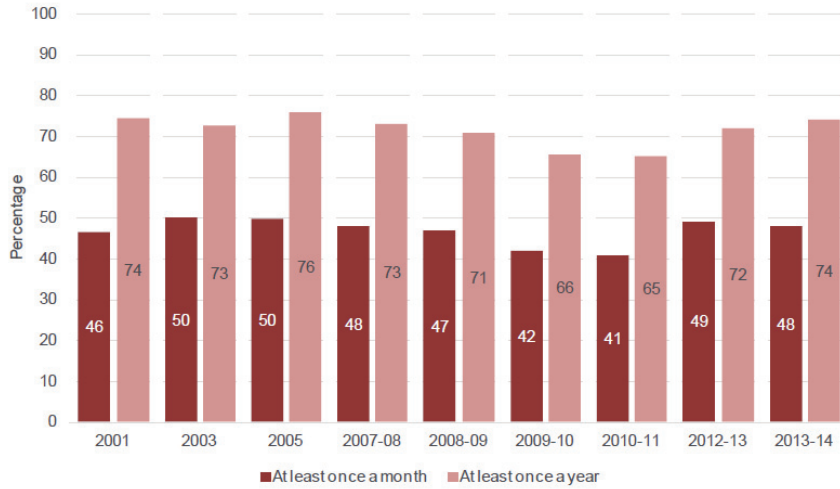
연구대상	16세 이상 인구
표본추출방법	<p>랜덤 확률 조사로 우편번호를 샘플 자료원으로 사용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Assemble primary sampling unit sample frame: PSU = postal sector but those with fewer than 500 addresses were combined with a neighbouring postal sector</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7,148 PSUs sorted by various factors: 1. Estimated share of a survey sample that would <i>not</i> be classified as White British, <i>then</i> 2. Region, <i>then</i> 3. Expected ethnic mix (five types)</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Systematic sample of 382 PSUs: PSUs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ur quarters across the survey year</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Sample addresses: 24 addresses were randomly selected within each PSU</p> </div>
샘플사이즈	대략 5,000명(각 분기별로 1,250명 정도임)
조사기간	2013년 5월-2014년 4월(2013-14년 조사)
조사방법	<p>표본으로 선택된 주소에 편지를 발송하여 Community Life Surve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조사원이 해당 주소에 방문하여 조사를 마침 각 가구에서 16세 이상 성인 한 명이 랜덤으로 선택되어 조사에 참가함</p>
주요조사문항 (나눔통계 관련)	<p>- 지난 12개월 동안 참석하거나 지지 또는 도왔던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① 어린이의 교육/학교, ② 청소년/아동의 활동(학교 밖), ③ 성인을 위한 교육, ④ 종교, ⑤ 정치, ⑥노인, ⑦ 건강, 장애 및 사회복지, ⑧ 안전, 구호, ⑨ 지역사회 또는 이웃 단체, ⑩ 시민단체, ⑪ 취미, 레크레이션/예술/사교클럽, ⑫ 무역 노조 활동, ⑬ 기타, ⑭ 해당 없음</p> <p>- 지난 12개월 동안 그룹, 클럽 또는 단체에 무급으로 도움을 준 적 있습니까? ① 모금 또는 재정/스폰서 이벤트 참여, ② 그룹 및 위원회 멤버를 이끔, ③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④ 방문, ⑤ 친구되어주기 또는 멘토링, ⑥ 조언/정보/상담 제공, ⑦ 비서, 행정 또는 사무, ⑧ 교통 및 차량 제공, ⑨ 대표하기, ⑩ 캠페인, ⑪ 기타 실질적인 도움, ⑫ 기타 도움, ⑬ 해당 없음</p> <p>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이러한 그룹, 클럽 또는 단체에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까?</p>

	<p>① 1주일에 한번, ② 1주일에 한 번 미만이나 한 달에 한번 이상, ③ 덜 자주</p> <p>무보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p> <p>① 과거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그룹, ② 이미 그 그룹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③ 그 그룹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친구/구전 ④ 종교행위(worship) 장소, ⑤ 학교, 대학, ⑥ 의원,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⑦ 포로모션 이벤트, 봉사활동 페어, ⑧ 지역 이벤트, ⑨ 지역 신문, ⑩ 전국 신문, ⑪ TV 또는 라디오, ⑫ 자원봉사 센터, ⑬ 고용주의 자원봉사활동 지침(scheme), ⑭ www.do-it.org.uk ⑮ 전국 시민 서비스, ⑯ 기타 인터넷/단체 웹사이트, ⑰ 기타</p> <p>지난 12개월 동안 당신이 참여한 그룹, 단체 또는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섞인 적 있습니까?</p> <p>① 다른 연령 그룹, ② 다른 인종 및 종교, ③ 다른 사회적 교육적 배경, ④ 다른 주거지</p> <p>지난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섞였습니까?</p> <p>① 매일, ② 매주, ③ 매달, ④ 1년에 한번, ⑤ 1년에 한 번보다 적게, ⑥ 해당 없음, ⑦ 모름</p> <p>지난 12개월 동안 그룹, 클럽, 단체를 도운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무엇을 개선/사람을 돕고 싶어서, ②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③ 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④ 나의 친구/가족이 하기 때문에, ⑤ 나의 가족과 친구의 니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⑥ 나의 커뮤니티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⑦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⑧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⑨ 나의 커리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⑩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종교의 일부임, ⑪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삶의 철학의 일부임, ⑫ 인지도 자격을 얻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⑬ 시간이 남기 때문에, ⑭ 나 이외에 이것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⑮ 보기 중 해당 되는 이유 없음</p> <p>일부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프로젝트나 봉사활동, 자선적 단체, 또는 기부에 대한 스킴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러한 종류의 활동에 참가하기를 고용주로부터 독려받았습니까?</p> <p>① 예-돕기만, ② 예-기부만, ③ 예-기부와 돕기 모두, ④ 아니오</p> <p>고용주에 의해 얼마나 자주 돕기를 독려받았습니까?</p> <p>① 1주일에 한번, ② 1주일에 한 번 미만이나 한 달에 한번 이상, ③ 덜 자주</p> <p>지난 4주간 돈을 자선단체에 제공한적 있습니까?</p> <p><기부></p> <p>① 동전 모음(예. 가정방문, 길거리, 펄, 직장, 가게 카운터 등), ② 교회, 모스크, 또는 기타 워십 장소, ③ 우편을 통한 기부 봉투/수표 사용, ④ 급여로부터 계약 또는 데빗, ⑤ 직접 데빗, 스탠딩 오더를 통한 기부, ⑥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⑦ 개인적으로나 전화로 기부, ⑧ 온라인.웹으로 기부, ⑨ 텍스트 메시지로 기부, ⑩ ATM/현금기계로 기부</p> <p><구매/펀드레이저></p> <p>⑪ 래플 티켓 구매, ⑫ 자선 각, 카탈로그 또는 온라인으로부터의 물건 구매, ⑬ 자선적 기부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물건 구매, ⑭ 펀드레이징 이벤트 티켓 구매</p> <p><스폰서십></p> <p>⑮ 스폰서십(온라인 아님), ⑯ 스폰서십(온라인)</p> <p><기타></p> <p>⑰ 기타 기부 방법(물건이나 상품 기부 제외), ⑱ 기부하지 않음</p> <p>지난 4주간 총 얼마나 기부를 하셨습니까?</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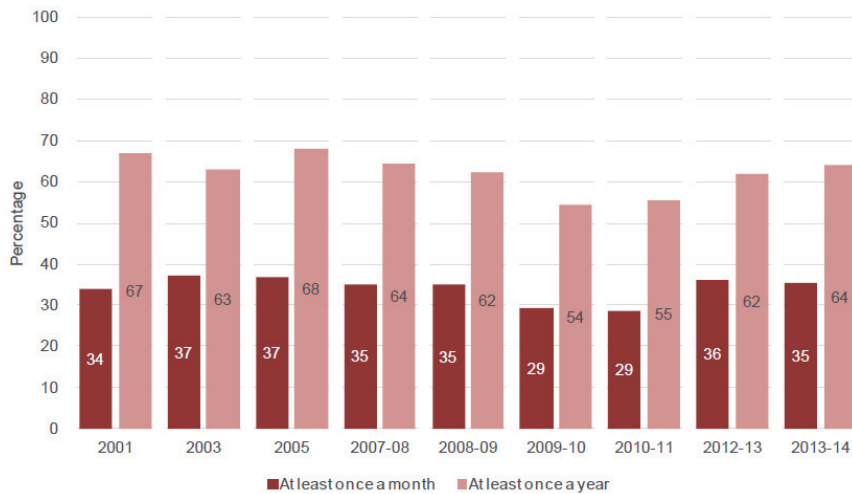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응답률: 2013~14년 조사의 경우 61%

[부도 10] 자원봉사활동 참가여부, 2001~20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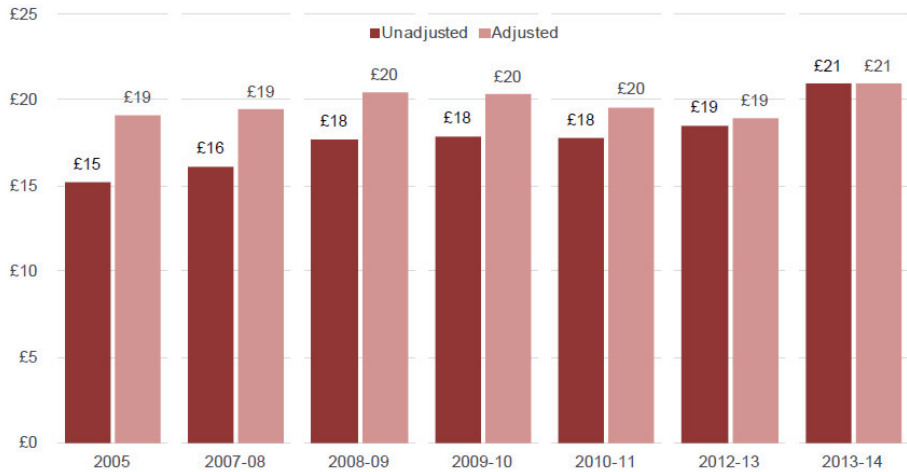
[부도 11] 비공식 자원봉사활동 참가여부, 2001~20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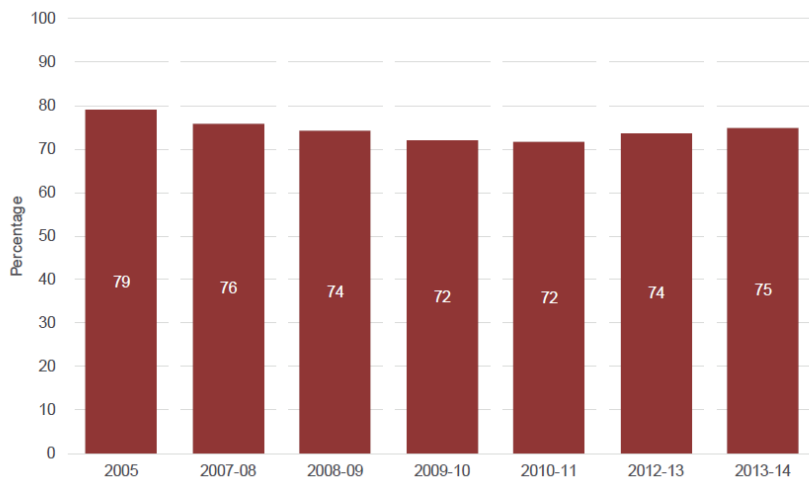
[부도 12] 공식 자원봉사활동 참가여부, 2001~2013/14



[부도 13] 지난 4주간 돈을 기부했는지 여부, 2005~2013/14



[부도 14] 지난 4주간 기부한 평균금액, 인플레이션 조정과 미조정, 2005~2013/14



□ 자료출처

- 영국정부웹사이트:
- <http://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ommunity-life-survey>
- UK Cabinet Office and TNS(2014), Community Life Survey 2013-14: statistical analysis
- UK Cabinet Office and TNS(2014), Community Life Survey 2013-14: technical report
- UK Cabinet Office and TNS(2014), Community Life Survey questionnaire 2013-14

(2) 싱가포르 Individual Giving Survey

□ 조사소개

- Individual Giving Survey는 NVPC(National Volunteer & Philanthropy Centre)의 컨설팅 그룹(AIsla Insight Pte Ltd)에 의해 싱가포르의 자원봉사 활동과 나눔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 본 조사는 2000년부터 매2년마다 수행됨
- 본 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제외함 (의무적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NVPC는 독립적인 비영리조직으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를 비영리조직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NVPC는 싱가포르의 나눔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비영리조직, 기업, 공공 섹터와 함께 일함

〈부표 11〉 싱가포르 Individual Giving Survey 조사개요

연구대상	15세 이상 싱가포르 거주자
표본추출방법	통계청의 5,400가구의 리스트로 지역적으로 분배되고 가구 타입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 샘플 선정
샘플사이즈	1,828명(2014년)
조사기간	2014년 7~8월
조사방법	면대면 인터뷰로 지난 12개월간 경험에 대하여 응답함 통계적 가중치가 샘플 데이터에 적용됨
조사문항 (나눔통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자선적 혹은 비영리 단체에 돈을 기부하십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단체에 기부하십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에 사용하십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어떠한 봉사를 하셨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자원봉사 하셨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어떠한 단체를 통해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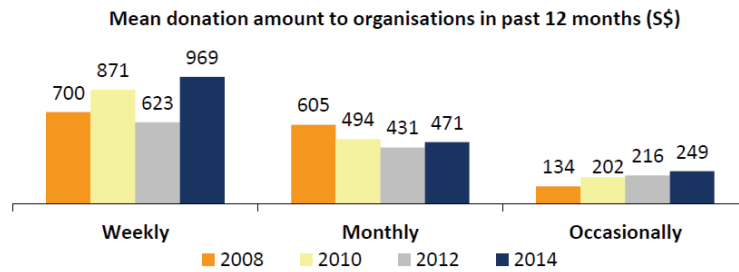
□ 조사결과

[부도 15] 주기별 기부 참여율 및 기부액

Weekly donors gave the m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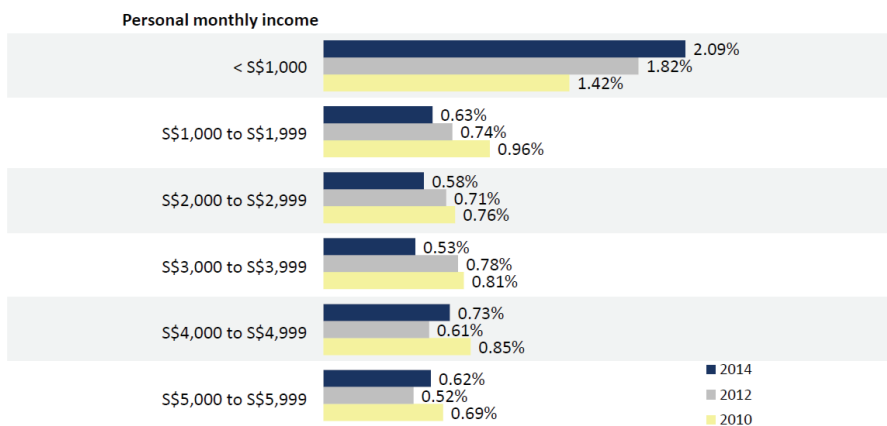
Weekly donors gave \$969 on average, almost 4x more than occasional donors

Frequency of giving	% of Donors			
	2008	2010	2012	2014
Weekly (per week)	7%	5%	6%	6%
Monthly (per month)	27%	32%	34%	38%
Occasionally (per year)	66%	63%	61%	56%



[부도 16] 소득수준별 기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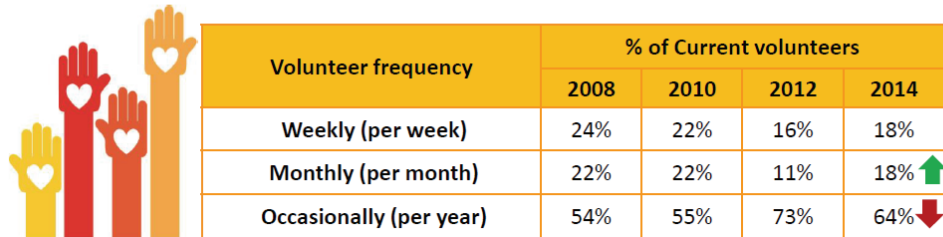
Those earning below S\$1,000 per month continued to donate highest proportion of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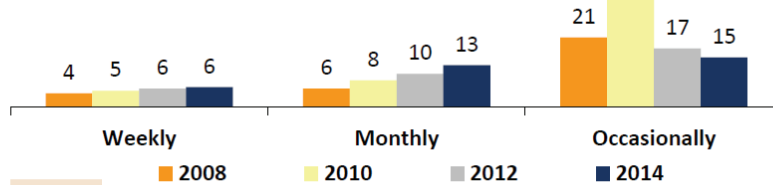
[부도 17] 주기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봉사 시간

Increase in monthly volunteering

Most volunteering remained occas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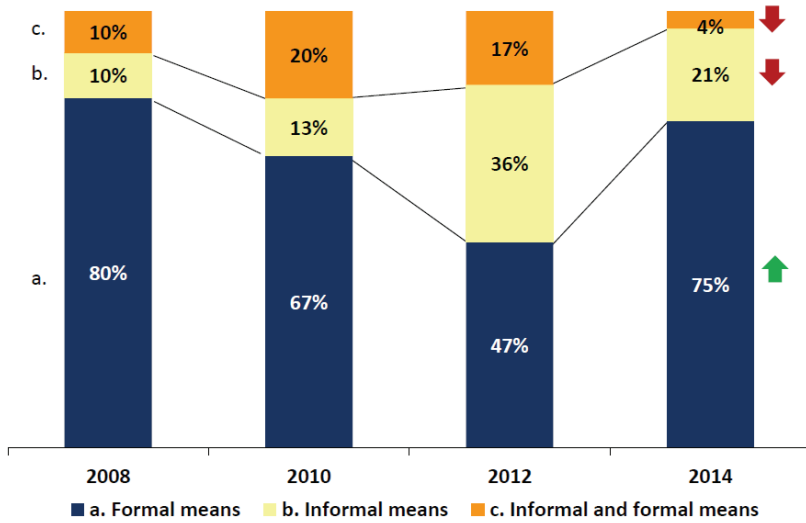
Mean volunteer hours per week / month / year (excluding traveling time)



Weekly hours reflect mean number of hours spent volunteering per week
 Monthly hours reflect mean number of hours spent volunteering per month
 Occasional hours reflect mean number of hours spent volunteering per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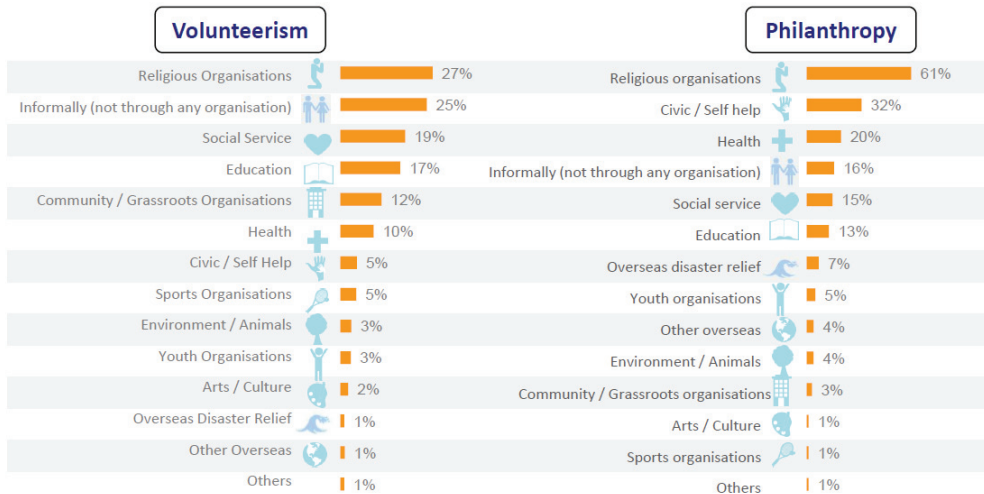
[부도 18] 봉사자의 봉사방법

Most volunteered through formal means



[부도 19] 분야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Religious giving ranked highest for volunteers and donors



□ 자료출처

- NVPC웹사이트: <http://www.nvpc.org.sg/>